

# 統一研究論叢

第2卷1號 1993

民族統一研究院

本論叢에 수록된 論文의 내용은 執筆者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意見을 반영하는 것  
이 아님을 밝힙니다.

# 目 次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 1993

## 〈企劃論文〉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한 일고 ..... 全相仁... 1  
한국 근대민족주의 발생의 역사적 배경 및 전개과정 ..... 玉台煥... 23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이념으로서의 과제 ..... 朴鍾喆... 47  
북한의 민족주의 :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 徐載鎭... 71  
한국 민족주의의 미래구도 :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념의 정향 陳德奎... 97

## 〈研究論文〉

- 통합이론과 유럽통합이 남북한통합에 주는 시사점 ..... 金國新...123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 李宇榮...149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 崔壽永...173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 諸成鎬...199

Abstract .....243

# 民族主義의 形成과 展開過程에 관한 一考

全 相 仁\*

##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民族主義와 世界體系 |
| II. 民族主義와 國民國家 | IV. 結 論         |

“역사란 우연 투성이다.”  
— Samuel Eliot Morison —

## I. 序 論

민족주의 ‘문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 까닭의 단초로서 무엇보다도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체계의 대변혁 혹은 世界史의 대전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생산 및 분배의 국제화와 경제단위의 블럭화는 탈냉전 시대 신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제한되는 듯한 인상은 민족주의 시대 ‘이후’를 예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자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민족주의 운동은 오히려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려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와 아울러 냉전의 강도가 약화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보다 현실감있게 논의되는 마당에서, 민족주의는 남북한 양쪽에서 통일이념으로서 새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sup>1)</sup>

이 글의 목적은 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을 역사 정치경제학적(historical political-economy) 관점에서 개관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의 개념이나 유형 논의 등에 관련된 이론적이고도 정태적인 분석을 유보하는 대신,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적 형성 및 전개과정에 매개되어 있는 사회적 행위자(actors)와 그들간의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민족주의의 구체적이고도 동태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향은 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를 匿名 혹은 無名의 내재적인 역사과정으로 파악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규범이나 가치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운동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의 내용과 성격 및 방향도 시대와 공간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족주의로 부터 얻게 되는 損益(cost and benefit)이 서로 같지 않을 행위자들간의 역학관계인 것이다.

민족주의 운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우선 대내적인 차원에서 국민국가(national state)의 역사적 형성과 확립, 그리고 대외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 세계체계(world system)에 관련된 민족주의의 위상과 역할이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민족주의 운동과 국민국가의 건설은 경험적으로 不可分의 친화력을 가져왔다. 한편 민족주의와 세계체계는 서로 愛憎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는 작금의 세계체계를 형성한 원동력이었으나,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세

1)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1993.4.8. 타워호텔),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는 “근대국민국가와 민족문제”를 공동주제로 걸었다 (1993.5.21-22, 한양대학교).

계체계간에 존재하는 기본적 모순과 긴장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글의 제2장은 국민국가 건설에 관련된 민족주의 운동을 다루고, 제3장은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문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단계에서의 민족주의의 위상과 그 향후를 전망한다.

## II. 民族主義와 國民國家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의 태동이 우연한 사건이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sup>2)</sup> 민족주의가 어떤 자연적인 속성이나 보편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直觀의 오류일 뿐이다. 지난 두어 世紀 동안 인류가 민족주의의 시대를 살아온 것에는 아무런 당위적·필연적 이유가 없다. 인류는 과거 수천년을 민족주의 없이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인종적, 문화적, 심리적, 영토적 혹은 경제적 유대 등을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개념화하는 일반적인 태도에는 민족주의의 기원을 아주 먼 과거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민족(nation)을 빚어내는 재료로서, ‘先民族’ 또는 ‘原民族’의 개념이 더 잘 어울리는 것이다. 민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일반 민중을 공통의 정치적 형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sup>3)</sup> 다시 말해 민족의 형성은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서 정치적 차원이란 민족을 단위로 하여 독자적인 국가를 이룩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서양사 중심의 세계사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불가피하다. 물론 민족주의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동양사회에서 없었을

2) 어네스트 겔너(Ernest Gellner),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1), pp. 131-35 참조.

3) 한스 콘(Hans Kohn), “민족주의의 개념,” 위의 책, pp. 18-20.

리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주의의 원초적 材質이 정치적 素材로 처음 탈바꿈한 곳은 서유럽이었고, 그 중요한 계기는 16세기 이래 본격화된 근대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때 까지 인류는 부족, 부족, 도시국가, 神政, 왕국, 그리고 제국 등 다양한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다시 말해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정치적 일체감(identity)의 일차적인 대상은 오늘날의 근대국가 형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1500년경 서유럽의 경우만 하더라도 500여개의 비교적 독립적인 大小間의 정치적 단위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 400여년이 지난 20세기 초, 이들은 25개 정도의 근대국가로 정리되었으며, 이들을 우리는 민족국가(nation-state) 혹은 국민국가(national state)라고 부른다.<sup>4)</sup>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민족주의도 발아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는 민족에 선행하여 민족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근대 국민국가를 만든 주역은 누구였나? 일반적으로 근대국가의 뿌리는 로마제국이 붕괴하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시기에 생겨났던 一群의 레그눔(regnum), 곧 王國 혹은 王家로 알려진다.<sup>5)</sup> 이 레그눔은 인종적 단위도, 문화적 단위도, 그리고 지리적 단위도 아니었으며, 국가라고 이름 붙이기가 성급한 정치적 단위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왕권 중심적인 것으로서 개인적 충성의 강조와 함께 공권력의 사취가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레그눔은 따라서 체계적인 정치공동체라기 보다는 무정형한 정치세력이었다. 전쟁 등의 이유로 인해 레그눔의 대부분은 短命으

4) Charles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C.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5), pp. 3-83; 전상인, "틸리의 국가건설 비교연구," 한국비교사회학회 (편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서울: 열음사, 1992), pp. 97-119 참조할 것. 엄밀하게 따지면 民族國家와 國民國家는 다르다. 전자는 국민들이 언어적, 종교적, 그리고 상징적 일체감을 강하게 공유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 정도가 약하다. 보기로 스웨덴이나 아일랜드는 전형적인 민족국가이나, 중국의 경우는 그렇치가 않다.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pp. 2-3 볼 것.

5) 崔甲壽,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논문(1993.5.21-22, 한양대학교), pp. 9-26.

로 끝났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았고, 비록 속도는 지극히 느렸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일체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국가건설 혹은 민족형성의 빚장을 처음으로 열었던 세력은 레그눔의 君主들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의도적인 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근대국가의 건설을 통해 민족을 형성하려는 고의적인 기도는 적어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적 질서의 회복과 유지, 공평한 사법권의 행사, 그리고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 등 통치에 당장 필요한 실제적인 고려가 우연히 초래한 일에 불과하였다. 1300년 경에 이르러 레그눔에 바탕을 둔 왕권은 유럽사회에서 대외적 주권을 관례로 확립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국가형성의 한가지 기본 작업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대내적 주권의 확립은 아직 시기상조였다. 당시만 해도 군주권은 봉건제후, 도시의 신흥 부르주아, 그리고 카톨릭 교회와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sup>6)</sup>

그러다가 13세기 말부터 중세의 봉건제적 정치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들은 서로 타협하여 이른바 身分制 國家(Ständestaat, state of estate)를 형성하였다.<sup>7)</sup> 군주의 정당한 지배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莊園과 도시, 그리고 교회의 자율적인 영역이 존중되었던 신분제 국가는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이고 領土의 개념도 크게 강화함으로써 근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신분제 국가에 있어서 군주의 통치권은 비록 '정당한' 것이기는 했지만 결코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신분제 국가는 군주와 제후간에 이루어진 지배동맹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일원적이라기 보다는 이원적이었고, 또한 13-4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신분제 의회로부터 충분히 자율적이지도 못했다. 신분제 국가가 더욱 발전하여 대내적인 주권을 공고화하는 일은 16세기 이후의 역사

6) Daniel Chirot, *Social Change in the Modern Era*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6), p. 17.

7) Kenneth Dyson, *The State Tradition in Western Europe: A Study of an Idea and Institution* (Oxford: Martin Robertson, 1980), pp. 25-8; Gianfranco Poggi,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A Sociological Introduction*(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8), pp. 36-59; Chirot, *Social Change in the Modern Era*, pp. 17-9 참조.



가 지켜보았다.

이제 우리는 국가형성의 또 다른 측면, 즉 대내적 주권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필 1500년 이후 서유럽이었으며, 왜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로 귀결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당시만 해도 서유럽에서는 국민국가의 대안적 형태, 예컨대 연방이나 제국, 카톨릭 신정연합, 비정치적 상업공동체, 혹은 기존의 봉건제 등이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제국이나 몇개 패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가적인 상업복합체는 근대국가의 건설과 한동안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大勢는 君主로 대표되는 국민국가 건설자들에게 기울어졌다. 그 까닭은 당시 세계사적 차원에서 서유럽사회가 당시 갖고 있던 사회구조적 특질과 함께, 군주들이 대안적 국가모델의 지배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향유하고 있던 몇 가지 요인들에서 발견된다.<sup>8)</sup>

16세기 초 서유럽은 과거 로마제국의 통치를 공유한데 따른 문화적 동질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언어, 법, 종교, 행정관리, 농업방식, 가족제도 등은 쏠유럽을 수렴시키고 있었으며, 무역을 통한 상호접촉, 지속적인 인구이동, 왕가들 사이에 빈번했던 通婚 역시 유럽인들의 생활 스타일을 매우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국가와 같은 통치모델의 전파나 국가를 단위로 한 영토의 획정 및 변경이 무난하였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데로 전형적인 농업사회였던 유럽에서는 신분적 특권을 소유한 지주계급이 광범위하게 공고화되어 있었고 도시지역에서는 부르조아계급이 商人이나 기업가, 혹은 錢主로서 그 세력을 배양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주들이 통치력의 확보를 위해 징세나 징집, 혹은 徵發의 문제를 놓고서 기존 내지 신봉 지배계급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거나 서로 갈등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절박한 일이었다. 끝으로 당시 서유럽사회는 분권화된 정치구조를 갖고 있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의 중국이 단일한 혹은 패권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음에 비해 서유럽은 비교적 작고 약한 수많은 정치적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유

8)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Chirot, *Social Change in the Modern Era*, pp. 12-27; 전상인, "틸리의 국가건설 비교연구" 참조.

럽에서 정치·군사적 갈등이 빈발할 소지를 높였다. 그 결과는 결합과 복속, 정복 및 공고화 등의 과정을 통하여 분권화된 여러 정치적 단위들이 合縱連衡을 거듭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근대국가 건설을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건들과 함께, 16세기 이후 유럽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근대국가 건설의 주역으로서 활약한 君主들은 다른 경쟁세력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첫째, 중세 이후 군주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부단히 발달시켜온 전문화된 행정조직이다. 국가건설의 문제가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정치·사회세력들을 견제, 회유, 제압, 정복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료제, 國庫와 재정의 운용, 그리고 법률가의 이용 등 통치 노하우를 그동안 축적해온 군주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둘째는 유럽의 주변 환경이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유럽은 다른 제국들의 침략이나 압박을 배제하고 있어서 군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근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地理上의 發見’은 해외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거나 국가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도 궁극적으로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군주들을 도왔다. 근대국가의 등장으로 부터 독자적인 기원을 가진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이 당시만 해도 선택 가능한 몇개의 국가형태를 놓고 망설이는 중이었다. 그러나 무역 및 상공업의 발달은 각종 경제적 자원을 전통적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점차 해방시키고 租稅源을 증대시킴으로써 君主들의 호주머니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부르조아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권위가 등장하는 과정을 부추겼던 것이다.

물론 근대국가의 건설대열에 참가한 모든 정치적 단위들이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성취하는 속도가 균일했던 것도 아니다.<sup>9)</sup> 그것은 국가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나 王家 血統의 지속적인 공급, 토착 귀족계급과의 관계 여하 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9)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pp. 38-46.

서도, 전쟁에서의 승리가 국가건설 성패를 가늠한 최대의 갈림길이었다. 또한 전쟁의 준비나 대비는 조세나 징병 및 징발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면서 그들의 저항을 자초했지만, 자원 추출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내적인 반대세력을 제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국가건설을 위한 일련의 기본적인 과제들 - 영토의 획정, 중앙집권화, 국가조직의 형식적 자율성의 확보, 통계 및 재무기구의 발달,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 - 까지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을 틸리는 “戰爭이 국가를 만들고 國家가 전쟁을 만들었다”라는 말로 요약하였다.<sup>10)</sup>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6-7세기에 걸쳐 근대국가는 절대왕정 혹은 절대군주제의 성립을 통해 無敵의 세력으로 자라났고 마침내 대내적 主權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sup>11)</sup> 절대주의의 핵심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언명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국가, 그것은 곧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국가와 왕권을 동일시하면서 王權神授說로 군주의 정치적 권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절대군주제는 신분제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적 신분을 대변한다고 자처하였고, 실제로 절대왕정의 통합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절대주의의 등장으로 기존의 특권계급은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가의 수취구조에 편승하였고, 신흥 부르주아계급도 무역과 상공업 활동의 보장을 얻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근대 통일국가의 성립을 환영하였다. 주민의 절대적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 역시 절대국가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조세원의 안정적 유지라는 차원에서 군주가 농민을 특권계급으로 부터 보호했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러나 절대주의 국가는 아직도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의 以前 단계에

10) 보다 분석적인 내용은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5), pp. 169-91 참조.

11)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Press, 1985), pp. 83-121; Poggi,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tate*, pp. 60-85 볼 것.

12)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pp. 15-6.

머물러 있었다. 근대국가가 민족형성의 기본틀로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은 절대왕정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점점 더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동안 바로 그 군주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대두함으로써 탄생했다고 보아야 한다.<sup>13)</sup> 곧, 민족주의는 군주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집단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代議體를 설정하기 위해 정치적 주권을 재정립하려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주도세력 가운데 하나는 물론 부르조아로서, 이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다양하고 상반된 여러 사회·경제적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고무하는 과정에서 민족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결국 민족형성은 절대주의 국가의 등장과 그것의 해체과정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군주권과 그 도전세력의 노력이 서로 합쳐져 이루어진 결과였다.

민족국가 대열의 선두주자 영국에서는 군주제에 입헌제적인 제약을 가하고 신분제 사회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여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萬人이 법 앞에서 평등한 정치공동체, 곧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웠다. 절대주의 왕권과 특권계급에 대한 투쟁은 청교도혁명(1642-49년)과 명예혁명(1688-89년)을 거쳐 입헌군주제의 등장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그 후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 없이 민족국가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다. 조용했던 영국혁명은 역설적이게도 민족주의 운동에 관한 한 영국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대적 정치이념으로서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00년 뒤에 발생한 프랑스혁명(1789년)이었고, 프랑스는 민족주의 운동의 本山이 되었다.

영국에서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18세기에 들어와서도 절대왕정과 신분귀족이 구체제(ancien regime)를 완강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이은 對外 戰爭으로 국가재정이 궁핍하게 되자 루이 16세는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던 三府會를 소집하였는데 이것이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혁명의 前夜는 부르봉 절대왕권이 특권귀족계급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이고자 하는데 대한 후자의 반발이었지만, 혁명의 주역은 곧 신흥 부르조아계급, 특히

13) 위의 글, p. 16.

농민으로 바뀌었다. 당시 프랑스 농민들의 반란능력은 매우 높았던 편으로서, 이는 프랑스혁명이 후일 소위 社會革命(social revolution)으로 불리워질 수는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sup>14)</sup>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근대적 정치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정치적 제후를 통해서였다. 프랑스혁명은 역사상 최초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이 왕권신수설이라는 초자연적인 개념이나 전통에 있다는 것을 배격하고, 인권선언을 통하여 인간의 평등함과 아울러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기하는 실로 획기적인 이념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프랑스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은 그 뒤 恐怖政治 시대나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년)에 의해 일시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민족국가를 향한 프랑스 역사의 발걸음은 후퇴하지 않았다. 입헌군주제 헌법의 채택, 보통선거의 실시 및 공화제 선포, 국기와 국가 및 革命曆 제정, 봉건적 貢納의 폐지, 미터법 채용, 징병제에 의한 국민상비군의 편성, 카톨릭의 억제와 理性崇拜 정책 등은 민족형성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인 바,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인은 ‘갑자기’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동일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민족을 만든 전형적인 예로 남아있는 프랑스혁명이 민족을 단위로 한 독립적인 주권국가 수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재삼 강조될 필요가 있고, 덧붙여 말하자면 프랑스는 현대 국가구조의 典範을 자랑하게 되었다.<sup>15)</sup>

프랑스혁명 끝에 등장한 나폴레옹 시대는 비록 궁극적으로 군사독재체제 및 帝政으로 귀결되기는 했지만, 민족국가 건설에 있어서는 가일층 박차가 가해진 때였다. 최초의 ‘대중적 독재자’ 나폴레옹은<sup>16)</sup> 혁명적 소요를 무력으로 진압시키는 이면에, 근대 民法의 모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나폴레

14)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pp. 118-21.

15) Bertrand Badie and Pierre Birnbaum (trans. by Arthur Goldhammer), *The Sociology of the Stat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3), pp. 105-15;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pp. 196-205.

16) E. H. 카(Carr), “민족주의의 세 단계,” 백낙청 (역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 54.

용 法典을 1804년에 반포하여 개인의 자유,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 그리고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제정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더욱 중앙집권화되고 전문화된 관료제 국가의 형성, 상비군 제도의 발전, 국립은행의 설치와 국민교육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국민국가의 內實을 다짐으로써 민족주의를 더욱 고양시켰다. 민족주의 발달에 대한 나폴레옹의 기여는 그러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족주의의 최고 傳道師였다.<sup>17)</sup> 나폴레옹 전쟁은 인근 국가들에게 민족주의 이념을 직접 전파하기도 하고 그들의 민족주의를 고무 자극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은 민족주의 시대의 도래를 不可逆的인 것으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또한 프랑스혁명이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특권귀족계급을 소멸시키는 대신 대다수 농민들을 신분적으로 해방시켜 국민정치(national politics)의 場에 흡수한 것은 민족주의에 대해 민주적 혹은 民衆的 차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의 발달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계급적 구분이 미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프랑스혁명 이후의 시민적 평등을 허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매도하는 일은 설부른 추론이다.<sup>18)</sup> 스카치폴이 강조하듯이 프랑스혁명을 부르조아혁명으로만 볼 수 없다.<sup>19)</sup> 결국 프랑스혁명 이후 민족은 전제주의와 특권의 배척임과 동시에 국민주권과 자치의 구현체가 되었다. 이제 민족은 유럽인들의 정치·사회적인 열망을 담아내는 유일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민족주의 원리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피할 수 없는 바람[風]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민주주의 혹은 민중주의를 원리적으로 지향했던 민족주의가 그 이후 국민통합의 도구로 명실상부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17) E. H. Carr, “민족주의의 세 단계,” p. 54.

18) 최갑수, “서구에서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p. 20.

19)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pp. 178-9 볼 것. 오히려 프랑스 자본주의의 발달은 인과적으로 볼 때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된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결과, 곧 민족국가 건설에 그 바탕을 둔 것이었다.

었다. 그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영역의 ‘과대성장’과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계급대립의 심화 때문이었다. 국가와 부르조아계급이 초기의 민족주의 운동을 선도하면서 민족범주의 통합성은 불완전해졌다. 우선 민족주의의 물결속에서도 국가엘리트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구성원, 특히 피지배계급에 대하여 민주적 권리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었다.<sup>20)</sup> 또한 “부르조아 없는 민주주의는 없었다”라는 무어의 주장은<sup>21)</sup> 절대왕정과 특권 귀족계급으로 부터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신흥 부르조아계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옳으나, 그들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선거권을 피지배계급에게 확대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는 사실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2월봉기(1848년)와 파리코뮌(1871년)은 민족주의 운동의 정치·사회적 통합 능력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들이었다.

실제적으로 지난 200여년 동안 산업화라는 시대적 대세속에서 민족주의는 貞節을 지키지 못한 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同寢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족주의의 不可逆性和 이념적 유연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민족주의가 너무나 자명한 근대적 정치이념이 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副次的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부르조아 민족주의의 대두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국가의 성격 역시 자본주의 국가로 변해갔다. 代案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 문제 앞에서 오랫동안 방황했다. 그러나 “만국의 노동자여 團結하라”는 맑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범주가 민족의 카테고리를 끝내 깨트리지는 못했다. 20세기 유럽 정치사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이 보통선거권을 쟁취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한 것은 분명히 자본가계급에 대한 鬭爭의 산물이었다.<sup>22)</sup>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민족에 대한

20) Dietrich Rueschemeyer, Evelyn Huber Stephens & John D. Stephens,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2), pp. 66-7.

21)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p. 418.

22) Goran Therborn, “The Rule of Capital and the Rise of Democracy,” *New Left Review* 103:3-41 (1977).

계급의 마지막 投降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對抗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는 맑스의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 등 가장 산업화의 수준이 낮았던 나라들에서 시도되었다. 후일 現存사회주의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부르조아 민족주의를 배격하면서 계급문제의 해결을 國際主義 보다는 國家主義를 통해 모색했다. 그리하여 현존사회주의 역시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sup>23)</sup> 국제공산주의가 아닌 一國공산주의, 국가의 소멸이 아닌 국가의 강화, 그리고 무산자계급의 정치적 參與가 아니라 정치적 動員으로 귀결된 현존사회주의 체제는 결국 민족국가의 또 다른 형태를 선보이는 것에 그쳤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의 민족주의는 산업화나 민주화에 있어서 부르조아 민족주의에게 패배한 것으로 최근의 역사는 심판했다. 더욱이 현존사회주의의 집단적 몰락 이후 나타난 민족주의 熱風은 그곳에서조차 계급적 범주가 민족적 카테고리를 결코 압도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적절히 반증해 준다.<sup>24)</sup>

### III. 民族主義와 世界體系

민족주의의 역사는 유럽 몇 나라들에서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대내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초기의 민족국가들은 이른바 국가간 체계(interstate system)를 형성한 다음,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지정학적 세계체계를 일반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은 처음부터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world-economy)를 주도해나갔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도 국제관계의 중심적인 단위는 여전히 민족국가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의 波高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세계국가체제와 경

23) J. H. 카우츠키(Kautsky), “공산주의의 민족주의화,” 차기벽 (편), 「민족주의」(서울: 종로서적, 1983), pp. 252-85.

24) 임지현, “동유럽 민족운동의 구조와 논리,” 제3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논문(1993.5. 21-22, 한양대학교), pp. 27-67.



제적 차원의 세계경제체제를 동시에 형성한 것이다. 이들 두가지 세계체제는 지난 200년 동안 더러는 평행하고 가끔은 중복되면서 세계사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세계화 과정을 진화론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바탕은 富(plenty)와 힘(power)의 논리로서, 強者 끼리의 밥그릇 싸움과 弱肉強食,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과 도전이 주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근대국가가 유럽의 이곳 저곳에서 그 형태를 차츰 갖추어가는 동안, 그들을 위주로 하여 국가간 체계가 새롭게 結晶化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한동전의 兩面 처럼 나타났다. 그것의 기원은 절대주의 왕정국가들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아가 그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이었다.<sup>25)</sup> 베스트팔렌 조약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 처럼, 이와 같은 국가간의 협정은 보통 전쟁의 끝에서 만들어졌다. 그 까닭은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 체계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국제조약은 일종의 ‘멤버십 클럽’(membership club) 같은 것이었다. 곧, 기존의 멤버國家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배타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국가 건설의 후발주자들은 선두그룹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국가가 태동하는 과정도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지정학적 국가체계의 결정화는 그후 계속되었다. 1815년에 소집된 비엔나회의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에 의해 형클어진 유럽 사태를 수습하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억압하여 보수 반동체제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을 지배한 비엔나體制 역시 勢力均衡(balance of power)主義에 입각한 것으로, 국가간 체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1848년에 비엔나體制가 붕괴되면서 다시 일기 시작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물결은 1989년 말의 동유럽 사태에 비유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sup>26)</sup> 그 이후 민족주의는 유럽내에서 더 이상의 反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5)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pp. 45-6.

26) Michael Mandelbaum, “In Europe, History Repeats Itself,” *Time*, 1989.12.25.

세계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유럽產 민족국가는 ‘모방’(imitation) 혹은 ‘강요’(imposition)의 방식을 통하여 유럽 바깥 지역으로 전파 이식되었던 것이다.<sup>27)</sup> 그러나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주의 운동의 高潮는 세계전쟁으로 나타났다. 베르사이유 조약(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오늘날 국가간 체계의 기본틀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1920년에 탄생한 국제연맹은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민족국가 단위의 세계국가체제를 기정사실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지정학적 세계체계의 중심은 脫유럽화를 모색했다. 그것의 계기는 세계자본주의 중심이 대서양을 횡단한 일과 러시아가 소련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과 국가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립은 그러나 곧바로 가시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시즘과 나치즘이라는 공동의 敵 앞에서 잠정적 공존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마자 미국과 소련은 적대관계로 돌아섰고, 1945년 이후 세계국가체계는 동서 냉전논리에 의해 규율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국가의 숫자는 특히 후일 제3세계라고 命名된 지역에서 폭발했다. 식민지 등 민족국가 이전의 상태에 있었던 제3세계 지역은 민족국가의 수립을 시대적 급선무로 받아들였고, 냉전체계의 형성과 맞물려 있었던 그곳에서의 국가건설은 보다 ‘강제집약적’인 것이 특징이었다.<sup>28)</sup> 결과적으로 제3세계에서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일은 훨씬 빠르고 容易하였다. 한편, 1946년에 탄생한 국제연합은 전후 세계의 거의 모든 민족국가를 망라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했다. 사실상 국제연합은 국가자격의 공인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이 割據했던 동서냉전 구도는 그러나 20세기의 끝을 보지 못했다. 이미 살펴본 것 처럼 현존사회주의 체제는 1980년대 말 이후 집단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제3세계의 語源的 의미도 덩달아 퇴색하였다. 탈냉전 혹은 冷戰 以後라고 불리는 작금의 국가간 세계체계는 미국을 단일 霸權國家로 가

27) Badie and Birnbaum, *The Sociology of the State*, pp. 93-101.

28)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pp. 197-225.

진 가운데 과거 제2세계 지역으로 부터 민족국가의 숫자가 새롭게 추가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세계체제 대변혁이 차지하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완성’에 있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부르조아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sup>29)</sup> 돌이켜 보면 이른바 ‘긴 16세기’(1450-1640년) 이후 국제경제의 형식을 띠게 된 자본주의는 마침내 전세계를 국제적 분업체제로 개편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비켜갈 수 없는 문제는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와의 관계이다.

월러스타인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대두와 민족국가의 형성 사이에는 내부적 연결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sup>30)</sup> 그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유럽을 핵심부, 주변부, 그리고 半주변부의 3가지 계층지역으로 나눈 다음, 핵심부에서 출현했던 절대주의 국가에 주목한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의 강력한 국가의 창출이 민족주의가 등장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선결요건이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핵심부 지역의 신흥 부르조아계급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고 증대하기 위해 강력한 국민 국가의 출현을 지원하고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핵심부 지역은 강력한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부와 準주변부를 경제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서유럽에서 처음 발원할 당시, 국제적 분업구조내에서 핵심부에 위치할수록 강력한 민족국가 형성의 속도도 빨랐다는 월러스타인의 가정에 경험적으로 瑕疵가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킬리와 스카치폴, 그리고 힌츠 등이 월러스타인식 세계체제론의 경제환원주

29) Bruce Cumings, "Illusion, Critique, and Responsibility: The (Revolution of '89) in West and East,"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 of 1989*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91), p. 111.

30) Imman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의를 배격하는 대신 군사·지정학적 차원의 세계체계를 별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sup>31)</sup>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서, 과거의 世界帝國(world-empire)이나 그 자신이 미래의 희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世界政府(world-government)와는 달리,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민족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多衆的인 정치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17세기 이후 유럽에서는 북서부 지역을 중심부로, 남부 지역을 반주변부로, 그리고 동부 지역을 주변부로 區劃化하면서 자본주의 ‘유럽’체제의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지향이었다.

핵심부 지역에서의 ‘발전’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자본주의의 국제적 팽창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세계체제론이라면, 주변부 지역의 ‘低發展’(underdevelopment)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대를 분석하는 것은 그것의 사촌격인 從屬理論이다. 종속이론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변부 지역의 低發展은, 근대화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未發展’ 상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유럽 등 자본주의 핵심부 지역의 發展과 역사적으로 동일한 과정의 산물이었다.<sup>32)</sup> 다시 말해 자본주의 세계체제내 증추부의 발전이 진전되면 될수록, 위성부에서는 오히려 저발전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발전과 저발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자본주의의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지역간에 不等價 交換法則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前者는 세계적 규모의 資本蓄積을 할 수 있었다.<sup>33)</sup>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부 지역의 민족국가는 제국주의로 강화된 반

31)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pp. 44-5; Theda Skocpol,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1075-90(1977); Otto Hintz (ed. by F. Gilbert),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5).

32) Andre Gunder Frank, *Capitalism and Under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7) 참조.

33) Samir Amin, *Unequal Development: An Essay on the Social Formation of Peripheral Capit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참조.

면, 주변부 지역은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가운데 민족국가의 태동은 억제 내지 지연되었다.

자본주의의 국제화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민족주의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소위 ‘新民族主義’(new nationalism)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주변부 지역에서 출현한 反帝國主義的, 反植民主義的 운동으로서, 저항적이고 부정적 내용과 함께 知識人이 선도한 것이 특징이었다.<sup>34)</sup> 서유럽에서 출현한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와 친화력을 가졌던 반면, 제3세계의 민족주의 운동은 세계자본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 자주국가의 수립을 염원하였다. 그 결과 제3세계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쉽게 결합했던 일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계기로 하여 제3세계 지역은 자본주의 세계체계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민족국가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했다. 민족국가 이외의 정치적 권위는 심각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했다.

전후에 제3세계 지역에서 탄생한 민족국가의 대부분은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위 ‘신식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들의 구조와 성격을 자본주의적 국제노동 분업구조내 劣等한 위치에 고정시킴으로써, 민족국가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적 저발전 상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분업구조상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위치가 발전과 저발전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新從屬理論 혹은 종속발전론이 주장하듯이, 위계적인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편제하에서도 개별국가의 수직적 위치 이동이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sup>35)</sup> 그리고 이 때 관건이 된 변수는 국내자본과 노동 그리고 해외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자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었던 제3세계 일부 국가들의 능력이었다.

34) J. H. 카우츠키, “저개발국의 민족주의,” 차기벽 (편), 「민족주의」, pp. 130-57; 톰 네언(Tom Nairn), “민족주의의 양면성,” 백낙청 (역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pp. 220-61 참조.

35) 대표적으로 Peter Evans,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9) 볼 것.

한편, 자본주의는 최근까지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는데는 실패했다. 소련을 비롯한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의도적 단절을 통해 ‘자주적 발전’을 모색했다. 소위 離脫的 國家社會主義(dissoziativ-staatsozialistische) 發展은 사회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벗어난 민족국가들에서 주로 발견되었다.<sup>36)</sup> 산업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강조된 자주적 발전경로는 초기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점을 노정했다. 그러나 체제 내부적인 요인이 그 까닭의 전부는 아니었다.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부단없는 壓迫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 의해 사회주의적 발전 경로를 제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 당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1980년대 말부터 이들 현존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과 동유럽에서부터 깃발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그 빈 자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차지가 되었다. 아울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과거 제2세계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이 부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 IV. 結 論

지금까지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에서 근대적 국민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탄생했던 민족주의는 가장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정치단위로서의 위치를 계속 공고화해왔다. 일찌기 지역이나 인종, 문화, 종교 등의 ‘원초적’ 재료를 민족이라는 그릇속에 정치적으로 용해하는 일에 성공한 민족국가는 그 후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계급 範疇의 의미 강화와 자본주의의 세계체제화 추세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 더욱이 민족국가는 국가간 체제를 이루며 국제관계에 있

36) Dieter Senghaas, *Von Europa lernen* (한상진 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1990), pp. 76-7, 209-54.

어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단위로 정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수세기의 세계사를 민족주의의 시대 혹은 민족국가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하등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물론 작금에 脫民族主義 시대의 단초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점차 超國家的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생산 및 시장관계의 국제화, 경제단위의 블럭化, 다국적 기업 및 국제경제기구의 역할 증대는 1980년대 말에 시작된 세계체계의 대변혁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족의 범위가 더욱 축소되어 인종 내지 지역이 정치적 주권의 새로운 중심이 되려는 경향도 대두하고 있다. 최근 유고 等 세계 도처에서 內戰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결과이다. 한편, 헌팅톤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있어서 국가간의 갈등보다는 문명 혹은 문화간의 충돌이 향후 국제관계를 지배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sup>37)</sup> 아울러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국가영역의 비중을 점차 위협하는 추세에 놓여있다. 특히 포스트 맑시즘에 입각한 작금의 시민사회는 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평화, 여성, 반핵, 반문화 등 사회의 각 부문에서 同時多發적으로 벌어지는 소위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의 공간이라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sup>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민족주의가 종지부를 쉽게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경제관계의 국제화 추세 강화와 문명간의 갈등,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 확대가 국가와 세계체계에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변화'시킬지는 모르지만, 민족국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기에는 오랫동안 力不足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혹은 국가엘리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구체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역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특히 국가가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과 민주주의의 연설(discourse)을 통한 지배의 정당성 확보는 국가

37)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3): 22-49(Summer, 1993).

38) 김호기, "포스트 맑시즘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4:116-43(1992 여름) 참조.

를 중심으로 삼거나 그것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갈등이 처리되는 방식을 계속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더군다나 민족주의가 역사적으로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감정들을 이용하여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sup>39)</sup> 민족국가의 ‘자연스러운’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발상은 민족주의 이후를 예단하는 의미로서 보다는, 민족국가의 부정적 이거나 미흡한 요소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39) 한스 콘, “민족주의의 개념,” p. 18.



빈 면

# 한국 근대민족주의 발생의 역사적 배경 및 전개과정

玉 台 燠\*

◁ 目 次 ▷	
I. 서 論	IV. 일제하의 국권회복운동
II. 실학운동과 근대 한국민족주의 의 발생	V. 해방이후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III. 한말의 민족주의	VI. 결 론

## I. 서 論

민족주의는 평등과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기 위하여 국가의 독립, 통일 및 발전을 추진하는 모든 사상과 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시공간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는 이념으로서 주로 역사적 조건이나 정치적·사회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철학적 배경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sup>1)</sup>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長

1)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위하여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글방, 1978), pp. 10-17 참조.

18세기말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 민족주의는 봉건잔재를 청산하고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산업혁명 후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부국강병이라는 미명하에 약소국들의 식민지화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선진국들의 팽창적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약소국들이 그들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 보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저항적·방어적 민족주의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저항적·방어적 민족주의는 19세기를 통하여 20세기까지 아세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제3세계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sup>2)</sup>도 크게는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 민족주의의 모체는 서양의 민족주의보다 7세기 정도 빠른 신라의 통일을 그 기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統一新羅의 출현은 서구적 개념의 민족국가(nation-state)형성의 시발이었으며 통일신라 시대에 다져진 민족의식의 바탕은 후에 고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이후 고려의 고구려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북진정책 추진이나 倭亂과 胡亂 등 각종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져진 동족의식은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신생국의 단순한 저항적 민족주의 즉, 다시말하면 외세로부터의 압력과 강요에 의해서 발생한 열등의식의 표현으로서의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단극복이라는 과제가 아직도 민족과업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한국 민족주의의 내재적 제약성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이후 실학운동과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발생, 한말 위정척사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을 통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일제하의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운동, 그리고 해방이후 통일지향 민족주의운동 등 크게 4장으로 나누어 그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필자가 한국 민족주의를 논하면서 굳이 近代라는 단어를 첨언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다른 신생국의 민족주의와는 달리 민족의식 성장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뿌리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 II. 실학운동과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발생

실학은 17C~18C 조선조 중기의 역사적 전환기에 생성된 학문으로 당시 봉건사회의 정신적 위기의식을 반영한 학문적 반성이었다.

조선초기 왕권강화와 제도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착된 양반계급은 門蔭制<sup>3)</sup>의 확대와 잦은 과거시험, 그리고 성종이후 士林派<sup>4)</sup>의 대거 등용 등으로 숫적 팽창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양반들이 입신출세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자연히 각기 지위와 관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파벌간의 대립과 항쟁이 치열하였다. 특히 성종집권 이후 사림파의 등장으로 훈구파와의 대립이 더욱 치열해져 戊午士禍의 발단이 되었으며 그 이후 사화·당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宋代에 발달한 성리학으로서 理와 氣를 중심으로 인간과 우주관계를 조화와 통일의 관계로 규명한 학문인 주자학은 鮮初 신진사대부의 근본 사상이 되었으며 왕도정치에 의한 왕권확립, 삼강오륜을 통한 가정도덕과 사회윤리 확립에 크게 기여 하였다. 주자학의 보수성은 국수성으로 발달하여 국난이 있을 때마다 민족수호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등 국가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나친 명분과 형식을 강조한 나머지 허례허식이 성행하게 되고,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파벌의식을 조장하여 사화·당

3) 문음제란 공신이나 2품, 3품 및 특정관직을 거친 자의 자녀, 형제 손자에게 일반적인 과거와 별도로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 임. 한우근, 「한국통사」(서울: 을유문화사, 1986), pp. 242-3 참조.

4) 成宗이 유교정치의 진흥을 위하여 인재를 발탁 등용하게되자, 유학이 盛했던 영남지방의 학자(사림)들이 대거 중앙관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사림파라 함. 이들은 당시 명망높은 학자 吉再선생 수하의 문하생 들로 세조찬탈을 의롭지 못한 일로 간주하고 있었음. 따라서 세조찬탈의 공신들이 주축인 훈구파와 대립하게 되었으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훈구파를 중심으로 사림파는 박해하기 시작하여 결국 무오사화의 발단이 되었으며 무오사화의 결과로 사림파는 정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 위의 책, pp. 276-7 참조.

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배타성을 강조하여 타 학문이나 상공업 예술을 침체시키고 명목적인 尊華사상을 대두시키는 등 국가·사회적 폐단 또한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주자학의 한계를 타개할 신학문의 대두가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이 도래하였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直田制가 소멸되면서 토지 겸병이 촉진되어 지주제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농민은 자작농에서 병작농으로 전락해서 생활이 피폐해지고 국가 재정 또한 파탄에 이르는 등 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納粟策<sup>5)</sup>에 따른 신분제도의 문란으로 전통적인 봉건사회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치기강 문란과 경제파탄, 사회혼란이 계속되어 민심이 동요하니 자연히 국방이 소홀해져 국가의 취약성이 노정되어 갔으며, 이러한 시기에 발생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국민의 일각에서는 새로운 개혁과 반성의 부르짖음이 높아지게 되었고, 특히 조선 봉건 유교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리공담의 朱子學이 갖는 결함과 허구성에 대한 각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한편 당시 천주교의 전래로 서양문물을 접하게 되고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사회의 유교적 이념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양란의 폐허 위에서 민생과 민중의 복지를 이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태하기 위한 조선중기 지식인들의 고뇌가 실학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형성된 새로운 학풍인 실학은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經世治用과 利用厚生의 본질을 갖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개혁에 주안점을 두었다. 경세치용학과(중농적 실학과)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을 중심으로 지주제를 철폐하고 公田制를 부활하므로써 독립자영농을 육성하여 국부의 근원을 삼아야 한다는 重農的 제도개혁을 주장하고 병농일치 군사제도 실시, 사농일치 교육제도, 능력위주 관료선발 등을 강조하므로써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와 봉건신분사회를 비판하고 제도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5) 재정부족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도로 정부에 미곡을 납입하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 보상으로 관직을 주거나 노비를 양인으로 신분을 격상시켜줌.

이용후생학과(중상적 실학과)는 朴趾源, 柳壽垣, 洪大鎔을 중심으로 淸의 산업기술을 도입하여 상공업을 일으키고 이를 國富의 근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마차나 선박을 이용한 국내교역과 국제 무역진흥을 촉구하고 농업진흥을 위하여 지주제 철폐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전문화·상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학파는 공통적으로 민본·민족의식을 강조하였으며 부국강병,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구체적인 현실개혁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와 身分社會에 대한 비판으로 조선 봉건사회의 이념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점은 평등에 바탕을 두고 사회개혁을 이룩하려고 한 서구민족주의 이념과 일맥 상통한 점이 있으며 당시 사회상을 고려해 볼 때 혁신적인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국사에 대한 올바른 재인식, 특히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던 국사의 영역을 넓히고, 아울러 종래의 중국사에 부속된 한국사관을 타파하고 주체적 사관을 확립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위화론을 극복하고 國史學의 독자성과 정통성 및 민족의식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sup>6)</sup>

實學은 이조 봉건사회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근대시민사회로 발전되기 위한 역사적 과도기에 발생한 신학문으로 봉건제도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는 하였으나 주자학의 범주와 봉건적 유교질서의 규범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있으며 실학사상이 뚜렷한 민족의식을 체계화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에 실학운동이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학사상이 민족의 주체성과 봉건사회타파 및 근대지향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 그리고 후일 개화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민족주의 형성의 근간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실학사상의 역사적 배경 및 사상 발전은 한우근, 앞의 책, pp. 338-353;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p. 4-29 참조.

### III. 한말의 민족주의

#### 1. 衛正斥邪論

조선은 서양인의 항해권 밖에 위치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국내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배타적 자급자족인 농업과 수공업이었고, 필요한 수요품은 중국과의 조공으로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양과 접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사상 학문적으로는 주자학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서양문물과의 접촉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서양문물의 전래는 직접서양인에 의해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연행사신에 의해 전래되었다. 선조때 이 광정이 유럽지도를 가져와 서양에 대한 지식을 일깨워 주었고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요약, 소개하여 천주교를 처음 도입한 바 있고 정두원이 화포, 자명종, 천문서, 천주서적 등을 가져와 소개하였으며 이어 소현세자가 천주 과학서적 등을 전래하여 서학을 소개하는 등 17세기 이후 시작된 서양문물 전래는 18세기에 이르러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sup>7)</sup>

이러한 서양물질 문명의 도입은 조선의 학문, 정치, 제도, 풍습에 새로운 지식과 큰 자극을 줌으로써 조선인으로 하여금 의식확대와 동시에 주자학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유교사회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실학사상 형성의 배경이 된 것은 이미 논술한 바 있다.

처음에는 몰락 양반인 南人學者들이 학문적 관심대상으로 연구하던 천주교는 점차로 계급차별에 불만을 가진 군인, 평민, 천민으로 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고 18세기 이후 신앙단계로 들어가 명도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포교를 확대함에 따라 신도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sup>8)</sup>

천주교는 평등 내세사상을 내세우며 전통적인 신분질서를 부인하므로써

7) 서양문물 전래에 대해서는 한우근, 앞의 책, pp. 331-338 참조.

8) 천주교 교세의 확대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365-370 참조.

유교도덕과 사회규범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사상적인 도전이었으므로 위기의식을 느낀 당시 지배계급과 유림들은 천주교를 유교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사교로 단정, 이를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처한 양반유생들은 서양의 도전을 극복하고자 위정척사사상으로 응전하게 된다. 이들은 주자학의 화이사상에 입각하여 중국과 조선만을 ‘華’로 보고 일본과 서양을 금수와 다름없는 ‘夷’로 보고 이를 배척하여 화를 지킨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구체제인 봉건 신분사회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서양열강 군함의 잦은 근해 출몰이 국내에 잠입한 외국인 선교사나 국내 천주교 신도들과의 내통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던 조선정부당국은 천주교의 전파에 대한 문화적 위기감 뿐만 아니라 군함과 신무기를 앞세운 물리적 침략의 위기감까지 갖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위기감은 1860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북경침략 사건으로 더욱 심화되었다.<sup>9)</sup>

이러한 상황하에서 열강의 개국 압력이 강화되자 자연히 洋夷사상이 고조되었으며 천주교 탄압도 강화되어 1866년 「병인사옥」 때는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한 신자 8,000명을 학살하는 세계최대의 기독교 박해사건이 일어났다.<sup>10)</sup> 「병인사옥」은 결국 프랑스 함대의 무력침공 구실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병인양요」 사건과 같은해에 일어난 미국의 「저너럴 셔먼호」<sup>11)</sup> 사건 및 대원군 선친인 「남연군묘 盜掘미수사건」<sup>12)</sup>은 조선의 위정척사론자

9)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 15-23. 1860년의 英佛연합군이 조선종주국의 수도 북경을 점령한 사건은 조선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都城안은 서양세력에 대한 공포로 생산이 중단되고, 산속으로 피난가는 사람도 많았다. 일부 정부관리들은 처자와 가산을 도피시켰으며, 일부 고관들은 위급한 날에 대비하여 천주교서와 십자가 등을 사들이기도 하고 천주교도와 내통하여 안전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10) 한우근, 앞의 책, p. 384.

11) 평양의 왕릉을 도굴하기 위하여 셔먼호 선원들이 약탈을 자행하는 동안 조선사람을 살상하니 당시 평안감사 박규수가 공격하여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모두 사살한 사건임. 김영작, 앞의 책, pp. 24-25.

12) 이 사건에는 미국의 전 上海영사관 관원 F.B. Jenkins, 독일계 미국인 Ernest Oppert 그리고 병인사옥때 중국으로 도망간 선교사 S. Ferron 및 조선 천주교도들이 가담했



들로 하여금 더욱 철저한 쇄국 양이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이후 미국은 조선개국정책을 강화하여 1871년 약 1개월간의 무력시위로 셔먼호 책임을 추궁하면서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측은 12명의 사상자만 냈을 뿐 조선개국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내침 40일만에 철수하고 말았다. 동 사건으로 조선인의 미국에 대한 불신과 斥洋論만 고양시켰으니 이를 ‘辛未洋擾’라 한다.<sup>13)</sup>

‘辛未洋擾’기간 중 조선 조정은 “和解를 주장함은 곧 매국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척화비를 전국각지에 세워 국민들로 하여금 척양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개국을 목전에 둔 시기에 왜 조선에서는 척양운동이 이렇게 심화되어갔느냐에 대하여 김영작교수는 그의 저서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쇄국조선에서 위정척사론이 비등한 가장 큰 원인은 위정척사론 그 자체가 지니는 사상내적 요인에서 찾아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오페르트 일당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은 무모한 형태의 개국요구나 도전은 국내에서 위정척사론을 완화시켜 개국이라는 역사의 필연적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자극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위정척사론자에게 점점 쇄국양이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심화시키게 되었다.”<sup>14)</sup>

위정척사론은 두번의 洋擾를 거치는 동안 서양의 침입에 대항하는 이념으로서 역할을 해내는 한편 김평묵의 ‘禦洋論’의 영향으로 일종의 경제자립의식으로까지 발전되어 배타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서양의 경제적 침투에 대한 우려로 서양과의 교역반대를 주장하기에 이르른다. 어양론에

다. 그들은 남연군 묘를 도굴하여 그 유품을 탈취하여 대원군에게 개국을 강요하려 했으나 2명의 전사자만 내고 실패함. 김영작, 앞의 책, pp. 25-28 참조.

13) 미국과의 전투에서 조선군은 53명의 전사자와 24명의 부상자를 냈. 미국은 예기치 않았던 저항으로 전투를 했을 뿐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조선을 개국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하였음. 한우근, 앞의 책, pp. 389-391.

14) 김영작, 앞의 책, p. 29.

언급된 경제논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동(조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국에서 생산되는 면직물 에서 의 약농포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이 없다. 복식기용에서 토산품이 아닌것은 일체 배격하고 외국과의 상매를 금절시켜야 한다.”<sup>15)</sup>

이러한 위정척사론은 1876년의 강화도조약을 전후하여 일본에 의한 강제개항에 반대하는 척화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강화도 조약을 앞두고 ‘오불가상소’와 ‘절화소’와 같은 上疏에서 주창된 척화론에 나타난 대일 위기의식은 개항이 무력협박에 굴복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본의 끝없는 탐욕을 막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무한한 공산품과 조선의 유한한 농산물과의 교역은 결국 조선의 경제를 파멸로 몰고간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척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내부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국민총화차원에서 조정에서는 하층서민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sup>16)</sup>

1882년 한·미 수호통상조약 성립에 즈음하여 기세를 크게 떨쳤던 위정척사론자들은 개화기의 시대의 흐름에 압도되어 점점 쇠퇴하다 1895년 閔妃 살해사건과 단발령 강제실시를 계기로 다시 힘을 모아 대일 무장항쟁을 전개하였으나 이러한 반침략운동에는 화이적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절름발이 반외세 사상에 그치고만 점이 위정척사론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위정척사운동은 처음에는 반천주교적 성격에서 출발하여 斥邪, 斥洋, 斥倭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반침략적 성격을 띄워오다 개항을 전후하여 일종의 경제자립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형성된 서양의 문화적 군사적 침투에 대한 대응논리로써 자주 자립의식을 싹트게 하였으며 타 민족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감정

15) 김영작, 앞의 책, p. 33.

16) 위의 책, pp. 39-40. 원래 위정척사론자들은 반봉건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절화소”에서 국민총화를 위하여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과 연계되어 반침략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으로서 구체화되었으며 후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의병운동을 일으키는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위정척사론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국가적 위기는 예측하였으나 막강한 산업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침투해 오는 서양 열강국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국권을 수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은 창출하지 못한 채 鎖國洋夷 만을 강조하므로써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이미 17세기부터 산업발전과 봉건체제 개혁을 계속해서 주장해 온 실사구시의 학문인 실학운동을 수용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탄압, 억제하므로써 근대화의 역기능을 하였으며 개국이라는 세계조류에 당면하여 구태의연한 名分論에만 사로잡혀 있다 전혀 외세 침략에 대한 내부적인 대응준비를 하지 못한 점이 위정척사론의 한계이자 정체를 거듭하다 좌초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 2. 開化思想

兩亂이후 정치·경제·사회혼란과 피폐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조선 봉건 유교사회에 대한 비판과 자각에서 시작된 실학이 두번의 양요를 거치는 동안 위정척사론자들의 외침으로부터 민족보존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쇄국양이열에 눌러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實事求是 사상의 맥은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오다 개화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중상주의 실학파의 대가 박지원의 손자 朴珪壽가 「제너럴 셔먼호」 사건 후 부국강병을 위하여 개국통상을 통해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므로써 개화사상을 싹 틔우기 시작하였다.

초기 개화사상론자들은 개항통상은 이미 세계적인 조류이며 서양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통상을 통해 서양문물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이른바 ‘東道西器論’에 입각한 부국강병 정책을 주장하면서 자강을 통한 국권수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화사상은 박규수의 뒤를 이어 中人출신인 의사 유흥기와 역관 오경석, 천민인 승려 이동인 그리고 양반출신인 김옥

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이 가세하므로써 점차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 갔으며 이들의 사상과 활동은 1876년 조선정부의 개국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sup>17)</sup>

이들은 조선조정의 무능함과 부패함 그리고 세계사조에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통탄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서양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조선의 풍전등화같은 국운을 일으키기 위하여는 일대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東道西器論’에 의거 서양무기와 서양문물 도입을 추진 자강을 통한 국권유지에 관심이 많았으나 차츰 그 활동을 洋務運動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국민 계몽활동으로 확산하여 ‘문명개화’ 단계로 발돋움 하고자 하였다.<sup>18)</sup> 개화인사들은 1883년 10월 「漢城旬報」를 창간하고 개화사상을 민중에게 고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동 신문을 통해 선진각국의 정치 지리 과학 및 각종 국제 분쟁과 세계사조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당시 만연하던 미신적, 주술적 생활태도를 버리고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계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 신문은 관보라는 제약의 예도 당초 의도와는 달리 순한문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구독하여 읽기 어려웠다. 따라서 신문을 통한 대국민 계몽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sup>19)</sup>

시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국민적 합의에 의한 근대화로 자주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과 서양열강들의 베트남과 이집트 식민지화 등 냉엄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현실에 직면한 개화론자들은 조선의 장래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하여 1884년 12월 일본의 힘을 빌어 甲申政變을 일으킨다. 그러나 개혁을 밑으로 부터 뒷바침해 줄 대중적 지지 기반이 부재한데다 청국의 군사간섭에 부딪힌 개화세력의 개혁시도는 3일만에 좌절되고 말았다.<sup>20)</sup>

17) 개화사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는 한우근, 앞의 책, pp. 454-467 참조.

18) 김영작, 앞의 책, pp. 109-126.

19) 위의 책, pp. 112-120.

20) 갑신정변의 역사적 배경 및 실패원인에 대해서는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pp. 33-91 참조.

갑신정변의 실패는 수구파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근대화를 더 지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10년간의 보수 반동기를 거쳐 1894년 7월 갑오개혁시 兪吉濬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들은 일본의 도움으로 집권하여 내정개혁을 재시도 하였다. 갑오개혁의 중심인물인 유길준은 민중의 지적수준이 개혁을 뒷바침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믿고 교육과 계몽을 통한 사회발전을 개화 성공여부의 척도로 삼았고 교육기관 확대와 시민계몽에 힘쓰고자 했으나 재정적 사회적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치·사회개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개혁을 위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개혁에 역행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淸日전쟁 전후 발생한 농민들의 반봉건 반침략 저항운동도 개화정부의 위로부터의 개혁과 독립의 구상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탄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유길준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인식은 이성과 신의에 기초한 啓蒙地上主義 國際觀으로 김옥균 등 초기개화파에서 볼 수 있었던 약육강식의 국제 현실을 꿰뚫어 보는 국제정치관을 찾아볼 수 없고 열강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지극히 낙관적인 국제관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한 서구열강들을 국제법을 준수하는 계몽된 선진개화국으로만 파악하고 내면의 그 침략성을 이해하지 못한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이 침략성을 감추고 개화파 인사들을 앞세워 시행하고자 한 갑오개혁을 내정개혁을 위한 호기로 오판하였다.<sup>21)</sup>

동학농민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閔氏政權이 청군의 원병을 청하자 망국의 서곡 이라고 신랄히 비난하던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입경하자 일본군사력의 힘을 빌어 민씨정권을 몰아낸다. 결국 외세에 의존하여 개혁정부를 수립한 개화파 인사들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1차 갑오개혁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208건의 개혁안을 의결하였다.<sup>22)</sup> 1차 갑오개혁은 갑신정변 이래 개

21) 김영작, 앞의 책, pp. 290-297.

22) 위의 책, p. 300.

화과 인사들의 구상에 따라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시도된 2차 갑오개혁에서는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반영 일본이 군사적 강압에 의하여 노골적으로 조선내정에 간섭하므로써 개화파의 입지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開化派 정부는 반침략, 독립을 주장하며 민족적 저항운동을 이끌던 농민봉기를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을 앞세워 탄압하므로써 비주체적, 반민족적 측면만을 노정시켰을 뿐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하여 개화사상을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민족주의로 승화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일본무력을 앞세워 위로부터의 내정개혁을 시도하려던 개화파는 그들이 가졌던 낙관적 국제관으로 인하여 일본의 침략적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동기야 어떻든 갑오개혁기 동안 일본침략자의 앞잡이 역할만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대중적 뿌리가 없었던 갑오개혁은 삼국간섭<sup>23)</sup>과 민비 살해사건<sup>24)</sup> 등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려 한반도에서 일시 후퇴하자 좌초되고 말았다.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의 실패가 대중적 지지기반의 약화에 있었던 점을 인식한 서재필, 윤치호 등의 개화파인사들은 俄館播遷으로 갑오개혁이 좌절된 후 개화사상을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순국문체 신문인 「獨立新聞」을 만들고 「獨立協會」를 구성하여 朝野人士들을 회원으로 흡수하는 한편 민권확장과 독립수호 운동의 대중화에 전념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 개화파의 활동으로 개화사상은 점점 서울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기반을 확산해 나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민중기반을 중심으로 민권신장운동을 전개하여 1898년 3월에 약 1만명 이상 성년 남자들이 참가한 萬民共同會를 개최하여 외국침략세력을 규탄하였다. 그 영향으로 개화파 인사들은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열강의 이권 배격운동을 전개하여 한·러은행을 폐

23)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 대가로 下關係約에서 청으로부터 대만과 요동반도를 할양받기로 약속받아 이를 점할 하였으나 일본의 대륙진출을 주시 하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이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이 요동반도 점유권을 포기토록 한 사건임. 이 사건은 중국의 재분할 계기가 되었다.

24) 민비 살해사건과 그 대응에 대해서는 朴宗根(박영재 역), 「청일전쟁과 조선」(서울: 일조각, 1988), pp 245-337 참조.

지시키는 등 외세에 의해 침해된 주권회복 및 반침략 국권수호 민족주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나갔다.<sup>25)</sup>

그러나 열강의 이권을 반대한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첫째, 여러 열강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둘째, 특정 열강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내부분열이 일어난데다 셋째, 개화파의 대농민 계몽의지의 결여와 아울러 당시 커뮤니케이션의 미발달로 인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방 농민들에게까지 개화사상이 미치지 못하여 범국민적인 개혁 지지기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넷째, 獨立協會 활동이 정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이를 우려한 보수세력들이 이들의 활동을 입헌공화국을 추진한다고 誣告하므로써 정부의 탄압도 받게 되어 결국 독립협회를 통한 민족주의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하여 계몽된 자주 민권 자강사상은 근대적이고 자주적인 국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어 일제침략기에 있어서 민족운동을 펼쳐가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 3. 東學思想

東學은 1860년 4월 경주의 몰락양반 최제우에 의하여 유교, 불교, 선교의 장점을 취하여 「輔國安民」을 목표로 창시된 종교이다. 그러나 조선말기 정치 사회혼란에 따른 농민몰락으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고 서구열강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민족적 반발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동학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봉건 반침략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발전되었다. 동학의 발전은 농민의식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민중의식 성장은 사회의 부패척결 및 제도개혁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라도 고창에서 全瑛準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혁명은 정부로 하여

25) 萬民共同會는 한국인들이 최초로 개최한 근대적 시민대회였으며,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명 이었음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의 민중 대회였다. 정부관료나 외교사절 및 외국인들은 이 대회를 보고 그동안 한국인들의 의식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독립협회에 대해서는 신용하, 「한국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pp. 151-184; 김영작, 앞의 책, pp. 348-361 ; 이정식, 「한국민족주의운동사」(서울: 미래사, 1982), pp. 98-101 참조.

금 문벌타파, 노비문서소각, 토지균분 등 봉건제도 타파를 위한 폐정개정안 12조를 수락하게 하는 등 농민을 주체로 한 ‘아래로부터’의 사회혁명운동이었다.<sup>26)</sup>

동학혁명 후 전라도 각 읍에 설치한 집강소를 통하여 개혁정치의 실현을 꾀하던 동학도들은 일본군이 大院君을 앞세워 궁궐을 침범하여 민씨정권을 제거하고 일본 주도하의 개혁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자 전봉준을 중심으로 다시 집결하여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동학혁명 당시에는 종교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가담하지 않았던 교도들도 갑오농민봉기 때는 반침략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에 따라 동학군의 인원은 10만여명에 이르렀다. 갑오봉기 때는 전라도 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무력 항일투쟁을 벌였으나 근대장비로 무장한 일본군에 패배하므로써 동학군의 갑오 항일투쟁은 일단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갑오농민봉기에서 패배한 농민군 잔존세력은 活貧黨 등의 형태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항거하면서 반침략과 반봉건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sup>27)</sup>

東學教가 이러한 범국민적인 반봉건, 항일투쟁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개국뒤에 봉건적 수탈에 더하여 일본상인들에 의한 자본적 수탈까지 당하게 된 농민들이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민란을 일으키다 동학의 반봉건 평등사상 및 반침략 사상에 공감하여 동학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학사상은 신분해방과 경제적 평등 및 대중정치참여 등 봉건체제를 부정하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봉건제도 그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현존하던 봉건제도 가운데 유지할 부분과 개혁할 부분을 잘 조화시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동학사상의 양대축인 반봉건과 반침략은 동시병행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역사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상호 규제를 해가면서 진행되었다. 즉 초기 동학봉기때와 活貧黨 활동시는 반봉건 반정부운동이 주요 투쟁목표였으나 청일전쟁 전후 갑오 농민봉기 때와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반침략 투쟁이 더

26) 이정식, 앞의 책, pp. 38-55.

27)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대하여는 한우근, 앞의 책, pp. 434-453 참조.



욱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반봉건 투쟁은 일시 멈추고 반침략투쟁에 전념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투쟁의 대상을 조정해 가면서 국가적·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sup>28)</sup>

한말의 민족주의 운동은 衛正斥邪사상, 開化사상, 東學사상의 세 계보로 추진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위의 3사상은 모두가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공통적인 민족주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가치관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서 서로 대립양상을 보인다. 위정척사사상은 반침략 자주독립을 강조하였으나 華夷觀과 봉건주의적 체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구 및 쇠국양이 정책에만 매달리므로써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사상으로서는 공허하였고, 동학사상은 반봉건·반침략 사상으로 반체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전통적인 유교질서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한편 오히려 서구가치를 배격하므로써 당시의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상으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개화사상은 한말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구시대의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서구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으로 독립을 보존해야 하는 한말의 시대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였으나 개화파 인사들이 민중적 기반없이 외세를 업고 서둘러 위로부터 개혁하고자 했던 方法論에 문제가 있어 결국 시대적인 소명을 전환기에 다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이상 세가지 사상형태는 독자적인 민족운동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서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전환기의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였을 뿐 이를 국민통합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전환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마침내 한국이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는 데 촉매작용을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8) 김영작, 앞의 책, pp. 222-243.

#### IV. 일제하의 국권회복 운동

러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계 열강으로부터 받은 일본은 한국을 강점할 수순을 밟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韓日合邦과 동시에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망을 통한 武斷統治를 강행하였다. 일본은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개발 논리에 따라 한국을 원료공급지와 아울러 일본의 商品市場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 1차산업을 경제 착취대상으로 삼았으며 한인이 경영하는 2차산업은 탄압을 통해 말살하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민의 민족의식 성장과 민족운동계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식민지 교육정책과 종교정책을 수립, 한국민이 민족의식을 발전시키는 일이나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다.<sup>29)</sup>

한편 한국민으로서의 일제식민지하의 민족주의 운동의 최대과제는 말할 나위도 없이 國權回復運動이었다. 이러한 엄청난 목표를 두고 민족주의자들은 한말과 같은 대립과 분열을 보일 입장이 아니었다. 위정척사론자들과 동학교도들은 합심하여 항일의병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개화와 인사들은 도시시민을 중심으로 애국계몽운동을 펼침으로서 국권회복을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족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의 상호협력의 결과로 삼일운동에서 처음으로 민족주의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범국민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이끌어내므로서 민족주의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sup>30)</sup>

3.1운동은 평화시위라는 투쟁 방법이나 당시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려운 투쟁이었다. 비록 3.1운동이 독립 쟁취라는 목적을

29) 한우근, 앞의 책, pp. 513-525.

30) 김영작, “한국 민족주의의 사상사적 갈등구조(개국에서 해방전까지),”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서울: 평민사, 1990), pp. 93-104.

달성하지 못하고 2만여명의 희생자만 내고 좌절해 버렸지만 민족운동사상 최초로 민족주의 주체들간에 항일구국이란 기치아래 서로 협력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범국민적 항일저항운동을 이끈 점과 그 이후의 민족운동의 정신적인 전통을 세웠다는 점은 민족주의 운동사에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아울러 3.1운동은 한민족간에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고 항일운동을 비조직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운동에서 탈피하여 무장저항운동으로 바꾸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세계 각국에 한국민의 자주 독립의지를 천명하므로써 각국 지도자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후일 열강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독립시켜 줄 것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 하였다.<sup>31)</sup>

한편 거족적인 저항운동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무단강압정책을 포기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세우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통제를 다소 완화하여 1920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을 허용하는 등 다소의 懷柔政策을 펴나갔다.<sup>32)</sup> 당시의 사회지도층이나 지식층은 제한된 언론활동이나마 이를 통하여 민족의식과 민주주의사상을 고취하고자 노력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 민족운동은 그 형태를 달리하여 새롭게 전개되었다. 그해 4월에 이승만, 안창호, 김구 등은 상해에 臨時政府를 수립하고 독립을 위해 대외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의 독립운동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만주의 여러 독립군 조직과도 연계하여 愛國團과 義烈團을 조직, 일본요인 암살과 기관 폭파라는 무력항쟁을 지원하는 등 독립투쟁을 시위운동에서부터 무력항쟁, 외교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였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항일투사들은 독립군을 형성하여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 항일투쟁을 계속하였으며, 미국에서는 안창호가 이끄는 大韓人國民會와 이승만이 이끄는 同志會의 두 계열로 유지·계승되고, 일본에서는 재일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이 계속되었다.<sup>33)</sup>

31)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에 대하여는 한우근, 앞의 책, pp. 526-532; 신용하,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pp. 332-357 참조.

32) 한우근, 앞의 책, pp. 534-550.

33) 3.1운동이후 국외 민족운동에 관해서는 김호성, 「한국민족주의론」 (서울: 문우사, 1989), pp. 306-312.

한편 3.1운동을 거치는 동안 민족주의자들은 대개 국외로 망명하여 국내에서는 지도자 부재와 일본의 탄압으로 민족운동 추진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내 민족운동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1926년 6.10 만세 사건,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光州학생운동 등이 대표적인 국내 항일운동이었다.<sup>34)</sup>

3.1운동시까지 보여주었던 민족주의자들의 단합된 모습은 그 이후 러시아 볼셰비키혁명 이후 세계 공산주의운동 확산에 영향을 받아 좌익계열과 우익계열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각 계열은 수많은 분파로 나누어져 불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산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들간의 갈등 요인은 앞으로 세울 공화주의체제의 성격과 반식민 독립운동을 주도할 주체, 독립운동의 투쟁방법 그리고 공산계열과 비공산계열간의 사상 대립 등 이었다. 이들의 불안한 연대관계는 1930년대초 세계적화운동의 총본부인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좌익세력이 항일투쟁과 아울러 대민족 부르조아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와해되어 그 여파로 新幹會가 해산되고 항일저항운동의 힘이 분산되고 만다.<sup>35)</sup>

그러나 1936년 오승륜을 대표로 하는 在滿韓人 祖國光復會가 조직되면서 좌우합작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여 화북지방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좌우합작 기운이 더욱 뚜렷해졌으며 1941년에 조직된 화북조선독립동맹에 이르러서는 우익계열과 같은 체제관인 民主共和國 건설을 정강으로 채택하는 등 좌우진영이 민족주의 노선으로 합치되어 左右 聯合戰線이 형성되어 갔다.<sup>36)</sup> 그러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아직 좌우간에 조직상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게된 민족주의 진영은 사상적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다 조국분단이란 어

34) 3.1운동이후 학생들이 주도한 민족주의 운동형태에 관하여는 조동걸, 「한국민족주의 발전과 독립운동사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3), pp. 198-281 참조.

35) 3.1운동이후 민족주의운동에 사회주의의 유입과 그 전개는 김호성, 「한국민족주의론」, pp. 312-343 ;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 pp. 98-104 참조. 신간회는 좌우 연합 민족주의운동단체이며 설립배경 및 활동에 관하여는 이정식, 「한국민족주의 운동사」, pp. 308-323 참조.

36) 김영작, “한국 민족주의의 사상사적 갈등구조,” pp. 104-107.

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게 되어 또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 V. 해방이후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식민지로 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해방이 우리의 힘에 의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없었다. 더구나 한국 민족주의 운동가들과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립과 분열은 외세와 더불어 분단을 재촉하였다.

해방 다음날인 8월 16일 여운형은 좌우 민족주의자들을 망라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약칭 建準)를 조직하여 서울에서 공식 정치활동을 개시하였다. 건준은 좌우갈등으로 곧 내분을 겪게 되어 안재홍 등 우익인사들은 건준을 탈퇴, 조선국민당을 창당함에 따라 잔재해 있던 좌익 민족주의자들은 건준을 9월 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약칭 人共)으로 변신시켜 일제잔재 청산, 토지개혁, 봉건제도 등을 내세우며 기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였다.

한편 건준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宋鎭宇, 金炳魯, 趙炳玉 등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인공타도를 기치로 9월 16일 한국민주당(약칭 韓民黨)을 공식 발족시켰다. 그외에 김구 및 임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특별정치위원회 그리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등의 정치조직 난립으로 각 정파간의 대립과 분열이 가속화 되었다.

한편 9월 6일 서울에 진주한 미점령군은 인공과 임시정부 등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美軍政을 수립하여 직접통치를 시도하였다. 이어 12월 28일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신탁통치안 채택을 계기로 우익계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좌익계열은 신탁통치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공산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통치를 지지하고 나서으로써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sup>37)</sup>

37) 해방이후 이데올로기 갈등에 대해서는 김학준, “한국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갈등—해방부터 한국전 휴전까지—,”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구조」, pp. 66-79 참조.

그후 미소 냉전체제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미소공동 의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47년 9월 한국문제는 드디어 국제연합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남북한 총선거가 어려워지게 되자 국제연합은 48년 2월 남한에서만 총선을 통해 합법적인 정부를 세우도록 결의하였다. 국제연합의 이러한 결정으로 남한내 민족주의자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합결정 지지파와 김구를 주축으로 하는 남북협상 지지파로 갈라져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결국 남북협상 지지파의 좌절로 끝나게 됨에 따라 분단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결국 민족적 자주 독립역량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광복을 맞은데다 미소 초강대국이 냉전으로 돌입하게 되면서 강대국에 의해 국토를 분단 당해야 하는 민족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지도자들은 사분오열되어 국력을 분산, 결국 統一된 民族國家를 건설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민족적 위기 상황을 합심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을 분열시켜 불행한 결과를 자초해온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고질적인 병폐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이데올로기 대립현상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결국 民族相殘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분단을 더욱 심화시켰다.<sup>38)</sup>

韓國戰爭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반공을 국시로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정자들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안보를 빙자한 제한적인 민주주의 실시를 구체화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통일된 조국건설을 이룩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자연히 민족주의 운동은 무력한 정체기를 맞게 했다. 4.19 혁명은 그와같은 민족주의의 정체기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이 주도세력이 된 4.19는 결국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락시키고 진정한 민주체제를 정착하고 나아가 민주역량을 확대하여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주의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하였으나 이를 마무리할 성숙한 市民改革勢力의 부재로 지도자들간의 대립과

38) 김학준, 앞의 글, pp. 72-79.

혼란만 가중시키다 5.16군사 쿠데타를 맞아 4.19 혁명은 미완의 민족주의 운동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sup>39)</sup>

5.16 주도세력은 쿠데타 직후 조국근대화를 목표로 정하고 산업화 및 민주화 달성으로 조국통일의 역량을 기르겠다는 강한 民族主義 性向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운 근대화는 곧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5.16 주체세력은 민주화와 산업화는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우며 민주화의 토양을 배양하기 위하여 산업화를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개발에 전념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한국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는 자연히 희생되고 경제부흥을 위한 권력의 집중이 강요되어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sup>40)</sup> 이 결과 産業化를 어느정도 달성하였으나 근대화에 걸맞는 민주화의 진전이 없어 민족주의운동은 자연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박대통령의 암살로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80년대의 민주화의 봄을 맞았으나 정권욕에 눈이 어두웠던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이를 역이용한 군부의 쿠데타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5.18 민중항쟁의 실패는 유신정권의 연장인 5공을 탄생시키게 되어 민주화운동은 또다른 좌절을 맞게 된다.

그러나 산업화에 밀려 희생되어 왔던 民主化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민주주의식이 크게 성장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더이상 유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개헌에 의해 6공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이어 93년에는 명실상부한 文民政府를 탄생시킴으로서 민주화도 일단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민주화 정착과 근대화를 바탕으로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대적 사명을 안게 되었다.

39) 이택희,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구조」, pp. 220-221.

40) 위의 글, pp. 221-222.

## VI. 결 론

한말의 한국민족주의운동 목표는 정부관리들을 부패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농민들을 고통에 빠뜨려 국론분열을 초래케 한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동시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던 국제정치적 현실 속에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의 대전환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정척사사상, 동학사상, 개화사상이라는 궁극적으로는 외세침략으로부터 國權을 守護하겠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상치되는 사상이 생성·발전되어 한말의 민족주의운동을 이끌어 갔다.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이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투철한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민족주의를 발전시켜 대내적으로는 전근대적인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체하고 대외적으로는 서양의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국력을 키워나갔다면 식민지로 전락하는 역사의 수모를 당하지 아니하고 자주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조선중기부터 봉건타파와 산업화 등 근대화를 추진할 실학운동이 자생적으로 싹이터 점차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도전을 국가발전의 계기로 수용할 수 없었던 부패하고, 나약하고 활력을 상실한 韓末지도층은 이를 탄압하므로써 스스로 근대화를 주도할 능력이나 의욕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들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서도 침략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쟁탈을 위한 당파싸움만 계속하다 외세침략의 편의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당시 일본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구열강들은 한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고,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國力과 外交能力만 있었다면 충분히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1860년 서구열강 연합군에 의한 北京함락 이후 열강들의 강력한 국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도 이미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50년이나 있었으나 반세기를 산업화와 근대화를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다 國權을 상실해 버린 것은 전적으로 한말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지도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3.1운동 기간중에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민족주의자들의 단결과 협력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의 침투로 다시 와해되고, 민족주의자들간의 고질적 병폐인 대립·갈등·분열은 결국 해방조국을 분단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으며 곧이어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맛보게 하였다.

분단 이후 現代政治史는 과란만장의 변화와 갈등을 겪으면서 産業化와 民主化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좌절을 맛보기는 하였으나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한국민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제 남은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는 민주화의 정착과 산업화를 바탕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한국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이념으로서의 과제

朴 鍾 喆\*

## ◁ 目 次 ▷

I. 머리말  
II. 민족주의의 개념

III.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IV. 통일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 I. 머리말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과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두가지의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는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기업들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과 함께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지역공동체형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에 속해 있던 다민족국가는 단일민족 단위로 해체되는 진통을 겪음으로써 민족단위의 정치공동체가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이와 같이 상반되는 역사적 경향 속에서 18세기 이후 개별적 정치공동체 수준과 국제정치 수준에서 중요한 단위였던 민족국가의 장래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앞으로 중세와 같이 분권화된 세계질서가 형성될지, 세계정부가 구성될지, 아니면 몇개의 지역공동체권역으로 세계가 구분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는 몇가지 경향들이 상호작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세계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은 크다.

이와 같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였던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국가는 대내적으로 개인의 삶을 규정짓고 대외적으로 개인과 외부세계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19세기말 서구로부터 밀려 온 근대화의 충격에 휩쓸려 식민지배와 민족분단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한민족에게 아직까지 민족주의는 달성해야 할 목표로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언”<sup>1)</sup>과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군사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남북통일이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민족에게 민족주의는 현재의 각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통일과 변영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분단 이후 한국민족주의의 특징을 살펴 보고 통일이념으로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미래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주의의 개념 및 유형변수를 염두에 두고 해방 이후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정리하

1)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서의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참조.

고자 한다. 둘째,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한국사회의 갈등통합원리와 통일이념으로서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II. 민족주의의 개념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민족국가 수만큼이나 다양한 개념이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념적 요인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의 결합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통특성에 착안하여 민족주의를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주의는 민족 단위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역사상 존재하였던 여러 유형의 정치공동체중에서 민족국가는 민족의 단위와 정치공동체의 단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정치체제다. 민족주의를 발생하게 하는 민족의 공통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언어, 혈통, 종교, 문화, 역사의 공유 등 객관적 요인과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인이 지적된다.<sup>2)</sup>

둘째, 민족주의는 근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공통성만을 강조하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정치공동체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구분된다.<sup>3)</sup> 유럽에서 근대국가형성은 연방제나 제국, 종교적 연합체제, 무역공동체, 중세봉건질서로의 복

2) 차기벽, 「민족주의원론」(서울: 한길사, 1990), pp. 45-62.

3) 이용희는 문화적 동질집단인 「민족」과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를 구분하였으며, 민속학적 인류학적 역사적 공동체라는 의미의 「민족적」인 것과 근대국가를 형성하려는 집단적 정치의식인 「민족주의적」인 것을 구분하였다. 이용희 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서울: 서문당, 1977), p. 68.

귀 등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중에서 이념적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은 필연적이었던 다기보다는 구조적 요인과 우연한 사건들이 중층적으로 누적된 결과였다. 근대국가는 대내적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과 상비군, 조세제도 등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군사국가와 國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국가, 그리고 식민지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4)</sup>

셋째, 민족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아니라 집단적 정치의식이다. 민족주의는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화된 세계관과 혁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강조하며 대중동원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는 사유체계나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목표로 하는 정치이데올로기이다.<sup>5)</sup>

한편, 민족주의는 근대이후 세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온 여러가지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속에서 등장하였으며 역동적으로 변해왔다. 민족주의이념은 여러가지 정치·사회적 요인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과 각 나라별로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의 결합형태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민족주의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4) 근대국가의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 성격에 대해서는 이용희, 「일반국제정치학 上」(서울: 박영사, 1980), pp. 100-241 참조.

5) Leon P. Baradat, *Their Origins and Impact*(N. J.: Prentice-Hall, Inc, 1984), pp. 7-10.

6) 쿤(Hans Kohn)은 서구형 민족주의와 비서구형 민족주의를 구분하였으며, 스나이더(Louis Snyder)는 통합적 민족주의(integrative nationalism), 분열적 민족주의(disruptive nationalism), 공격적 민족주의(aggressive nationalism), 현대민족주의(contemporary nationalism)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헤이스(C. Hayes)는 인도주의적 민족주의(humanitarian nationalism), 자코뱅 민족주의(jacobin nationalism), 전통적 민족주의(traditional nationalism),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통합적 민족주의(integral nationalism),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구분하였다. 진덕규, 「현대민족주의의 이론구조」(서울: 지식산업사, 1983), pp. 83-93; 김영작, 「Nationalism의 원리와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상의 위상」, 「국제정치논총」, 제 23집 (1983), pp. 65-69.

유형론보다는 민족주의를 형성 변화시킨 요인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여러 요인중에서 특히 세계체제, 국가-사회관계 및 계급관계, 산업화 등의 변수가 중요하다. 이중에서 외부 요인인 세계체제와 내부 요인인 국가-사회관계는 민족주의의 발생에 관련된 변수이다. 그리고 산업화유형은 민족주의의 정책방향에 관련된 변수이다.

첫째, 민족주의의 유형을 결정하는 외부요인은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다. 세계체제는 국제적 노동분업 구조로 이루어진 세계경제체제와 국가간 정치·군사관계로 이루어진 세계국가체제로 구분된다. 민족국가가 국제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족주의가 세계경제체제 및 세계국가체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의 유형을 분류하는 내부 요인은 국가-사회관계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이라는 집단을 단위로 하지만 실제로 「민족」은 다양한 하위집단과 계급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세력이 어떤 이유로 민족주의이념을 표방하고 민족주의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각 나라의 국가-사회간 역학관계, 계급관계 등에 따라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전개과정이 달라진다.

셋째, 민족주의의 유형은 산업화정책에 의해서 달라진다. 세계경제체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라는 자유무역주의 측면과 함께 일단 국경선에서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 통제되는 보호무역주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간의 긴장관계에 대한 일정한 적응양식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화의 시점, 국가와 국내자본 및 해외자본과의 관계, 산업화주도세력, 산업화정책 등에 따라서 민족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 Ⅲ. 한국민족주의의 특성

남북분단후 한국민족주의는 운동의 실체로서의 활력을 상실하고 논의 자

체가 금기시되거나 민주화, 경제발전, 통일 등 다른 문제와의 관련속에서 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이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일제 식민지배의 경험과 남북분단은 19세기 이후 근대화의 충격에 대한 한국민족주의의 실패였다. 근대국가 건설과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여러 종류의 운동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된 경험과 남북분단의 현실은 한국민족주의를 내면으로 침잠케 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남북분단 현실은 한편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현실속에 안주하는 체념을 낳기도 하였다.

둘째, 유럽이나 대다수의 제3세계 국가와 달리 한민족은 민족적 동질성과 단일국가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근대적 민족주의의 형성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7)</sup> 단일민족의 공통성을 당연시함으로써 근대적 가치관과 규범에 근거한 민족주의의 근대적 성격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민족주의의가 대외적으로 저항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반면 대내적 갈등통합 원리로서의 측면이 약한 원인이기도 하다.

셋째, 해방후 한국의 국가는 식민지시대에 과대성장된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위로부터 형성되었다.<sup>8)</sup> 지배세력은 민족주의 이념에 의존하거나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세계적 냉전과 분단구조에 편승하여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7) 이와 관련하여 노재봉은 한국에서는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단일민족이라는 요인때문에 낭만적 민족주의가 존재하며 그 때문에 한국민족주의가 활력을 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양호민 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서울: 아세아 정책연구원, 1977), pp. 229-234; 손세일도 한국민족주의의 단일민족주의적 성격은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발전하기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손세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서울: 민음사, 1983), p. 132.

8)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 (서울: 한길사, 1985), pp. 183-216.

따라서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한 국가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이념이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되었던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건설과정에서 민족주의이념이 표출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넷째,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와의 밀접한 연관속에서 국가주도하에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산업화가 추진됨으로써 경제적 민족주의가 전면에 내세워질 수 없었다. 국가는 민족주의적 이념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본 및 기술의 합리적 배분과 시장조건에의 순응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통치의 경험과 분단현실, 단일문화전통, 위로부터의 국가건설과정, 중상주의적 산업화 등이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활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보면 해방이후 한국정치외교의 흐름 속에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제약 속에서도 민족주의를 재해석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해방이후 한국민족주의의 특징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라는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이 민족주의의 대내외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지니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의 정책과 정책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한 저항세력들의 입장을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조명한 것이다.

해방후 한국민족주의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정치이념과 정책프로그램간의 갈등과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두가지 유형의 민족주의를 첫째 외부요인인 냉전체제와 분단, 둘째 내부요인인 국가-사회관계, 셋째 산업화정책이라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9) 진덕규는 한국에서 현대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일민민족주의(1945-1950년대), 계몽적 민족주의(1960년대 초), 교도적 민족주의(1962-1967년), 산업화민족주의(1967-1972년), 국가민족주의(1970년대 후반), 민족주의 대립(1980년대 이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공식화되지 않고 국가이념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국가민족주의와 민중민족주의의 대립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분단체제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9권 2호 (1991) 참조.



## 1. 위로부터의 민족주의

### 가. 외부요인 : 냉전체제와 분단

해방후 한국민족주의의 성격을 규정한 일차적 요인은 국제적 냉전체제다. 2차대전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차적 관심은 경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군사적인 것이었다.<sup>10)</sup> 한국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간의 세계적 대결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침범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헤게모니하에서 군사적 안보가 보장됨으로써 한국의 집권층은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 사회로부터의 자원추출에 힘쓰거나 민족주의 이념에 호소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후원·수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해방후 분단상황과 좌·우이념 대립은 민족주의의 활동공간을 극도로 제약하였다. 더욱이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극단적 이념대립과 체제대결로 몰아갔다.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이념대결을 넘어설 수 있는 민족주의의 포용범위는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반공과 안보제일주의는 정치적 경쟁구조의 제도화를 제약하였다.<sup>11)</sup> 남북 대치상황과 북한의 빈번한 도발 등으로 인하여 민족주의적 상징을 동원하려는 정치적 반대세력은 「용공주의자」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경쟁의 이데올로기지형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쟁은 보수세력간의 권력투쟁으로 한정되었으며 각종 연줄망을 동원하려는 과벌대립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10) 임현진, 권태환, “국가와 국제정치 경제체제: 한국에서의 종속적 발전의 경험,” 「한국사회학연구」, 7 (서울: 한울, 1984), p. 69.

11) 안병준은 한국에서 반공과 안보제일주의가 동일시되었으며, 안보는 북으로부터의 안보 유지와 국내급진세력의 도전으로부터의 체제유지라는 대내적 안보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안병준, “한국에 있어서 국가, 사회 및 정치,”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6), pp. 333-334.

## 나. 내부요인 :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민족주의가 대외적 측면과 함께 대내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민족주의의 경우 19세기말 이후 일제 식민지 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대외적 측면인 저항민족주의의 측면만이 강조되었다. 더욱이 남북분단과 좌·우이념 대립으로 말미암아 민족주의의 대내적 측면이 구체화될 계기가 없었다.

서구의 경우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주의는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국제냉전의 결과로 외부로부터 주입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우위에서는 현상이 나타났다.<sup>12)</sup> 한 정치학자의 표현처럼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완제품으로 수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념의 역사적·사회적 함의(connotation)는 捨象된 채 그 外意(denotation)만이 고려되어 마치 보편적 원리처럼 취급되었다”<sup>13)</sup>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처럼 사회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이념을 내재화시킬 헤게모니계급이 결여된 채 외부로부터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반이 허약하였다.<sup>14)</sup>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과 동일시되었으며 국가가 반공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움에 따라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확립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sup>15)</sup> 그리고 미국이라는 후원국가가 국제적 냉전의 이데올로기 대결수단으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국가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의 내면화보다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외면적 의미만이 강조

12) 노재봉, “한국민족주의와 자유주의,” pp. 221-222.

13) 박상섭, “한국정치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 412.

14) 위의 논문, p. 413.

15) 임현진, 백운선, “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 정치와 국가」, p. 230

되었다. 그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보수지배세력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의 저항을 허용하지 않는 비탄력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sup>16)</sup>

중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 과정에서는 중산층과 노동층, 수입대체산업가들로 구성된 민중연합이 형성되었다.<sup>17)</sup> 그러나 한국의 수입대체산업화는 미원조물자의 배분 및 가공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료와 자유당, 수입대체산업가들은 중산층 및 노동자층과 연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더욱이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급진적 민족주의를 상실하고 체제순응적으로 되었으며, 지주들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1950년대 한국의 보수연합세력은 수입대체산업에 반대하는 지주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민중적 민족주의연합을 형성할 필요도 없었다. 보수연합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이념을 표면에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과 선거조작에 의해서 정치적 지배를 지속하고자 함에 따라 정치이념과 정치현실간의 괴리가 커졌다.

5.16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엘리트는 군사정권 초기에 「내포적 산업화 정책」<sup>18)</sup>을 내세우고 농어촌 고리채정리, 화폐개혁,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민중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였다.<sup>19)</sup>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민주공화당을

16) 박상삼, “한국자본주의와 정치체제: 기능주의적 환원론의 극복을 위한 시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정치의 현대적 조명」(1987), pp. 471-472.

17) 중남미의 수입대체산업화와 민중주의연합에 대해서는 Albert O. Hirschman, “The Political Economy of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in Latin America,” in Albert O. Hirschman, *A Bias For Ho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pp. 85-123 참조.

18) 군부의 집권초기 경제정책을 이념대결보다 국가이익우선, 기간산업육성을 통한 국민경제건설, 경제계획과 국가의 역할 중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포적 산업화정책」이라는 시각에서 설명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기미야 다다시,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전략의 좌절”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Ho-Yeol Yoo, “A New Political Economy of Economic Policy Change in South Korea, 1961-1963: Crisis, Uncertainty, and Contradic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참조.

19) 김용호는 한국의 민주공화당과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을 헤게모닉정당 (hegemonic party)의 틀에서 비교하고 민주공화당은 경쟁적 정당정치 경험, 정당내의 이질성,

조직하여 「민족적 민주주의」노선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족적 민주주의노선」은 군부지도층 내부의 정책대립과 미국의 압력, 동원적 정당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부감 등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변질되었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이거나 반제국주의적·반미적인 상징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sup>20)</sup>

1공화국의 보수지배세력이 외형적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던 것과 달리 3공화국 이후 집권층은 반공과 함께 경제발전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웠다. 반공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이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질적으로 반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유보될 수도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적 민주주의」, 「생산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들이 제시되었다.

유신체제는 안보와 경제발전주의가 극단적으로 결합된 통치체제였다.<sup>21)</sup> 유신체제의 집권층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고수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였으며 대중동원을 위하여 민족주의이념을 이용하지도 않았다. 그대신 권위주의적 통제와 위로부터의 총력체제 구축<sup>22)</sup>에 의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신체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

민중주의 정책의 결여,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통제력 미약 등의 요인때문에 헤게모니 정당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김용호, “권위주의리더쉽과 패권정당운동 : 한국과 멕시코분석,” 한국정치학회 편,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1989), pp. 223-239.

- 20) Jae-Souk Sohn, “Political Dominance and Political Failur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Henry Bienen, ed., *The Military Interven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p. 115 ; Sung-Joo Hah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1961-1984,” in Robert A. Scalapino, Seizaburo Sato, and Jusuf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 129.
- 21) 진덕규는 군부의 이념적 성향이 반공과 발전주의를 결합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체제연구서설,” 「한국사회변동연구 1」(서울: 민중사, 1985), p. 48.
- 22) 김영명은 유신체제를 분단상황에서 총력체제 구축과정으로 이해하였음.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p. 377-408.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한국의 산업화는 냉전체제와 분단의 구조적 조건이 적절히 활용된 결과였으며 그 부산물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수반되었다. 위로부터의 산업화는 물질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의 다원화를 가져왔다. 위로부터의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권위주의체제는 민주화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산업화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장시킴으로써 사회로부터 포위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1987년의 민주화투쟁과 대통령직선제 실시, 1992년의 문민정부의 탄생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 다. 산업화정책 : 원조경제체제에서 중상주의적 산업화로

1950년대에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구하였다. 상업자본가와 관료, 정치인들은 군사원조로 제공된 미잉여농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경쟁하였다.<sup>23)</sup> 1공화국의 자유당정권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반 또한 미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정당성기반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5.16후 군부정권 초기에 민중주의적 발전전략이 실패한 뒤 국가주도 수출산업화정책이 추진되었다. 위로부터의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도 수출산업화정책은 민중주의적 에너지를 동원하려던 초기 정책에서 벗어나서 신중상주의적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산업정책이었다.

신중상주의는 서유럽의 경제적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었던 중상주의가 2차대전 후 국제정치경제질서를 배경으로 하여 재현된 것으로 수출주도와

23) 1공화국의 수입대체산업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박종철, "1공화국의 국가구조와 수입대체산업의 정치구조," 「한국정치학회보」, 22집 1호 (1988), pp. 97-118.

보호무역주의, 공업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 先성장 後분배, 경제력 향상을 통한 국력배양 등을 목표로 한다.<sup>24)</sup> 한국의 신중상주의 산업화전략은 지도자본주의(guided capitalism)의 형태로 나타났다.<sup>25)</sup> 서구에서 자본가가 자본축적에 의해서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국가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가 자본가를 육성·보호하였다. 한국의 신중상주의정책은 남북분단 현실에서 군사력증강을 위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한층 중요한 동기를 부여 받았다.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산업구조의 심화라는 요인외에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군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sup>26)</sup>

신중상주의적 지도자본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시장형성자 역할」과 「시장순응자 역할」을 신축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한국의 국가는 재정·금융정책, 외환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조정을 통하여 시장의 작동구조와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업가의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형성자 역할」을 수행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시장형성 역할이 지나쳐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장순응자 역할」을 해야 했다.<sup>27)</sup>

국가가 「시장형성자 역할」에 충실하여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거나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를 규제할 경우 국가이익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재벌의 부정축재처리(1960년, 1961년)와 부실기

24) 박광주, “집정관주의적 신중상주의국가론,”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pp. 194-196; 앵터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경제발전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고 강제력보다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치체제를 신중상주의체제(neo-mercantilism)라고 정의하였다.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 391-416.

25) 박광주, “한국적 지도자본주의론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 28 (1987 가을), pp. 57-83.

26)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종철, “산업화와 국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배호 외, 「한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92), pp. 178-203.

27) 임현진, 김병국,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자본·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사상」 (91 겨울), pp. 122-130.

업정리(1969년)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는 개별 자본가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위한 산업조정이라는 민족주의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5.16후 부정축재처리의 불완전성, 8.3조치(1972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과정(1979-1981년)에서 초국가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현실 등은 국가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한국의 신중상주의적 지도자본주의는 국제적 냉전구조와 남북분단구조 속에서 先성장 後분배, 先성장 後민주화, 先성장 後통일의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냉전체제와 분단현실에 정면 도전하기 보다는 위로부터의 자원 동원과 권위주의적 방식을 결합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였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실질적으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화와 통일을 이끌어 나갈 주역인 시민층을 형성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와 분단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 국제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 계층간·지역간 갈등 수반 등으로 인하여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의 도전에 시달렸다.

## 2.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 가. 외부요인에 대한 저항 : 종속에 대한 비판과 탈종속의 모색

해방후 국가건설과 산업화가 냉전체제와 분단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한국의 대외규정성, 특히 대미의존은 체제비판세력의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다. 한·미간 후원·수혜관계에 대한 비판은 상황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반미감정에서부터 집단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50년대 대미비판은 주로 보호자로서의 미국의 오만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미의존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으며 반미의식이 표면화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는 3공화국의 집권층과 반대세력간의 역학관

계를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였다. 집권층은 정권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확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반일감정의 폭넓은 공감대 때문에 이 문제는 반대세력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세력의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자세 및 협상과정의 비공개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 이유는 한일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집권층과 일본의 기업가 및 한국의 기업가간에 유대망이 형성됨으로써 일본자본이 한국에 재상륙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분업체계가 형성되어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다.

1980년 광주사태로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과 반미주의의 성격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5.16, 광주사태 등과 같이 한국의 중요한 정치변화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비판은 냉전체제 형성과 남북분단, 한국전쟁 등에 있어서 미국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의 민주화보다는 정치안정과 군사적 안보를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한국에서 권위주의정권의 등장과 지속을 묵인 내지 지원한다는 논리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반미의식은 1982년 3월 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광주사태를 계기로 반체제세력은 미국이 단순히 한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한·미관계는 혈맹관계이며 정치·군사적 후원·수혜관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지배와 종속의 구조적 관계」로 인식되었다. 1980년에 나타난 급진적 반미운동은 여러가지 갈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규정하고 한국의 식민지적 종속성과 한국지배층의 매관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sup>28)</sup> 요컨대 1980년대의 반미운동은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형성

28)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관련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신식민지파시즘론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들은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서 민족해방파(NL파)와 민중민주주의파



과 산업화의 배경이 되었던 한·미관계와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 중상주의적 산업화전략 등을 「구조적 종속」이라는 급진적 시각에서 비판하였다.<sup>29)</sup>

급진적 반체제세력은 탈종속의 대안으로 국제분업체제로부터의 탈퇴와 자립경제체제 (autarky)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바로알기운동과 주체사상의 수용이 시도되었다. 대외종속에 대한 비판은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 일으킬 요소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급진적 반체제세력은 한미관계를 제국주의적 지배·종속 관계로 규정하고 비현실적인 폐쇄체제를 모색함과 동시에 북한편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논리적 설득력과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 나. 내부요인에 대한 저항 :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에서 민중민주주의로

1950년대에 집권층과 반대세력간의 주된 쟁점은 자유민주주의의 충실한 실천에 대한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민주주의이념으로 정당화시켜야 하는 문제야말로 자유당정권이 직면한 최대 딜레마였다. 집권층은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일시하고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반대세력의 비판은 자유당정권의 비민주성과 민주주의원칙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것이었다. 외부에서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의 헤게모니하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보수세력들이 민주주의 對 독재라는 이분법을 중심으로 경쟁하였던 것이다.

3공화국에 들어서서 집권층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보할 수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는 집권층의 정당화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3공화국 초기 반대세력의 주된 공격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것이었다. 5.16후 학생들의 「민족적

(PD파)로 구분되었다.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 2」(서울: 죽산, 1989)를 참조하기 바람.

29) 장달중, “반미운동과 한국정치,” 김덕중 외, 「한·미관계의 재조명」(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8), pp. 123-143.

민주주의의 장례식」은 민족주의를 표방한 새로운 대외의존관계 형성과 독재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적 갈등현상이 나타나며 따라 반대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점차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반체제운동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학생과 지식인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과 연계하는 양상을 띠었다.

1970년대말 이후 대외적 종속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반체제세력은 의회민주주의의 회복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중 및 민중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sup>30)</sup> 실천적 차원에서 민중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피지배층의 연합을 의미하였다. 민중민주주의론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지배층의 이익을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민중연합혁명에 의해서 富 및 권력의 분배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제국주의적 종속관계로부터의 탈피와 계급지배의 철폐를 목표로 한 민중민주주의는 해방후 여러 갈래로 잠재화되어 있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가장 급진적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편성을 획득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 산업화로 인한 중산층의 형성, 남북분단의 현실 등으로 인하여 급진적 변혁운동의 활동공간은 극도로 협소하였으며 정치적 실체로서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30) 박현채는 민중을 노동자계급을 기본으로 하여 농민, 소상공업자,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현채, 「민중의 계급적 성격규명」, 김진균 외,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1」 (서울: 한울, 1986), pp. 49-56; 한완상은 민중을 총체적으로 피지배층으로 정의하고, 對自의 民衆으로서의 중산층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완상, 「민중과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80), pp. 39, 79; 한상진은 중산층과 민중에의 귀속의식을 동시에 지니는 「중민」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중산층과 민중의 개념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한상진, 「중민이론의 탐색」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pp. 65-66.

#### 다. 분단극복과 통일운동

분단상황에서 통일문제는 남북한 지역의 영토적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념대결 및 남북한 각각의 체제유지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시각에서의 통일문제 제기는 국제냉전구조와 반공이념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으로 보수지배세력의 정당성을 잠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통일문제논의는 체제문제와 직결된 금기사항에 속했다. 1공화국에서 자유당정권의 북진통일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평화통일론을 제시하였던 진보당은 당수가 사형되고 당이 무효화되는 운명을 맞았다.

4.19후 학생들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통일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장면정부는 유엔감시하 총선에 의한 평화통일론을 제시한 반면, 진보세력들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견해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군철수, 남북교류, 중립화통일론 등을 주장하였다.<sup>31)</sup>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남북학생회담개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4.19후 다양한 통일론의 전개는 분단극복과 민족주의의 과제를 확대된 정치적 공간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통일론의 제기는 보수세력과 군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3공화국과 유신체제기간동안 반체제세력의 비판은 주로 한일국교정상화, 3선개헌반대, 유신반대 등에 집중되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반체제세력은 통일문제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학생 및 재야의 다양한 통일론은 크게 보면 先민주 後통일론과 先통일 後민주화론으로 구분된다. 先민주 後통일론은 통일방법과 통일절차 및 통일후 체제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한다. 반면 先통일 後민주화론은 모든 형태의 통일은 다 좋다는 統一至上論에서부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견해, 통일을 위해서 반미자주화와 과시스트체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

31)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종로서적, 1983), pp. 89-94, 171-196.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포함하였다.<sup>32)</sup>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냉전체제와 분단구조 및 그러한 구조적 틀내에서 진행된 중상주의적 산업화에 대해서 도전하였다. 1950년대에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국가이념으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실질적 실천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3공화국 이후 산업화로 인한 갈등이 나타남에 따라 급진적 내용의 민중민주주의론이 제기되었으며 통일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급진화·혁명화됨으로써 활동반경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빚었으며 대중적 지지기반도 상실했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자신들의 주장을 실현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민주화와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계속 환기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통일문제를 체제내로 수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IV. 통일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통일은 한민족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민족 전체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점에서 한민족은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사회의 화해·협력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궁극적인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자유, 평등,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목표로서의 통일」은 한국민족주의의 틀내에서 모색될 수 밖에 없다.

해방이후 한국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의간의 拮抗關係 및 補完關係를 통해서 형성·변해왔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민족국가건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사회의 주역인

32) 이정복, “남한의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제3권 1호 (1987 봄), pp. 127-141; 김도태, 「제야통일안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참조.

시민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 대외적 자율성 확보, 통일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한국민족주의는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민족주의를 창조적이고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종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 (1)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

남북간 이념대립 및 경쟁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민족적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민족문화의 동질성, 민족성원으로서의 일체감, 역사의 공유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경우 서구의 근대민족국가에서의 「민족」개념보다 언어·혈연·문화를 바탕으로 한 게마인샤프트적인 「겨레」라는 개념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sup>33)</sup>

그러나 1945년 이후 남북한간 문화의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sup>34)</sup> 문화가 이념 및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부구조로서 총체적 의사소통체계이며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남북간 문화는 상당부분 통합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민족이라는 개념도 계급적 관점에서 정의함으로써 한국의 민족개념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히 남북간 전통문화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새로운 문화적 동질성을 넓혀나가는 문화공동체형성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북한 내부에서 文化變容現象(acculturation)이 일어나거나 남북간 문화통합정책에 의해서 南北間 文化的 相容性이 증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신일철, “저항적 민족주의: 그 대내면,”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pp. 69-71; 신용하는 서구에서 민족형성은 근대적 현상인 반면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터키, 이집트 등은 근대 이전에 「전근대 민족」을 형성한 뒤 「근대민족」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용하, “민족형성의 이론,” 「한국사회학연구」, 7, pp. 5-51.

34) 최상용은 1945년 이후 남북간에는 정치권력의 실체로서의 국가(Staatsnation)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문화국가(Kulturnation)와 민족의식을 토대로 한 국가(Bewußtseinsnation)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최상용, “평화,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 3권 1호 (91 봄), pp. 24-30.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복고적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갈등통합원리로서의 한국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원리가 되어야 한다. 민족주의의 틀내에서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이 용해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해서 한국사회의 내부역량을 신장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아울러 통일후 남북간 지역갈등과 계층간·세대간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이전에 남북간 공통기반을 넓히기 위한 점진적 통합방안이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3)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통일한국의 이념은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이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때 민주주의 이념과 다원주의 정치체제가 통일한국의 정치적 미래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국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시민사회<sup>35)</sup>의 자율성회복과 국가·시민사회간의 균형을 목표로 해야 한다.<sup>36)</sup> 또한 전체로서의 민족이익과 개체로서의 개인 및 집단이익이 상호조정될 수 있는 협상의 틀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의회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갈등과 통일문제에 대한 異見들이 의회정치의 틀

35)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밖에서 개인들과 집단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서 조직되는 가정생활, 경제영역, 문화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의 사회활동영역”을 의미한다. David Held,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 6.

36) 한배호, “정치변동과 국가-사회의 긴장관계,”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울: 한울, 1992), pp. 75-82.

내로 수렴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와 권력의 재분배에 의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제노동분업과 시장경제의 현실 속에서 자본축적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개입과 시장자율성의 적절한 배합 및 국가와 노동, 자본간의 협상의 틀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

그동안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세력에 대해서 농민, 대중, 중산층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다.<sup>37)</sup> 이러한 견해는 한국사회의 시대별 상황과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재 계층구조와 정치·사회세력의 정치성향 및 세력분포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은 시민계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은 「公人과 문화인」으로서의 성격과 「장사꾼」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시민은 반드시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틀내에서 국가개입과 계급지배의 중화를 모색하며 시민문화의 체계모니를 받아들이고 있는 개인과 집단, 계층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39)</sup>

37) 이용희는 “농촌의 대중과 도시지식인의 전진적 민족주의의 결합”을 주장하였다. 이용희저,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 p. 93; 최상용과 손세일은 대중을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층으로 설정하였다. 최상용,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민족주의,” pp. 353-354, 손세일, “한국민족주의의 과제,” 노재봉 편,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정치」, pp. 114-135; 고영복은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半도시화된 층이고, 계층적으로 중간층이며, 제도적으로 지식인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영복,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와 담당세력,”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서울: 법문사, 1983), pp 320-323.

38) 이와 관련하여 양승태는 “시민적(civil)이라는 용어는 문화, 도덕적 가치나 보편적 사회질서를 실현하거나 실천을 지향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부르주아는 물질적 가치 혹은 재산이라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되 한정적인 가치의 소유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양승태, “무존재적 역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언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343-348.

39) 서구에서 민족주의의 주도세력은 경제적 계급에서 공적 시민으로 전환한 시민이었다.

한국에서 산업화의 결과 계층분화현상이 일어났지만 각 계층은 삶의 양식과 정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계급지향적 성향(class-oriented inclination)을 보이기 보다는 지위지향적 성향(status-oriented inclination)을 보이고 있다.<sup>40)</sup> 특히 한국에서는 제3세계의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구조, 남북대결로 인한 계급문제의 표출억제, 한국인의 지위 상승욕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계급계층적 현상보다는 지위계층적 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sup>41)</sup> 한국에서는 계급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 의해서 집단단식이 형성되고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투표결과에서 나타나는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성향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은 계급적 차원에서 모색되기 보다는 「계급연합적이고 초계급적인 시민연합」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노동자와 사무직노동자, 구중간계급 등을 망라한 시민계층들이 계급혁명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2)</sup>

---

부르주아계급은 봉건영주와 토지귀족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패권적 계급(conquering class)으로 등장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본축적을 하는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 40)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급(class)이 가장 중요하고 계급에 의해서 지위(status)와 권위(authority, 정치권력을 의미함)가 결정되며, 계급요인에 의해서 사회가 양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버(M. Weber)는 지위는 종교, 교육, 교양 등에 의해서 형성된 삶의 방식(life style)에서 연유하는 사회적 명예 또는 위신(social honor and prestige)을 의미하며 계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반드시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위도 계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독자적 영역이 있으며 계급과, 지위, 정치적 권위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ric A. Nordlinger, "Political Sociology: Marx and Weber," in Eric A. Nordlinger, ed., *Politics and Society*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pp. 18-20.
- 41) 박광주, "한국적 지도자본주의론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 28 (1987 가을), pp. 57-83.
- 42) 한완상, "한국에서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계급,"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 9-25.



시민들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개혁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이를 현실적 토대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들이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수렴될 때 대내적 갈등통합과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는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 (5) 한국민족주의와 국제주의

한국민족주의는 세계경제체제와 세계국가체제안에서 한민족의 자립과 번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한국민족주의는 세계체제속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과정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후 한국민족주의가 배타적 성향이나 팽창적 성격을 띠지 않고 국제화해·협력을 지향하면서 민족적 자존과 자율성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의 민족주의 :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중심으로

徐 載 鏡\*

## ◁ 목 次 ▷

- |   |  |
|---|--|
| I. 서 論  | 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br>우리식 사회주의                    |
| II. 북한에서의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태도                      | 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br>조선민족제일주의 |
| III.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 | VI. 결론 : 북한 민족주의의 특성과<br>통일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
| I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                          |  |

## I. 서 論

수천년 동안 통일된 국가였던 남북한이 외세에 의하여 분단되었고, 남북에 나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핏줄을 지닌 혈연공동체이며,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남북한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적 체계는 민

\*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長

족주의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우리의 새정부가 민족주의적 통일방안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이 민족대단결론을 주장하는 등 민족주의가 통일문제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남북을 이념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통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이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민족적 요구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통일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리라고 보여진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북한도 사실상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때 북한에도 국제적 현상과 더불어 민족적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국민국가의 건설, 국경 유지의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민족적 정체감 또는 민족적 의식이 민족주의적 현상의 일부라고 볼 때 북한에서도 ‘민족주의적’ 현상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북한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념이자 유일한 이념으로 주장되는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있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념적 목표로 삼는 등 모든 영역에서 지도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인 동시에 우리의 통일정책수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주의에 급격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주체사상을 여러가지 내용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 배타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여러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신문, 라디오 및 TV를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에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1986년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최근에 단행본으로 된 이론서에서 체계화되어 발전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나아가 1991년 8월 1일에 김일성이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담화에서 자신이 민족주의자임을 주장하였고 또 금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여 남한에 대하여는 민족주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족주의를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조아계급의 전유물이라고 거부해오던 북한이 민족주의 개념을 부활시키는 배경이 무엇인가? 왜 1986년이라는 시점에서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변용되고 있으며, 김일성이 현시점에서 새삼 자신을 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북한 민족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 II. 북한에서의 민족주의 개념에 대한 태도

사회주의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 까닭은 첫째로 사회주의자들은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민족주의가 그 주요 담당자인 부르조아의 이익에 봉사하였다는 인식이다. 즉 민족주의는 토착부르조아들에게 국내시장을 보장해주었고 그들의 해외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국주의의 형태를 띤 민족주의는 식민지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며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만 몰두하고 민족주의를 계급투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은 마르크스의 이론적 예견과는 달리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민족주의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는 몇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공허한 허구로 드러나자 많은

1) Horace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 27.

사람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노동운동을 자연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sup>2)</sup>

반제국주의운동에서 민족주의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레닌이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민족운동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은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만이 제국주의의 진정한 적대자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주의가 소수민족의 민족운동에서 프로레타리아가 그 계획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 하나의 효소 역할, 하나의 박테리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레닌은 민족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민족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프로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범위를 진보적인 민족운동에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진보적인 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족문제에 대한 레닌의 본질적 원칙이었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민족문제에 관한 레닌의 가장 독창적인 공적은 민족과 계급을 변증법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그의 시도에 있었다. 그러나 레닌에게 있어서 민족자결권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전술적 문제였고, 따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은 아니었다.<sup>3)</sup>

레닌의 이러한 온건적 인식과는 달리, 비타협적 국제주의자로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스탈린을 들 수 있다. 스탈린은 철저한 계급적 관점에 기초하여 민족주의에 대하여 강한 부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데이비스(Horace Davis)는 스탈린보다 민족주의에 대하여 더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공산주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로자룩셈부르크는 민족의 억압은 자본주의적 지배의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보고 자본주의를 제거하지 않고는 민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sup>4)</sup>

2) *Ibid.*, p. 31.

3) 박호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89), p. 234.

4) 위의 책, p. 234;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p. 103.

북한은 사회주의의 이러한 인식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은 민족주의란 자본주의제도에 그 사회계급적 근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에서는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근원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은 그 계급적 본성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사회주의 사회에는 민족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계급적 근원이 없다고 인식되는 것이다.<sup>5)</sup> 북한은 민족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그것이 협소한 부르조아들의 계급적 이익을 민족적 이익이라는 간판으로 가리우고 민족들간의 반목과 적의를 고취함으로써 결국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희생시켜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파괴하는 반동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1985년에 간행된 「철학사전」의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북한에서 민족주의가 거부되는 핵심적인 이유를 읽을 수 있다.

“민족주의는 우선 대내적으로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을 떠난 ‘전민족적 이익’을 내세움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계급적 이익과 민족적 이익을 자각할 수 없게 한다.<sup>6)</sup> 민족주의는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이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한다.”

김일성에게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공격적 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 같다. 그래서 민족주의 개념보다 외부적 공격, 침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하고 폐쇄하여 방어하는 속성을 가진 ‘주체사상’ 개념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은 절대로 민족주의로 불려져서는 안되는 사상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체사상은 반민족주의적 사상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기능과 그 결과가 민족적 이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대신에 사회주

5)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27.

6)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53.

의적 애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계급의식,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과 민족자주의식,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키고 있는 사상”<sup>7)</sup>이라고 정의되는데 계급주의적 세계관이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고 주장한다.

### III.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서의 주체사상

#### 1. 정권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형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국제연대를 고수하다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자주’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조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소련의 수정주의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격변에 대한 북한의 대응

주체사상이 형성된 국제적 배경은 사회주의권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북한에 침습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달 후부터 스탈린의 우상숭배는 소련에서 완화되기 시작했고 수정주의적 징후가 나타났으며 1954년말 이후에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하는 연설을 통해 인류의 진보적 지도자, 세계의 영감, 소비에트 인민의 아버지, 과학과 학문의 거장, 군사적 천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등 최고의 찬사로 숭배되었던 스탈린이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고문광이요,

7) 위의 책, p. 351.

대량 살륙자이며, 소련을 재앙으로 몰고간 군사적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고 스탈린의 편집광적인 망상, 고문, 숙청에 관한 온갖 죄상을 낱낱이 폭로하였던 것이다.<sup>8)</sup>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도덕적 황폐화에 대한 고발은 사회주의권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의 영향은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反蘇 민족주의 감정이 발달해 있었는데 후르시초프의 이 연설은 화약에 불을 붙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폴란드에서는 1956년 6월 포즈난 노동자들이 ‘빵과 자유’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하다가 폭동으로 발전하자 군대가 투입되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53명, 부상자 300명, 체포자가 323명에 달하는 이른바 포즈난 사건이 발생했다.

헝가리의 1956년 사건은 훨씬 대규모 사건으로 발전되었고 결국은 소련 군대가 투입되어 진압되었다. 당원, 지식인, 학생, 공장노동자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과 계급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적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전국적 혁명적 운동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정치지도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sup>9)</sup>

이러한 사회주의권의 내부 변화를 김일성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사주와 반혁명분자들에 의한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미칠 영향을 매우 우려하였다.

“제국주의 간섭자들과 헝가리 반혁명분자들에 의하여 도발된 헝가리에서의 반혁명적 폭동은 헝가리 노동혁명 정부의 요청에 의한 소련의 국제주의적 원조와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헝가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

8)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0-51.

9)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동구사연구회 편, 좋은책 편집부 역,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좋은책, 1990), p. 197; Howard Davis and Richard Scase, 한상진 역, 「체제비교 사회학」 (서울: 느티나무, 1990), p. 185.



에 의하여 급속히 진압되었다.”<sup>10)</sup>

“헝가리 인민은 국내 반혁명세력을 타도하고 자기들의 사회주의 전취물을 빛나게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라과의 중심에 새 전쟁의 온상을 조성하려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sup>11)</sup>

헝가리 사태는 노동자들의 반사회주의, 반소 민족주의운동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개입했고 또 소련군의 개입없이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국적인 대규모적인 격렬한 시민봉기였는데 북한에서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소련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1989년에 일어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바로 이때 1956년에 일어났을 것이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반소 민족주의 시민봉기는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외부의 ‘불건전한 바람’의 침습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외부와의 단절과 폐쇄의 전략은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최근에도 주된 대응책으로 채택된 전략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김일성의 한 연설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잘 보여준다.

“만일 우리당과 당원들이 사상적 단련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적 관점 경향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sup>12)</sup>

10) 김일성, “체코공화국 정부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 수상의 연설 (1957년 4월 1일),” 「로동신문」, 1957. 4. 2.

11)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1957년 4월 4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74.

12) 김일성,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40주년 경축행사와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회에 참가한 우리당 및 정부대표단의 사업에 관하여(1957년 12월 5일),” 위의 책, p. 37.

1958년에 도입된 강력한 주민감시체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58년에 도입된 식량배급제도는 당시의 농업집단지정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민통제의 정치적 의도가 더 크게 관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집단화를 실시한 중국이나 소련에서는 북한에서와 같은 엄격한 식량배급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데서 알 수 있다.

#### 나. 스탈린격하운동과 우상숭배비판에 대한 북한의 대응

후르시초프의 우상숭배비판은 이전의 소련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했다.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가 대두되기 이전까지 김일성은 소련과 스탈린에 철저히 밀착되어 있었다. ‘자주’ 또는 ‘주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종속의 전형적 사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존성때문에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배우자’라는 구호아래 북한의 소비에트화에 온 정력을 기울였으며 스탈린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을 표하였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족의 해방자이며 후원자이고 은인이며 벗인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러한 북조선인민의 해방과 발전이 오로지 당신의 두터운 고려와 붉은 군대의 원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조선인민은 깊이 인식하고 당신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격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당신의 원조가 끝끝내 있을 것을 우리 조선인민은 확신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필연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소련과의 관계는 스탈린 사망후 등장한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와 스탈린 우상숭배비판, 북한의 김일성 우상숭배에 대한 소련의 비

13) 김일성, “스탈린 대원수에게 드리는 편지(1946년 8월 28일),” 통일원, 「조선노동당 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통일원, 1980), pp. 18-19.

판으로 급냉각되었다. 김일성의 우상숭배경향에 대한 소련의 비판에 대하여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내정간섭이라고 매우 노골적으로 반격을 하고 나섰다.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완전히 무관하다. 자본주의 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원조,’ 내정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나라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나라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각각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강고히 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대회를<sup>14)</sup>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고, 어떤 당의 정책과 결정을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공동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당에 내리 먹이려 하고 있다. 어떤 당의 결정이나 조치는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소위 ‘개인숭배반대’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관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개인숭배반대’ 소동에 의해 수많은 형제당이 소용없는 ‘열병’을 앓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개인숭배반대’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sup>15)</sup>

김일성에게는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습되지 못하게 하여 정권을 수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로 대두하였다. 외부 사조 차단과 사상무장 강화가 모색되었다. 그것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당 내에서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정주의자의 활동을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주의자에 압력을

14) 스탈린 개인숭배를 비판한 소련의 제20차 당대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15)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 10. 28 논설.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켜 수정주의가 대중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든지 수정주의에 끌어들여지지 않도록 하며 공산주의자와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입장에 확고히 서도록 하며, 공산주의적 대오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과 모든 공산주의자를 보다 단련시키고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준비시킬 수 있다.”<sup>16)</sup>

#### 다. 김일성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

주체사상이 형성된 국내적 배경의 하나는 김일성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명분을 찾는 것이었다.<sup>17)</sup> 김일성에 대한 비판은 특히 한국전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화되었다. 또한 소련의 개인숭배비판의 사조에 편승하여 북한에서도 반김일성세력들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일성은 전쟁중에 허가이, 박헌영 및 이승엽 등 남로당일파를, 1956년에 연안파를, 1957-59년 사이에 소련파를, 그리고 1967년에 갑산파를 각각 숙청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반종파투쟁을 추진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당화 방법이 강구되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반대세력인 이질집단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확립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적 제거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했다. 그는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1955년 12월 28일의 연설에서 그의 많은 정적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주체의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였다. 당시는 주체라는 말이 이론적·논리적 해석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일성 자신이 하나의 구호형식으로 제기하면서 자신의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데 하나의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번에 박창옥 등이 범한 과오도 그들이 조선문학운동의 역사를 부인한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카프’ 즉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에 참가한 우수한 작가들의 투쟁도 없다...박창옥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16) 위의 글.

17)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95.

연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조아 반동작가인 이태 준과 사상적으로 결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빈동무는 소련에 갔다와서 하는 말이 소련에서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이니 우리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를 집어치워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허가이와 박일우의 시비는 당내에서 규율을 약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옥과 기석복에 대한 비판도 너무 늦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당시에 비판하였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현영도당과의 투쟁과 반간첩투쟁의 경험을 당원들 속에서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간첩을 정확하게 잘라낼 줄 알게 하여야 합니다.”<sup>18)</sup>

1956년의 소위 반종파사건을 통하여 김일성을 공격하던 윤공흙, 서희, 이용규, 김강 등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최창익과 박창옥이 출당되었다. 그러자 소련과 중국이 이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북한 내정에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최창익과 박창옥을 중앙위원으로 복구시키고 다른 4인에 대한 출당처분도 취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주’를 결심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sup>19)</sup>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이 교조주의, 형식주의, 종파주의, 관료주의 등에 젖어있어 혁명과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말하고 주체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라.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에 대한 김일성의 대응

1966년경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은 김일성에게 소련의 우상숭배비판 못지 않는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북한에 준 영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홍위병의 대자보를 통하여 북한과 김일성을 공격하였다는 점이다. 1964년 후르시초프가 실각하자 북한은 새 지도자인 브레즈네프와 코시킨을 상대로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중국에게는 불쾌했을 지도 모른다. 중국 홍

18) 「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69.

19) 한홍구, “알기쉬운 북한 현대사,”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서울: 현장문학사, 1989), p. 110.

위병은 1967년 1월부터 김일성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원로장군들의 이름이 서명된 한 대자보는 김일성을 “수정주의자이자 후르시초프의 추종자”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중국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혁명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20)</sup>

둘째, 동구사회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대중에 의한 불만의 폭발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모택동이 도전한 권력투쟁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관료주의에 대항하는 대중의 불만이 폭발한 면도 있다.<sup>21)</sup>

김일성에게서는 이러한 경향이 북한에 침습되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나 소련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변화도 김일성에게는 충격이었다.

#### 마. 항일혁명투쟁의 복원

소련과 중국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의 변화로부터 초연하여 단절하고자 하는 전략은 쉽게 항일혁명투쟁의 외세저항 및 주체의 논리와 결합되었다. 김일성은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데서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일혁명투쟁과 주체를 연결시켰다. 주체사상은 민족독립운동에서 그 역사적 뿌리를 찾는 학문적 작업에 의하여 역사적 정통성이 粉飾되어졌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지배이데로기인 주체사상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일투쟁의 전통을 1955년부터<sup>22)</sup>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였다. 북한 사회과학을 총동원하여 항일혁명운동의 역사 연구가 추진되어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력사과학」이라는 잡지를

2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 165.

21) 모리 카즈코, 「중국과 소련」 (서울: 사민서각, 1989), p. 88.

22) 김일성은 “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근로자」 (1955. 4)라는 글을 통해 1930년대의 항일빨치산 운동을 자기의 것으로 유일 정통화하는 역사의 왜곡을 시작하였다.

통하여 1920-1930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에 관한 대대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79~1983년 사이에 22권으로 된 조선전사, 1983년에 현대조선력사, 1987년에 조선통사가 발간되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이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노동운동사, 민족해방 투쟁사들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 또는 편찬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진행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조선혁명을 옹기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sup>23)</sup>

## 2. 주체 및 자주 노선의 본질

김일성이 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문건인 1955년 12월 28일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의 귀절에서 잘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할 당시 주체의 의미는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주노선을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단절과 폐쇄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인 독자성으로 요약되는 주체사상의 맥아가 보인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째로 삼켜서는 안된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결국 그 당은 현실과 인민대중으로부터 유리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말은 바 민족적, 국제적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의 당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그 나라 혁명의 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각국의 당이 창조한 경험에 대해서는 각각의 당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sup>24)</sup>

23) 통일원,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서울: 통일원, 1988).

24)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 10. 28 논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연설에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sup>25)</sup> 주체, 경제분야에서의 자력갱생원칙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노선, 군중노선에 관한 김일성 자신의 주체사상에 관한 최초의 정식화가 제시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담화를 통해 주체사상의 핵심적 내용인 자주노선에 관한 체계화를 제시했다.

“제반 사실은 우리에게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 시기와 같이 앞으로도 대내외 활동에서 독자성을 견지할 것이며 자주노선을 관철하여 나갈 것이다.”<sup>26)</sup>

그러나 이 글에서도 아직 ‘주체사상’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다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발표한 공화국정부 정강과 1970년의 제5차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라고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가 기본노선으로 확고히 표명되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입니다.”<sup>27)</sup>

25)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의, 1965년 4월 14일),”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78-329.

26)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 8. 12 논설.

2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 일),”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8.



소련, 중국 및 동구사회주의의 개혁의 영향을 차단하여 정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형성된 주체사상은 정권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차 사회통합, 김일성 우상숭배, 노력동원을 위한 통치이념으로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단절의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의 논리로 발전시켜 통치의 원리로 활용하였다. 혁명적 군중노선이 그것이다. "군중노선은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군중노선과 혁명의 원칙이 때로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으로 동원되고 천리마운동이나 3대혁명소조운동과 같은 경제적 노력동원에 동원되는 만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철저하게 통치의 이념으로 발전되었다. 주체사상의 원칙은 경제구조에서도 뒷받침되었다.<sup>28)</sup> 주체사상은 또 김일성에게 충직하고 노동을 사랑하는 신민형 인성으로 개조하는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적 틀로서 발전되었다.<sup>29)</sup>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민족의 보편적 이익에 충실한 이념체계라기 보다는 정권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8) 자력갱생의 원칙도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조건에 대한 피동적 적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상숭배비판에 대한 김일성의 거부로 소련은 지금까지의 기부형태의 경제원조를 대폭 삭감하여 장기차관으로 바꾸어버렸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김일성은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에 대한 원조 요청차 50일간(1956.6.1 7.19) 소련과 동구 제국을 순방하였다. 그러나 원조획득이 좌절되어 결국 5개년 계획은 자체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외부로부터의 원조조달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노력동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29)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재진·김태일, 「北韓住民의 人性研究」(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참조.

#### I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우리식 사회주의

단절과 차단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의 특성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통해서 확연히 부각되었다. 1978년에 중국의 덩소평이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과 소련에서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체제 개혁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1950년대 중반과 같은 또 하나의 정권위기적 상황이었다.

다음의 김정일의 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대응책으로 외부사조의 차단과 사상교양강화를 강조한 것은 주체사상이 처음 형성되던 시기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 침투를 강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적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원리교양과 당 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 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sup>30)</sup>

30)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 5. 27.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소위 ‘우리식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 및 소련의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중국, 동구, 소련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북한과는 무관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사조에 대한 배척을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로 하는 주체사상이 이 점에서 매우 설득력있게 사용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란 다름 아닌 우리 당의 노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므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sup>31)</sup>

‘우리식 사회주의’는 50년대와 같은 사회주의권 전체의 위기의 상황속에서 외부와 단절함으로써 정권유지를 하려는 주체사상의 본질이 분명히 보여진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것은 그것이 주체사상과는 다른 새로운 사상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독자노선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는 새로운 단어로 선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V.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 조선민족제일주의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이론적 대응으로서 ‘우리

31)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년 9월 2일.

사회주의'와 동시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이론적 변용이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다. 1985년까지만<sup>32)</sup> 해도 북한은 민족주의를 “전인민적 리익을 내세우면서 자기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사상 결국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없게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합리화하는데 복무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주의를 거부해왔었다. 그러나 1985년을 기하여 북한이 갑자기 민족주의의를 새롭게 정의하고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이름의 민족주의를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985년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기 시작한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주체사상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능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사회주의로 개혁을 추진하다가 체제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보고 북한의 사회주의가 여타 사회주의와는 본래부터 다르며 지금도 북한 고유의 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북한내부에 침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정교화하여 북한이 소련, 동구, 중국과는 꺾죽과 언어가 다른 민족임을 주장하여 그들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의 이론적 노력이다. 1985년 무렵 민족의 징표와 민족주의를 해설하는 논문이 대거출판되었고 1989년에는 206페이지에 달하는 「우리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단행본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sup>33)</sup> 이러한 논문들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개념이 이전의 개념과 매우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을 구성하는 요인, 즉 '민족의 징표'에 관하여 북한은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정의를 모든 논문에서 교과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32) 민족주의를 계급론적 관점에서 해설한 「철학사전」이 간행된 해임.

33)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사회과학」 (1986. 2); 최길산, “우리당이 밝힌 민족문제에 관한 리론,” 「남조선문제」 (1986. 2);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 평양출판사, 1989).

“민족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됩니다.”<sup>34)</sup> 이러한 내용은 그 이전의 계급론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개념 정의와는 매우 다르다.

“민족의 징표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결합되게 하는 공통된 기초에 관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민족의 징표에 관한 개념을 전면적으로 해부하시고 주체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결합하는 공통성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는 것을 천명하심으로써 민족에 관한 주체적인 학설의 기본내용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시었다.”<sup>35)</sup>

이처럼 민족주의의 개념에 계급론적 해석이 삭제되고 갑자기 민족의 개념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 정의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개혁과 개방에서 북한이 느낀 위기의식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 그것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민족은 중국,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핏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독자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더욱 더 공고화 하고자 하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이 1986년에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을 때의 문맥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곧 중국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되더라도 북한은 그들과는 다르게 현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4) “정론: 민족의 징표,” 「남조선문제」 (1985. 10), p. 14.

35)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 p. 6.

“내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민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들에게 충실할 수 없으며 자기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발전된 나라에 대하여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나라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비워버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것을<sup>36)</sup>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 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sup>37)</sup>

중국이 시장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하고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더라도 북한은 ‘자주성’을 견지하여 우리식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195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가 대변혁을 경험할 때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차단을 통해 김일성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주체사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론 역시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속에서 외부의 변화가 국내에 침투하여 주민을 동요시키는 것을 막음으로써 김일성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권이데올로기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권수호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민족주의를 들고 나올만큼 위기상황을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의 민족에 관한 개념을 해설하는 리규린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시작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인민대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되어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36) 중국의 개혁·개방노선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3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근로자」(1987. 7), p. 11.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sup>38)</sup>

이 짧은 문단은 세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이제 자주성의 단위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떠나 민족국가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에서 연대를 느끼고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마당에서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개념을 부활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란 이제 더 이상 일반 유형의 사회주의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2년에 개정된 신헌법이 구헌법의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여 버리고 대신에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대체한 것은 이것과 관련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민족주의를 들고나오는 목적은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주성이란 소련과 중국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뜻이다.

셋째,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은 결코 남한민족을 포함하고 남한민족을 북한의 ‘민족문제’의 대상으로 의도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민족을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정의한 것은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 소련,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민족과는 북한의 민족이 핏줄, 언어, 지역의 면에서 하나도 공통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의 개혁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sup>39)</sup>

조선민족제일주의론도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김일성 우상화의 논리로 연결되었다. 앞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 핏줄과 언어 및 지역의

38) 리규린,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리해,” p. 6.

39)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 범 민족연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남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이 경우는 부수적인 중요성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측면에서 조선민족이 타민족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임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다른 민족과 다르며 ‘제일’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의 풍요로운 물질생활이나 사회보장, 민주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과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이다. 따라서 조선 민족제일주의도 결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로 귀결된다.

“우리민족제일주의의 원천력에서 근본핵을 이루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봉사시켜 나가시는 인민대중의 가장 위대한 수령, 참다운 인민의 수령이시다.…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존엄있고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새롭게 발전 풍부화시키시고 빛내여 나가시며 인민대중을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로 이끌어 나가시는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 인민의 스승이시다.”<sup>40)</sup>

또 주체사상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일제시대와 비교시킴으로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은폐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비현실적인 인식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대번영의 시기에 살고 있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가 오늘은 세계의 한복판에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앞장서 개척해나가는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되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 ‘영웅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민족의 영예와 자랑을 온 세상에 더 깊이 떨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sup>41)</sup>

40)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p. 138.

41) 김일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핵,” 「철학연구」 (1991. 2), p. 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으로서 단절과 폐쇄를 위한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이론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Ⅵ. 결론 : 북한 민족주의의 특성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혀진 것은 5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의 과정에서 형성된 당시의 주체사상의 내용이나 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권 대변혁의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우리식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의 내용은 모두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들은 모두 사회주의권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러한 단절전략을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북한이 스스로 주체사상의 역사적 뿌리를 항일민족운동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반외세적 이념을 더 심화시켜 외세와의 단절을 더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를 외세에 대한 저항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주체사상은 극단적인 차원에서 민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절과 저항의 전략은 남한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주체사상이 한민족에게는 非민족적이다.

그런데 붕괴해버린 사회주의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연대를 느끼거나 도움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시점에서 북한은 단절을 하되 새로운 논리로 단절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도록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을 그 핵심적 징표로 하는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이 소련, 중국,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986년에 처음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제기했던 의도가 북한의 민족이 중국, 소련, 동구의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

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개념이지 남한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앞에서 강조되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대로 북한의 주체사상의 본질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주의란 민족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기여하는 사상이어야지 특정한 한 정권에 기능하는 사상이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북한이 철저한 단절과 폐쇄를 고수하는 것은 김일성의 이상화정권을 지속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폐쇄와 단절이 자력갱생이라는 경제발전모델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후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증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가장 큰 기능을 폐쇄와 단절을 정당화하고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김일성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이념이라기보다는 권력이데올로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단절과 차단 특성을 극복하여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이 단절과 차단, 폐쇄로 특징지어지는 주체사상을 폐기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추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견고한 분단상태에서 이질화된 남북한 민족을 다시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재생시키는 길이다. 북한이 최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완화하고 외부와의 단절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나마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크게 다행한 일이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개방된 국제사회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남북간에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전체를 자멸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는 세계적 탈냉전의 추세를 한반도에도 실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켜 남북한의 민족이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아직 정치적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족복리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이 북한의 단절전략을 극복하는 길이다. 오늘

날의 세계사회는 군사경쟁 시대에서 경제경쟁의 시대로 이행되었다. 남한과 북한이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이행할 때 상호간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함으로써 가장 값싼 비용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민족전체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자주란 곧 단절과 폐쇄라는 논리로 빠져버린 북한 주체사상의 논리를 수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민족자주는 경제적 경쟁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현실을 북한에 인식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 민족주의의 미래구도

—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이념의 정향 —

陳 德 奎\*

◁ 목 次 ▷	
I.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IV. 통일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적 기원
II.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성과 한계	V. 결 론
III.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접근논리	

## I.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적 한계로 인하여 민족국가 형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첫째, 민족주의로서의 이념적 실천성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결여했기 때문에 민족감정의 혼돈상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 민족주의는 미래지향성에 의미를 두고 있기 보다는 과거에 매몰되는 역사적인 역행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국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의 가치통합적이고 현실적인 이념체계라기보다는 분파적인 성격을 과도하게 함유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梨花女子大學校 政治外交學科 教授

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사실 중에서 첫째의 문제점 즉, 민족감정의 혼돈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통일된 인식체계나 사상구조를 가지지 못했으며 분파된 편집성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현대사회에서 민족주의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서의 제약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한 이념체계를 바탕으로 민족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민족성원의 의식과 행동이 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러한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민족성과 민주주의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나 주장은 합일될 수 없는 혼돈을 가중시키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적된 한국 민족주의의 과거 지향적인 역행성은 실제로 민족주의를, 현실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민족성원의 삶의 양식이나 원칙과는 무관한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매몰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족주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념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지향하기 위해서 민족성원의 합일된 가치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생각할 때 한국의 민족주의는 실제로 미래를 위한 이념으로서의 가치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인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도 가치적인 인식과 지향으로 전제되어야함을 의미하게 된다.

세번째로 지적된 한국 민족주의의 분파성은 어느 다른 요소보다도 심각한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는 통합과 결속의 이념이다. 민족 성원을 하나의 의식으로 결집시킴으로써 민족발전을 구현하려는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지향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와 같은 통합적인 성격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민족주의 이념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분열의 명분 논리로 기능해왔음을 알 수 있다. 시대마다 집단마다 주장되는 민족주의의 내용이 다르고 지향하는 이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적 주장들을 살펴보면 진보적 논리의 외피현상으로 민족주의가 이용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주의를 단지 보수적 사상체계의 한 형태로만 논의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한국사회의 민족주의는 민족 전체의 통합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여전히 특정 분파를 전제로 하는 분열의 성격을 강하게 함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이념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해야할 상황에 놓여있다. 만일 이러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민족적인 과제들은 유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문제와 민주주의의 접합문제, 국가사회의 발전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민족주의의 발전적 이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그 속에 담을 수밖에 없다.

1. 한국의 민족주의는 먼저 정치사회의 가치지향적인 통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한국의 민족주의는 미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적 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3. 한국의 민족주의는 현실적인 정치사회의 정책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4.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체 민족성원의 통합된 민족감정의 이론적 구심체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담고 있어야 할 이러한 내용은 단지 그것이 한국 민족주의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가 놓여있는 이념적 원초성과 사상의 미숙성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주로 다음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민족주의를 정립시키기 위한 첫번째 해결 과제인 통합의 이념적 기반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그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적 내용이 민족주의와 어떠한 관계위에 설정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민족발전이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당위성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의 과제는 곧 민족국가의 형성과 직결되는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민족국가 형성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 II.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성과 한계

### 1. 민족국가 등장의 보편성

엄격히 정의한다면 민족국가는 민족성원의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정치체제이다. 최초로 민족국가가 등장된 것은 18세기 이후 유럽에서였다. 다소 장황하지만 여기서는 민족국가의 개념을 정리한 벤딕스의 논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근대 민족국가는 정부의 권위와 귀족들이 세습적으로 누려왔던 특권 사이의 연결망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민족국가로 알려진 정부의 중요한 정치행정관직에의 접근이 재산을 가진 사회적 신분층이 교육적인 기회와 사회적 접촉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의해서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었다.... 서구 민족국가의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사회구조와 사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구분을 들 수 있다. 법적 분쟁의 집행이나 세금의 징수, 화폐의 통용, 군사충원, 우편제도, 공공시설 그밖의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은 신분적 특권이 바탕이 된 세습성을 넘어서서 경쟁하는 여러 세력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sup>1)</sup>

1) Reinhard Bendix, *Nation Building and Citizenship*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 128.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국가는 귀족제의 단일적인 지배세력으로부터 부르조와의 계급적 성장에 따르는 일종의 지배계급의 연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제도로서의 국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국가가 서구의 경우에는 이미 말했듯이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산업화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부르조와의 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짐으로써 전체 민족성원을 모두 국가성원으로 포용하게 되는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동일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이 그들 사이에 형성됨으로써 마침내 귀족의 국가도 아니고 군주의 국가도 아닌 민족의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다.<sup>2)</sup>

민족국가의 형성은 유럽사회에서의 발전이 주로 시기적 순차성을 보여주었다면, 비서구 사회에서는 이와는 구분되는 파행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즉 서유럽의 경우 그 이후 민족국가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민족국가로서의 국내적인 통합의 단계를 넘어서 다시 19세기를 지나면서부터 계급적 통합단계로 경과하게 되었다. 민족국가는 19세기 말부터 이른바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인 변형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는 민족국가의 대외적 팽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경우이나 서유럽의 민족국가는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 기반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지속되었으며, 그것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통합과 확대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서구 사회의 경우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서구의 경우와는 판이했다. 비서구에서의 국가개념이 서구의 경우와 차이를 보여주었던 것은 민족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서구에서의 국가가 시민사회의 의미로, 계약국가의 성격으로 또는 계급지배국가로 설명될 수 있음에 비해서, 비서구사회에서의 국가는 전통적으로 종족간의 연대성이나 전통적 지배 메카니즘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생활의 공유체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되었다. 지배-피지배 관계와는 구분되는 단일적 공동체의 제도화의 범주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에서의 지배 메카니즘으로서의 국가는 사실상 서구의 제국주의적 충격에 의

2) Kellas, James G., *The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London: Macmillan, 1991), p. 2.



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sup>3)</sup>

서구의 제국주의가 침투되기 이전의 비서구 사회의 국가들은 서구의 민족국가와는 구분되는 일종의 아시아적 전통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sup>4)</sup>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종교적 가치에 의하여 삶의 일상화를 규제하기 위한 의식적(儀式的)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 특정 지배세력, 그것이 귀족일 수도 있고 호족일 수도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 권력이 독점적으로 행사되었던 약탈적 통제기구였다.
3. 전통적 국가권력의 영향력 행사범위는 종교적 사회통합과 지배세력의 경제적 약탈, 그리고 그들의 특권을 지속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억압적인 통치기구에 불과했다.
4. 전통적 국가는 권력의 차원에서는 지배세력간의 부단한 교체를 보여주었지만 피지배 세력에게는 이러한 상황과는 무관한 복종 상태를 강요하는 지배-피지배관계의 지속성으로 계속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비서구 사회의 아시아적 전통국가가 민족 국가를 먼저 형성한 서구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비로소 민족주의적 대응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특히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서구사회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의 형성이 동시대에 함께 나타났지만 비서구사회에서는 민족국가의 형성이 결여된 채 민족주의만이 대두하는 양자간의 불일치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즉 민족주의의 대두를 통하여 민족국가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간적 순차성을 보여주었다. 이점에서 비서구사회에서의 민족주의와 민족국가와의 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성격으로 경과하게 되었다.

3) E. J. Hobsbawm,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164-166.

4) Reinhard Bendix, *Kings or Peop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Chap. 12.

1. 계몽적 민족주의 단계
2.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
3. 산업화 민족주의 단계
4. 보편적 민족주의 단계

위의 각 단계에서 계몽적 민족주의 단계는 주로 서구 문화의 충격에 의해서 시발된 민족적 자각의식을 국내의 민족성원에게 전파시키기 위한 민족주의의 초기 전개양상이다. 이 단계에서의 민족주의는 그 내용에서 대부분의 경우 서구의 민족주의적 사상을 수용하여 서구의 국가제도를 모방하는 것에 일차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는 대체로 서구의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비서구 사회에 침투했던 시기에 전개된 반제 민족운동을 의미한다. 반식민지 민족주의는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군사적으로나 비군사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보호·유지하기 위해서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비서구 사회에서 민족국가의 대두는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서구 사회에서의 민족국가는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를 어떻게 경과했는가에 따라 민족국가 형성의 성격이 결정되었다.<sup>5)</sup>

산업화 민족주의 단계에서는 민족국가를 이룩한 비서구 사회의 국가들이 민족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욕구 즉, 국제적인 경쟁성과 국내 민족성원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속한 산업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개되었다. 즉 자생적이거나 국민의 자발성에 입각한 산업화가 아니라 국가 기구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산업화가 시도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회에서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도 지배세력의 의도적 선택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서구사회에서의 민족주의도 가령 일본과 같이 산업화를 진척시킨 경우에는 서구 사회에서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그대로 모방하

---

5) Hugh Tinker, "The Nation-State in Asia" *The Nation State: The Formation of Modern Politics*, ed. by Leonard Tivory(Oxford: Martin Robertson, 1981), p. 106.

여 보편적 민족운동으로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성을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른바 세계체제에서의 헤게모니장악에 참여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 2.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와 분단체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민족국가의 실패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민족주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앞에 설명했던 비서구사회의 민족주의적 전개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반식민지 민족주의 단계를 경과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 정도이다. 즉 다른 비서구사회에서의 민족주의가 반식민지 민족주의의 단계를 경과함에 있어서 반제 민족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민족국가를 성립시킬 수 있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이와 다른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위한 이념형을 설정해 보기로 하자.

한국에서의 민족주의 전개양식

	자본주의지향	사회주의지향
상층출신	타협적 민족운동	개혁적 민족운동
하층출신	권위적 민족운동	혁명적 민족운동

위의 이념형적 분석틀을 전제로 할 때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그 운동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반제, 반전통적 민족운동을 추구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에서 이탈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즉 여기에서 전제로 하는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반제운동은 단순히 주권을 강탈했던 일본에 대한 저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온 강대국에 대항하는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형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반전통은 이전의

왕조시대의 군주제가 가지고 있었던 반민족적 한계와 봉건적 속성의 극복을 의미한다. 반제, 반전통의 민족운동은 한국에서의 민족운동이 기본적으로 급진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운동은 최초로 민족주의적 사상이나 운동이 등장했던 1900년대를 전후로 한국사회에서는 그것을 주도했던 지도세력이 주로 상층출신의 전통적인 지배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6)</sup>

1. 초기 식민지 민족주의 단계 : 타협적 민족운동 대두
2. 식민지시대 민족운동 전개단계 : 타협적 민족운동과 개혁적 민족운동의 갈등
3. 후기 식민지 민족운동 단계 : 권위적 민족운동과 혁명적 민족운동의 경쟁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어느 정도 자의성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운동이 경과했던 190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운동의 본질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민족운동이 주로 상층 지배세력에 의해서 서구의 자본주의적 지향성 즉,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타협적 민족운동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시기는 국가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서 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일본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문물의 수용 그리고 민족 성원의 문명론적 계몽을 위주로 하는 민족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상층 지배세력에 의하여 충원되었고 민족운동의 지향이념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수용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기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타협적 민족운동은 일본에 대한 적극적 무력투쟁이나 민족전쟁보다는 온건한 민족 개량주의적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난 개혁적 민족운동으로부터 도전받게 되었

6)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5).

다. 엄격한 의미에서 1930년대를 전후한 이 시기의 한국의 민족운동은 타협적 민족운동과 개혁적 민족운동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었다. 여전히 타협적 민족운동의 노선에 집착한 상층 부르주와 중심의 민족운동은 곧이어 사회주의 사상과 접합된 개혁적 민족운동 세력에 의해서 도전받게 되었다. 타협적 민족운동이 실제로 민족주의적인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자 이에 맞섰던 것이 개혁적 민족운동이었다. 개혁적 민족운동은 식민지 시대의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사회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식하였는데 그러한 논리는 자연히 사회주의 사회로의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는 여전히 상층 지배세력들 사이의 이념적 갈등에 지나지 않았다. 즉 개혁적 민족운동을 주장하는 세력도 역시 상층의 지배세력에 속했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이들 상층의 지배권력 장악을 위한 이념투쟁의 성격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된 것은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를 경과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에 이르면 민족주의는 본래의 성격 즉, 반제, 반전통성에서 벗어나 특정 강대국 중심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중요한 관건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민족운동의 퇴각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미 앞에서 말했던 타협적 민족운동 세력은 자본주의 국가 형성을 시도했기 때문에 해방이후 미국의 영향권 내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개혁적 민족운동은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이분화 과정을 경과하였다. 이 점에서 사실상 해방직후의 시기에는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퇴각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점은 반서구 민족운동에서는 극히 예외적일 정도로 제국주의적 외삽체제(外挿體制)로의 심화를 초래했다.<sup>7)</sup>

이 시기의 민족운동을 민족주의의 퇴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은 그것이 정치적 독립이나 발전의 논리나 이념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일반 민중의 의식속에 탈정치적인 것으로 침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가의 형성과는 무관한 일반 민중의 삶을 전통성

7) 진덕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분단체제 형성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991.

으로만 퇴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의 형성과는 대립되는 세계 헤게모니체제의 제국주의의 한 영역에 위치를 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민족주의는 현실정치로부터 퇴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뒤 한국 민족주의의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를 경과하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분단국가의 수립과 이를 후원해 주었던 강대국 이해의 경쟁점(係爭點)에 서서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로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한국전쟁은 극심한 이념적 대결을 주조로 하였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어느 편에도 수용될 수 없는 배격의 이념처럼 인식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격심한 대결이 민족주의를 더욱 심하게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민족국가의 가능성을 무산시키게 되었다.

분단된 남북 양체제는 각기 이질화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대립적인 이념을 정통화하기 위해서 남북이 서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민중속으로 퇴각된 것에서 벗어나 정치적 지배세력과 현실을 옹호하는 이용물로 전락되었다. 민족국가를 이룩하여야 할 당면과제로서의 민족주의는 밀려났으며 정권의 정당성을 논리화 시켜주게 되는 이념적 도구로만 활용되었다. 특히 당시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산업화에 의한 “강한 국가”의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민족주의는 이를 위한 국민동원 논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후기 식민지 민족운동의 전형적인 성격으로 전락되었다. 이 당시 민족주의는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적 민족주의로 변형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적 민족주의로 전락되고 말았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이 시기에 이르르면 사실상 민족주의의 퇴각상태로부터 변형상태로까지 전락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sup>8)</sup>

8) 진덕규, “현대 한국정치변동과 민족주의 변동에 대한 연구서설,”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992.

### Ⅲ.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접근논리

#### 1. 민족국가 형성의 일반성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현실적으로 민족주의의 원형이라는 면에서나 또는 본질적 지향에서 생각할 때 격심한 퇴각과 좌절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은 민족주의가 민족국가 형성에 실패했다는 것에서 연유된다. 남북한에서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는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의 일치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실패하게 됨으로써 강대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민족경제를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세계체제에서의 독자적이고 중심부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경제적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또한 아류 제국주의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의 근대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전통문화와 근대문화의 대립을 조장시키는 문화적 식민화의 종속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통합성이 결여된 분열과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저해하는 갈등의 사회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여기에서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의 한계와 영향

- |                                |                              |
|--------------------------------|------------------------------|
| 1. 정치적 상황……지배－피지배 세력간의 통합성 결여  | } 남북간<br>민족주의적<br>이질화의<br>전개 |
| 2. 경제적 상황……아류 제국주의적 경제 종속성의 심화 |                              |
| 3. 문화적 상황……문화적인 갈등과 대립의 격화     |                              |
| 4. 사회적 상황……분열과 대립의 사회구조화의 현상   |                              |

남북한에서 민족국가의 실패는 결국 남북한 각 체제를 서로 다른 정치구조와 사회체제로 지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동원체제적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동원의 중요한 이념적 논리로 변형된 민족주의가 사용되었다. 즉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나 한국에서의 산업화 국가체제는 변형된 민족주의의 한 단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민족주의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족국가 형성의 이념적 기반과 실천적 논리로서 기능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이처럼 이질화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를 정상화시키고 그것에 바탕을 두는 민족국가의 형성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먼저 한국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의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게 된다. 실제로 이 문제가야말로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분단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통합의 가능성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념적으로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념적 전제로 설정된 것이므로 현실적인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 다만 논리적인 인식절차에서 이념적 전제로서의 몇가지 사실만을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한반도에서 전체 민족성원을 통합하는 국가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일민족국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이념과 계급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족주의의 정치이념화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민족국가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세계사에서 일정한 민족국가의 몫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민족국가 발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정한 3가지 원칙에 입각한 민족국가의 형성이야말로 현재 분단체제로 고착화되어 상호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는 현실성을 민족주



의적 이념에 입각해서 통합과 발전으로 지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 통일 민족국가의 지향

현실적으로 민족주의 정치운동의 차원에서 인식할 경우 지금의 남북 양 체제는 모두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념적 차원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화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현존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양분적 이념화를 기존의 민족주의이념으로서는 통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먼저 통일국가 지향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통일 민족국가의 지향은 지금의 남북 양체제를 동시에 공존시킨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흔히 남북한의 통일 민족국가를 논의할 경우 다음의 몇가지의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는 남북한의 어느 한 체제에 의한 다른 체제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하는 논의이다. 다른 한 가지는 양체제의 존립을 전제로 하면서 그 공존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 두가지 논의를 다시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통일 민족국가의 지향

1. 흡수통합에 의한 통일국가의 지향
  - 가. 한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북한통합
  - 나. 북한에 의한 사회주의적 전체체제로의 남한통합
  
2. 남북 양체제의 공존에 의한 통일국가의 지향
  - 가. 남한 주도의 단계론적 통일국가
  - 나. 북한 주도의 연방제적 통일국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민족통일의 주장은 이처럼 4가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남북한 양체제의 정부 당국자들은 사실상 상대방을 흡수통합하기 위한 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표현에는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한국 정부에서 최근 추진중인 북한과의 교류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세계어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는 실제로 독일통일의 방식이 기저에 영향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곧 북한의 흡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사실상 북한 주도의 연방제적 통일국가를 추구하는 논리로서 실상은 북한에 의한 사회주의적 전체체제로의 남한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1.가)와 (2.나)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고려한다면 민족국가 형성과는 사실상 무관한 어느 한 체제의 승리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합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흡수통합을 전제하면서도 외관상 또는 논리적으로 연방제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국가연합론을 내세우는 경우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보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민중적 통일론이나 심지어 단계론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어느 한 체제를 전제로 하는 통일논리로 귀착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논의의 대부분은 결국 어느 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체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존과 타협에 의해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은 지금의 통일논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통일논의와 다른 통일 민족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논리의 설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기본구도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통일 민족국가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실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첫째

로 민족구성원의 통일의지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통일의지는 산술적인 차원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논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보다는 민족국가의 이념적 기반에 합당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심지어 소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거나 수용될 수 없다고 배척되어서도 안된다. 오직 중요한 기준은 민족국가로서의 가치적 명제를 실현할 수 있는 논리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 민족국가 형성에서의 가치적 전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1. 통일 민족국가는 이념적으로 민족주의를 상위개념으로 설정하는 민족 통일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통일 민족국가는 민족 성원간에 전쟁이나 투쟁과 같은 갈등의식이 조성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에 의한 민족공동체적 지향성이 천명되어야 한다.
3. 통일 민족국가는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남북한 체제 당국자들의 현존 지도체계가 상호승인되어야 한다.
4.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외부세력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단절되어야 하며 민족내적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통일 민족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인격적 평등,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는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이룩하는 가치지향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추구되어야 할 통일 민족국가는 엄격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기존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현임을 의미하게 된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체제의 지향이 기존 분단체제의 통합에 의해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다.

## IV. 통일 민족국가의 민족주의적 기원

### 1. 변형 민족주의의 심화과정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할 때 한반도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은 기본적으로 기존체제를 전제로 해서 그것에서 통일의 모색이 시작될 수 있지만, 이는 곧 현실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과 북한의 기존체제의 이념이나 제도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민족주의적 지향성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통일 민족국가는 한국민족에서의 민족주의의 정상적이고 가치로운 발전과 직접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의는 남북한 양체제의 지배세력에 의해서나 피지배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변형되었거나 심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그것이 형성되었던 1900년대 초기부터 심한 변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나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한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민족주의와는 연관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민족주의 정치이념이나 문화적 전개는 민족주의와는 연관성이 미약한 단지 민족주의라는 표현상의 외피만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sup>9)</sup>

남북한 양체제에서의 민족주의는 1940년 중반기 부터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체제의 이질화를 통해서 민족주의의 본질적 가치성에서 이탈된 변형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나아갔다.

#### 1. 분단체제 형성의 초기 단계(1945년-1953년)

9) 진덕규, “분단사회의 민족주의 형성에 관한 고찰” 변형윤의,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사, 1985), pp. 21-24.

- 가. 한국에서는 친미 지배체제의 수립으로 민족주의의 억압과 소진.
- 나. 북한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추종으로 민족주의의 배척.
- 2. 남북한 전후체제 확립단계(1953년-1961년)
  - 가. 한국에서는 계몽적 권위주의 체제로 민족주의의 억압.
  - 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체제의 공고화로 인한 민족주의의 압살.
- 3. 남북한 산업화 경쟁체제 단계(1962년-1978년)
  - 가. 한국에서는 군부 권위주의의 산업화에 의한 민족주의의 변형시도.
  - 나. 북한에서는 김일성 체제의 확립을 위한 이념기반으로 민족감정의 활용.
- 4. 남북한 체제 이질화의 고착단계(1979년-현재)
  - 가. 한국에서는 변형민족주의의 양분화로 국가민족주의와 민중민족주의 현상의 대두.
  - 나. 북한에서는 민족주의의 원용으로 주체사상의 강화.

즉 위의 대비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양체제는 1940년대 중반기의 분단체제 형성기에서는 외삽체제로 등장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한 대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당시 정치권력을 장악한 남북한 양체제는 국제주의의 영향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나 민족주의적인 지향성을 가진 정치세력을 탄압하거나 제척(除斥)함으로써 권력의 기반을 확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더 강화되었으며 196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 자기 필요성에 의해 민족주의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일종의 변형된 민족주의를 양체제가 동원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 당시 변형된 민족주의는 특히 한국에서는 지배세력의 권력점유를 산업화로 정당화하였기 때문에 산업화를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인식시켰으며 그것이 곧 자주국가로 지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민족성원의 통합이나 전체 민족의 발전과는 직접 연관이 적은 지배세력의 공고화와 민족분단을 고정시키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김일성 개인숭배사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수용할 수 있게 하

는 방법으로 민족주의가 활용되었다. 즉 김일성을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된 한국전쟁의 중심인물로 그를 설명하면서 강력한 반미감정의 고조에 민족주의적 성격을 활용하였다.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양체제는 모두 그 이전에 억압강제의 대상이었던 본질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를 대신해서 단순히 국민의 반외국적인 경쟁의식을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었다.

본질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는 민족구성원 사이의 통합과 전통에 바탕을 둔 발전의 모색과 민족성원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는데 중점이 있었다면 당시 변형된 민족주의는 단순히 反대의적인 민중감정을 고양시킴으로써 집권자의 권력유지에 기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에 찾아볼 수 있는 남북한 양체제의 민족주의적 변형은 지배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민중동원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남북한에서의 민족주의는 현실적으로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변형된 민족주의의 심화현상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는 두 갈래로 양분되었는데, 국가민족주의와 민중민족주의가 그것이다. 국가민족주의가 지배세력의 지속성을 위한 변형민족주의라면 민중민족주의는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전제로 하는 급진적 사회변혁 운동의 논리적 기반으로 반미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으로 설명되고 있는 지배논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변형적인 민족주의의 한 속성을 활용해서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통종교의 민중적 퇴행화의 한 속성으로 전개되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에서 주장되고 있는 민족주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아무리 진보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도 그리고 민족성원의 발전을 강조하고 반외세를 추구한다해도 궁극적으로는 특정 계급이나 세력의 권력장악을 위한 수단적 의미로 전략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즉 민족국가의 형성은 민족주의의 복권 또는 민족주의의 창설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 2 다두체제(polyarchy)와 민족 엘리트

남북한 양체제에서 논의되거나 주장되는 민족통일논의가 변형민족주의를 전제로 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민족국가의 형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변형민족주의의 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유사민족국가만이 존속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남북한 양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사민족국가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흡수통합하려는 의도를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유사민족국가로부터 참된 민족국가의 형성을, 그리고 변형민족주의로부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창설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일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민족주의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사회에서의 민족주의는 정치사회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정치체제로서는 다두체제나 협의체제(Consociational System)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둘째, 민족 엘리트의 정치적 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통 정치제도의 가치관과 정치문화를 현대적인 것으로 전환함에 있어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사회의 발전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규범적 논리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sup>10)</sup>

먼저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체제면에서는 다두정치나 협의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회주의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sup>11)</sup> 그것은 현행의 정당중심의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

10) 진덕규, 「현대정치학」(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3), p. 448.

11) R.A., Dahl,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익집단과 사회조직체를 정책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체제의 다양성이나 사회구성요소의 특이성을 일정하게 정책결정에 투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의회주의적 정치구조에서는 직업적 정상배의 정치적 작태를 막을 수 없으며, 심한 경우 정당은 과당 이상의 성격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체의 대표로 구성된 자유조합주의적 성격과 협의체제적 성격이 가미됨으로써<sup>12)</sup> 국민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향약이나 동제와 같은 향촌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구의 기능을 현대화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적실성은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

정치제도를 다원주의체제나 협의체제로 지향해다 한다는 것은 정치엘리트의 새로운 충원 토양을 만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치엘리트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는 실제 능력이나 국민적 지지와는 무관하게 특정 집단의 독점적 연계성에 의한 세습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정치 엘리트의 대부분이 해방을 전후로 한 시기에 형성된 외삼체제의 구성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민족주의적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엘리트의 민족주의적 한계를 논의한다면 지금 남북한 양체제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엘리트들은 사실상 냉전체제가 조성시킨 외삼체제의 구성인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친소주의적 인사들로 권력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족주의적 성격과는 처음부터 연관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친미 중심의 인사가 권력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반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게 된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초기 외삼체제를 구성했던 지도체제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적으로 민족주의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승계되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정치엘리트가 존

12) Philippe C. Schmitter and Lehmrbruch, eds., *Trends in Corporatist Intermediation* (Beverly Hills : Sage, 1979).



재한다 해도 정치과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엘리트의 등장을 저해하기 위한 억압적 기제가 정치사회에 작동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남북한 양체제의 정치엘리트는 현실적으로 피지배계급과는 심각한 정도로 괴리된 상태를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러한 간격을 단지 위로부터의 동원적 수법이나 강압적 제지조치로 탄압하는 반민주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당위적 가치성으로 지적한 전통적인 문화의 현대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과거 문화의 역사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복고지향적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지금의 정치문화나 제도가 전통과의 단절로 결국은 “뿌리없는 제도”로 부유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고려할 때,<sup>13)</sup>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전통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현대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격의 하나로 국가의 기구에서 의회제도나 심지어 지방행정기구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참여로서의 선거문화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이고도 과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사회구조의 통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화의 과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사회계급과 이념적 통합

한국의 민족주의는 사회계급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데올로기가 그러하듯이 한국민족주의도 일정한 계급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지식인의 이념으로 형성되어 그것이 상층을 중심으로 할 경우와 하층계급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 따라 정치적 지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상층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는 온건한 성격의 의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게 되며 하층계급이 중심이 될 경우 민족주의는 변혁사상을 그 속에 담게 된다.

13)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2), Chap. 11.

한국에서도 민족주의는 최초 그 형성기에는 지식인과 상층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초기에 보여주었던 계몽적 민족주의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계몽적 민족주의는 그 다음 단계로 전이되는 민족주의 이념의 전달자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그들이 중심이 되어 정치사회의 변혁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지식인과 상층도 민족주의를 계몽적인 것으로 정향시킴과 동시에 자체내의 분화에 의해 일부 사회주의 이념이 수용됨에 따라 마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적인 관계가 일반적인 것처럼 정형화되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대에서는 마치 사회주의에 대립하는 보수주의적 이념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기본적인 형태처럼 논의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민족주의를 대립개념으로, 민족주의는 보수 지향적인 이념으로만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또한 해방이후 상층 보수세력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에서의 지배세력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민족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간혹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의 연관성에서만 논의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하층의 노동자 계급이나 농민계급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를 보수적인 반시대적 사상으로 치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대립적인 것처럼 주장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실제로 정치이념으로 정립되었거나 기능하기 보다는 단지 다른 이념의 전달자나 그 도입자의 위치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다른 이념을 정당화해주는 부분적 기능만을 담당했다. 이 점에서 정치사회의 기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층의 논리로서의 민족주의는 국가민족주의적 성격을 보여주었고, 변혁지향의 노동자, 농민 등 급진적 세력이 추구했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마치 특정 이데올로기를 합리화 해주는 위치에 있거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결여한 논리처럼 설명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이제 민족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회복하거나 창설해야할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은 그것이 다른 이념들의 상위개념임을

전제로 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즉 민족주의는 전체 계급을 망라하는 총괄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기존 이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념적 모태이기도 하다. 즉 민족주의는 그 속에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적인 내용도 자본주의적 성격과 함께 함유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서유럽의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민족주의는 영국의 경우는 상업자본주의에서 다시 산업자본주의를 지향하였고, 독일의 경우는 국가산업화의 방법도 강구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중국 민족주의의 경우에도 사회주의와 접합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민족주의는 필요하다면 다른 이념과 쉽사리 친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성격을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의 미래는 사회계급의 통합과 이념적인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친화력과 함께 포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게 된다. 즉 한국의 통일문제도 결국은 이러한 민족주의의 정립에 따르는 문제라 할 수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이원적인 개념구조로는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민족주의의 통합성을 전제로 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포용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민족의 통일문제에 일차적인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sup>14)</sup>

14) 이 점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관건으로는 다음 책을 적을 수 있다.

Rolf Dahrendorf,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urope* (New York: Random House, 1990).

## V. 결 론 : 통합과 발전의 이데올로기적 변증법

한국의 민족주의는 결코 지배이념으로만 방치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과 그것의 정당화를 위한 논리로도 전용될 수는 없다. 심지어 한국의 민족주의는 기존체제를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의 옹호논리만으로 방치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세력에 맞서서 변혁만을 유일한 가치로 지향하기 위한 혁명세력의 이상적인 논리로만 작용해서도 안된다. 한국민족주의는 갈등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논리로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를 변형적 민족주의의 현실성으로 부터 정상적이고도 본질적인 민족주의로 복원시키거나 창설되어야 한다.

본질적인 민족주의의 창설로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국가 사회의 실현이 바로 민족국가의 형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설사 통일국가와 같은 성격의 체제가 등장한다 해도 그리고 특정의 분단국가가 민족 성원의 지지위에서 있다는 이유로 민족국가라고 강변해도 그것은 유사민족국가에 불과하게 된다. 유사민족국가로써는 민족성원의 통합과 발전의 총체적인 국가로서의 민족국가는 형성될 수 없다. 이 점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의 출발점은 사실상 본질적인 민족주의의 이념화에 있고 그것의 실천성으로서 통일 민족국가의 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족주의는 단순히 통합만을 추구하는 통일의 민족주의로 귀착되거나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로 지향하는 발전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통합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 축의 다른 한편에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지향논리가 곧 민족주의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기든스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그 논리적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민족주의는 주권, 계급, 시민권의 폭 넓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두 제 혹은 다수의 대표에 의한 통치는 민족국가의 대표적인 주권의 내용이다. 시민권은 국가주권과 대응된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 모두에서 시민권은 이제 계급갈등의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기능은 부르즈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 이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sup>15)</sup>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포용하는 민족통합과 발전의 변증법적인 지향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한가지 과제는 바로 한국에서 민족국가의 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

15) A., Giddens,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Press, 1985). p. 205.

# 統合理論과 유럽統合이 南北韓統合에 주는 示唆點

金 國 新\*

◁ 目 次 ▷

- |                 |                   |
|-----------------|-------------------|
| I. 序 論          | IV. 南北韓統合에 주는 示唆點 |
| II. 統合理論의 概觀    | V. 結 論            |
| III. 유럽공동체 統合事例 |                   |

## I. 序 論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은 軍備競爭을 강화하였지만 어느 일방의 승리에 의한 武力統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각기 다른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60년 이래 政治分野에서의 일괄타결이 선행되면 다른 분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聯邦主義 논리를 통일의 기본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 한편 남한은 非政治分野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분야의 통합을 이룬다는 機能主義의 接近法을 통일정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19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1970년 이후 남한 정부가 취해 온 통일정책의 기본논리를 유지하면서 政治的 協商要因을 강화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남북한은 統一國家를 이루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이란 暫定的 結合體制를 구축하고, 남북연합기에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한 이후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統一을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한정부의 통일방안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機能主義 接近方法에서 탈피하여 정치적 요소를 강조한 新機能主義 接近方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政治的 民主化를 성취함으로써 대북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된 남한 정부는 통일정책에 더욱 柔軟性을 보이게 되었다. 1993년 5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태평양 경제협의회 연설에서 새로운 통일정책의 基本方向을 제시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한 통일단계를 和解·協力段階, 南北聯合段階, 統一國家段階의 세 단계로 나누고 南北聯合을 「1 민족 2국가 2체제」 형태로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은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논평에서 남북연합이 聯邦 개념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新機能主義的 接近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政治統合過程에서 연방주의적 요소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새로운 통일정책은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平行선을 이루어 온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방안에는 남북한이 統合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구축해야 될 경제공동체 및 남북연합의 性格과 實踐方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統合理論과 유럽統合事例 分析을 통하여 남북한이 경제통합과정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과 그 실현방안에 대한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통합은 國家對 國家의 문제가 아니라 民族 內部的 문제로 이해해야 하지만, 국가간의 통합이론과 유럽통합사례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들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해 주며, 남북한이 漸進

的으로 統合을 심화시켜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럽통합운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진전되어 현재 政治的 統合까지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실질적인 통합의 수준은 경제통합을 완성해가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유럽통합 사례연구는 사실상 經濟統合過程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 II. 統合理論의 概觀

통합이론은 사회집단이나 국가들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의 共同體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이론이다. 統合方式에 관해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일된 이론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펜트랜드(Charles Pentland)는 통합에 대한 다양한 接近方法을 통합에 대한 가치, 가설, 통합과정, 통합목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1)</sup> 그에 의하면 통합이론은 多元主義, 機能主義, 新機能主義, 聯邦主義로 분류된다. 각 통합이론의 특징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 학자들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sup>2)</sup> 여기서는 통합과정에서의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과의 관계 및 초국가적 정책결정기구의 권한과 회원국의 主權 問題에 초점을 맞추어 각 이론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통합이론은 유럽공동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이론적 발전을 이룩해 왔으므로 통합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는 유럽통합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 Charles Pentland,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Faber and Faber Ltd., 1973), pp. 21-23.

2) 李相禹, 「國際關係理論」(서울: 博英社, 1991);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서울: 희성출판사, 1989); 李文奎 “南北韓 統合의 理論的 摸索,” 「統一研究論叢」, 8권, 1호 (1988), pp. 9-62; 全雄, 「地域統合理論과 ASEAN」(서울: 진명출판사, 1979) 참조.



## 1. 多元主義 理論

多元主義 理論(pluralist approach)에 의하면 政治統合은 국가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이한 국민과 정부를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는 것을 필연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원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도이치(Karl. W. Deutsch)는 統合을 “일정한 영역내에서 한 집단의 사람들이 역내 문제들에 관하여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신뢰성을 띤 기대를 장기간동안 충분히 확신시키는 공동체 의식과 기구 및 관행을 달성하는 상태”<sup>3)</sup> 로 정의하였다. 도이치에 의하면 비폭력적인 갈등해결, 평화적인 사회변화가 기대되는 多元主義的 社會가 정치적으로 통합된 상태인 것이다.

도이치는 통합된 사람들의 집단을 安全共同體(Security community)라고 정의하고 政策決定의 中心이 하나인가 혹은 둘 이상인가에 따라 안전공동체를 複合的 安全共同體(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와 融合的 安全共同體(Amalgamated Security Community)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複合的 安全共同體는 국가들이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며 결합하여 비폭력적인 분쟁해결과 평화적인 사회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도이치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 관계 및 2차대전 후의 독일과 프랑스 관계는 複合적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融合的 安全共同體는 두개 이상의 독립적 조직들이 결합하여 共同政府를 가진 하나의 단위체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동정부는 단일정부나 연방정부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미국연방정부는 독립된 州政府가 모여 하나의 융합적 안전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다원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의 핵심요소가 권력투쟁과 국가간의 이익갈등이라는 現實主義 理論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원주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3)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 5.

정치란 기본적으로 외교·전략적 분야에 관한 활동이고, 통합을 결정하는데 있어 政治論理가 경제논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다원주의 이론가들은 사회·경제·문화·기술 분야의 상호작용은 점진적으로 安全共同體를 형성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이들 영역은 下位政治(low politics)영역으로 국방·안보·외교 분야를 다루는 高位政治(high politics)영역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고 주장한다.<sup>4)</sup>

다원주의 이론은 국가간의 政治統合이 개별 국가에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정치엘리트간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공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도이치는 통합을 위한 條件으로서 정치엘리트의 가치 양립성, 정치적 태도의 상호대응성과 예측가능성, 일반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이 다원주의 이론에 있어서 정치엘리트와 대중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의 변화가 政治統合을 이루는 주요 변수가 되지만 경제통합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다원주의 통합이론가들은 民族國家들이 獨立과 主權을 유지하는 한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거래의 증대를 통하여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통합의 최종목표인 國家間的 共同體(community of states)가 형성된 상태는 국가간의 戰爭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국가의 主權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국가들이 국제환경에 대한 정보처리능력과 他國의 행위에 대한 상호 대응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 변수가 된다. 즉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國際統合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 2. 機能主義 理論

인간이 합리적 계산을 하게 되면 정치적 활동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의 理想主義者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기능주의 이론가들은

4) Pentland, *op. cit.*, pp. 34-35.

통합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自主的 活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이론가들과는 달리 국가의 강제력, 정부 제도, 外交·安保와 主權問題 등에 연계된 政治的 葛藤은 인간의 불합리한 감정에서 유래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m)은 영토로 분할된 民族國家를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組織化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취급한다.

대표적인 이론가인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현대 사회의 기술적 경제적 相互依存性의 증대는 국제협력과 통합을 촉진시키는 한편 국가중심적 국제정치체계를 침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미트라니는 경제·기술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한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은 다른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유발한다는 分枝理論(ramification theory)을 제시한다.<sup>6)</sup> 즉 보건, 통신, 개발, 수송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機能的 領域의 협력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政治領域의 협력을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機能主義者들은 국가의 主權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피하고 논쟁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사회·경제·기술적인 영역에서 협력을 증대시키고, 機能的 統合의 필요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을 강조한다.

기술과 경제적 변화가 國際關係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기능주의자들은 國境을 초월한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팽창은 국가의 領土保全과 排他的 主權을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은 국가간 機能的 業務를 수행하는 공동체 기구에 점진적으로 이양되어 최종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는 다수의 機能別 國際機構의 행정망이 확립되어 평화로운 世界共同體가 창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공동체는 공동의 이익에 헌신하는 기술자와 행정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經濟

5)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李文奎, 앞의 글, pp. 26-29 참조.

6)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1981); 崔昌潤 譯, 「國際政治論」(서울: 博英社, 1982), pp. 375-376 참조.

技術的 決定論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기능주의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관심의 초점을 논쟁적인 정치적 문제로 부터 비논쟁적인 기술적 문제로 이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 3. 新機能主義 理論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는 기능적인 통합행위를 통하여 漸進的 統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이나, 經濟·技術 決定論의 입장을 거부하며 政治權力과 경제·복지 문제는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기능주의 이론은 이익집단, 정당, 정부, 국제조직과 같은 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기능주의와 판이하게 다르다. 기본적으로 新機能主義者들은 기능주의자의 옷을 입고 기능적 수단을 통하여 연방적 목적을 추구하는 聯邦主義者들이다. 신기능주의자들은 기능적 요구가 생겨난 후 이에 따라 기구가 생겨난다고 하는 기능주의자들과 달리 統合을 촉진하는 기구의 창설을 의도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연방적 기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자들과 다르다.

신기능주의자들은 대부분 統合을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變化의 過程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아스(Ernst Haas)는 통합을 “몇개의 서로 다른 국가의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과 기대 및 정치활동을 새로운 中央體系로 이행시키도록 설득되어지고, 그 중앙체계는 기존의 民族國家를 초월하는 관할권을 가지게 되거나 요구하게 되는 과정”<sup>7)</sup>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린드버그(Leon N. Lindberg)는 統合을 “국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그들의 外交政策이나 기타 주요 정책을 행사하려는 의욕이나 능력을 배제하고, 그 대신 합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中心機構에 의사결정과정을 위탁하게 되는 과정”<sup>8)</sup> 으로 정의하

7)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p. 16.

8) Leon N. Lindberg, *The Political Dynamics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p. 6; 李相禹, 앞의 책, p. 318 참조.

였다.

하아스의 이론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미트라니가 「分枝」(ramification)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波及」(spillover) 개념인데, 과급이란 한가지 영역에서 배운 협력의 경험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감으로서 共同의 利益이 고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능주의자들은 민주적인 선진산업국가들간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이슈가 政治的 統合을 유도해내는 과급효과가 제일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기능주의자들과 달리 한 機能的 領域에서 협력한 경험이 다른 기능적 영역에 자동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적 분야의 협력이 政治的 分野로 필연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에도 반대한다.

신기능주의 이론에 의하면 波及效果는 행위자가 그들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한가지 영역에서 배운 통합의 교훈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기술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政治的 統合으로 확대되는 과급효과는 社會·文化的인 同質性을 가진 국가간의 정치엘리트들이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통합은 기능적 필요나 技術的 革新에 의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단체, 정당, 정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정치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신기능주의 이론은 政治的 役割을 강조하는 점에서 다원주의와 유사하고 共同體 機構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연방주의 이론에 접근하였지만 신기능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政治에 대한 概念은 다른 통합이론에서 말하는 정치에 대한 개념과 다른 것이다. 즉 다원주의자, 기능주의자 그리고 연방주의자들은 政治活動을 국방, 외교 또는 권력투쟁과 연결된 具體的인 活動으로 간주한다. 한편 신기능주의자들은 국가를 單一體로 보지않고 이익과 이슈들이 얽혀 있는 政治體制(political system)로 간주하며 정치활동을 공동체에서 가치의 權威的 分配를 둘러싼 갈등과 정책결정과정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한다.<sup>9)</sup> 그리고 국제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과 국내적 영역

9) Pentland, *op. cit.*, pp. 107-111.

에서의 정치활동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내 정치문제를 다루는 比較政治學의 體制理論(system theory)을 국제적 수준에 적용하여 국가간의 통합을 설명하려고 하는 신기능주의자들에게는 國際政治體制란 저급한 수준의 國內政治體制와 유사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국가간의 통합이론은 사실상 新生國家의 정치발전을 다루는 이론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 된다.<sup>10)</sup> 즉 신생국가가 정치엘리트에 의해 中央政府의 권한과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발전하듯이 國家間的 統合도 각국의 정치엘리트들이 초국가적인 정책결정기구를 통하여 공동의 정책을 추구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국가의 主權을 초국가적 기구에 이양하게 됨으로써 달성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이론은 國家라는 개념 대신 體制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국제정치영역을 국가간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수준의 국내정치체제와 유사하게 봄으로써 사실상 國家主權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 4. 聯邦主義 理論

국가간 통합이론으로서 연방주의 이론(federalist theory)의 핵심은 無政府 狀態인 국제정치체제에 국가간의 權力鬭爭을 통제할 수 있는 超國家的 中央政府를 설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주의 이론은 다원주의 이론과 같이 통합이 國家의 主權, 權力分配 그리고 정치엘리트의 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치적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 이론과는 달리 통합이 정치엘리트간의 價値 統合을 통하여 달성된다고 보지 않고 공식적인 協定이나 憲法을 작성하고 초국가적인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달성될 것으로 간주한다.

통합에 대한 연방주의적 사고방식은 역사상 오래된 것으로 古典的 聯邦主義 理論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헌법작성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 문제 등 제도적 장치 구성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

10) *Ibid.*, p. 116.

이론에 의하면 연방국가들은 일반적으로 成文憲法을 채택하고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을 유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11)</sup> 고전적 연방주의이론은 憲法議會 소집 등의 극적인 정치적 타결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主權을 제한함으로써 지금까지 국제적인 정치문제가 국내적인 문제로 급속히 환원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을 뿐, 장기적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최근 연방주의 측면에서 統合過程의 역동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학자는 에치오니(Amitai Etzioni)이다. 에치오니는 자신을 연방주의자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政治共同體에 대한 그의 정의와 분석은 연방주의 이론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치오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統合要素를 가진 상태를 정치공동체로 간주한다. 즉 폭력수단의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統制權을 가지고 있고, 자원과 보상의 분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의식이 있는 대다수 시민에 대한 政治的一體感을 부여하는 상태를 정치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연방주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sup>12)</sup>

에치오니는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통일이전의 상태, 통일과정(통합추진력), 통일과정(통합된 부문), 종결단계의 네 단계로 분류하고 統合의 水準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權力手段의 사용과 통제 및 엘리트의 역할을 지적하였다. 에치오니에 의하면, 통일 이전의 상태에서 문화적 동질성, 경제적 상호의존성, 지역적 인접성 등이 통일을 촉진시키며, 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종종 외부엘리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統一過程에서는 강제력, 經濟的 利益, 또는 일체감이 통합의 추진력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체제내의 엘리트가 외부엘리트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는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여

11) 金明基, 「南北韓 聯邦制 統一論」(서울: 探究苑, 1988); Daniel J. Elazar, "Federalism,"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5, Reprint edition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2), pp. 353-365.

12)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New York: Rinehart and Winston, 1966), p. 329; 崔昌潤(역), 앞의 책, pp. 377-390 참조.

한 부문에서의 통합이 다른 부문으로 과급되어 聯邦國家가 수립됨으로써 종결된다는 것이다.

연방주의 이론은 경제·기술적 영역에서부터 漸進的인 統合을 이루어가는 방법보다 급격한 政治的 妥結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의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과 大衆의 합의없이 극적인 통합 결단을 내리는 의지를 중요시한다. 에치오니는 선진 산업국가들간의 통합이 저개발국가들간의 통합보다 달성되기 쉽고, 엘리트 단위의 수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聯邦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연방주의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연방국가의 형성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聯邦主義 이론은 연방국가의 창설이 사실상 權威主義的 國家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sup>13)</sup> 이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국가의 主權을 포기하는 경우 現狀維持를 원하는 사회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통합을 원하는 정치지도자는 그들 손에 권력을 집중하여 社會集團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어느 단계에서는 사회집단의 동의에 관계없이 상대방 국가의 지도자와 통합에 관한 政治的 妥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 III. 유럽공동체 統合事例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중심적 정치질서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 피폐한 유럽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經濟的 必要性,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한 冷戰體制 형성기에 유럽의 安保를 강화하겠다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政治的 動機 등이 유럽통합의 推進力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통합을 經濟的 動機에 의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유럽통합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13) Pentland, *op. cit.*, pp. 167-168.



좁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공동체는 본질적으로 經濟統合體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럽통합과정을 經濟統合의 發展段階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문제점들을 앞에서 언급한 통합이론에 비추어 평가해 보는 것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유익할 것이다. 통합이론의 유럽통합사례에 대한 적용은 경제통합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공동체 정책결정기구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합이론의 현실에 대한 適實性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 1. 經濟統合 準備段階(1945~195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황폐되었고 國際秩序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었다. 국가중심적인 정치질서로 인하여 두차례에 걸친 世界大戰을 경험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수주의적 나치 독일의 잔악행위에 대한 기억은 많은 유럽 지식인들로 하여금 유럽聯邦을 형성하여야 전쟁을 방지하고 平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이 같은 지적 풍토와 더불어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동유럽을 共產化시킨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政治·經濟的 統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었다. 더욱이 미국은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 원조를 제공하면서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의 단합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聯邦主義者들이 활발히 統合運動을 전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서유럽 모든 국가에서 聯邦主義를 지지하는 조직들이 결성되었고 이들 조직들은 단합하여 1947년 「유럽연방주의자연맹」(Union of European Federalist)을 창설하였다. 유럽합중국 건설을 희망하는 聯邦主義者들은 유럽대륙국가들의 지식층과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多元主義的 協力體制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연방주의적 통합방안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연방국가를 형성하면 자국의 主權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대륙 국가의 정부관료들도 대체로 연방주의 방식의 유럽통합에는 거부감을 보였다.<sup>14)</sup> 이같은 정치지도층의 반발 때문에 聯

邦主義者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統合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큰 影響力을 행사하지 못했다.

1947년 미국이 유럽부흥을 위한 마샬계획(Marshall Plan)을 발표하고 유럽 자체가 地域的 協力を 기초로 하여 부흥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서유럽 16개국은 1948년 4월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를 발족하였다. OEEC는 유럽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회원국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貿易制限 措置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OEEC는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유럽지불동맹」(European Payment Union)을 설립하여 각국 화폐의 교환성을 강화하였다. 마샬계획에 의해 서유럽국가들이 經濟協力を 시작한지 1년후인 1949년 4월 미국,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결성하여 동유럽 공산권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유럽의 安保를 강화하였다. 유럽 10개국은 군사적 협력기구인 NATO에 대응할 만한 政治的 協力機構로서 1949년 8월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를 발족시켰다. 유럽심의회는 회원국 외상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인 閣僚委員會와 각국의 정치·경제·문화단체로부터 선출된 諮問會議로 구성되었다. 유럽심의회는 발족 이후 회원국을 확대하며 회원국간의 정치적·군사적·문화적인 문제들을 심의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후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OEEC, NATO, 그리고 유럽심의회는 전후 유럽을 도이치가 제시하는 複合的 安全共同體 수준으로 통합시켰다.<sup>14)</sup> 이 조직들은 유럽국가들간의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유럽인들의 共通價値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國際的 協力機構 이상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이지 못하였다. OEEC는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1958년

14) John Pinder, *European Community: The Building of a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 2.

15)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5); 具永祿 譯, 「國際政治의 分析」(서울: 法文社, 1978), pp. 395-314.

유럽경제공동체가 결성되자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1961년 유럽회원국 18개국과 미국, 캐나다는 OEEC를 발전적으로 해체시켜 선진국「經濟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를 발족시켰다. 그 후 일본, 호주 등이 가입하여 OECD는 현재 24개 회원국을 가진 거대한 국제협력기구로 발전하였다.

유럽심의회는 유럽국가들간 사회·경제·문화 분야에서의 機能的 協力を 확대함으로써 유럽통합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였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 형성에 관한 「슈만계획」(Schuman Plan)을 심의·결의하였다.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7개 국가들이 196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결성하자 유럽심의회는 이 두 집단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같이 유럽심의회는 유럽통합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閣僚委員會의 의사결정 방식이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심의회 자체는 超國家的인 政策決定機關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2. 關稅同盟 形成段階(1951~1968)

유럽공동체의 기원이 된 것은 프랑스 외상 슈만(Robert Schuman)이 계획하고 모네(Jean Monnet) 등 유럽연방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1951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창설한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이다. ECSC 창설에 영국은 主權이 제약받을 것을 우려하여 참가하지 않았고, 북유럽과 그밖의 중립국가는 政治的 統合을 전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ECSC는 超國家的인 執行機構(High Authority)의 주관 아래 회원국간 석탄·철강 제품에 대해 共同市場을 형성함으로써 실리를 취하는 동시에, 重武器 생산원료인 석탄과 철강 부문에 있어서 域內 생산·유통·소비는 물론 거래까지 공동 관리함으로써 유럽에서 전쟁을 방지하자는 의도를 지

닌 것이었다. ECSC는 特定産業에 국한하여 相互 市場을 통합하는 형태로서 통합의 범위가 협소한 制限的 性格의 경제통합이었다. 그러나 특정한 經濟部門에서는 회원국의 經濟主權을 제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여 유럽합중국 수립을 주장하는 聯邦主義者들은 ECSC 형성에 힘입어 1950년 韓國戰爭이 발발한 이후 동서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유럽군대 창설을 제안하였다. 1952년 6개국간에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se Community) 조약이 조인되자, ECSC에 활동하고 있던 연방주의자들은 1953년에는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政治共同體의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유럽군대의 설립에 대해 프랑스 의회가 국가의 主權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자 유럽통합을 위한 연방주의적 방안은 좌절되었다. 政治統合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연방주의자들은 新機能主義的 接近으로 선회하여 통합의 대상을 經濟部門으로 한정하였다.

1957년 6개국 外相들은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체결하여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를 창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재판소 등의 기구를 구성하였다. 한편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포르투갈 등 유럽 7개국은 EEC를 통한 관세동맹의 결성이 역외 국가들에 대해 공통관세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지 않고 대신 1960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한 EFTA를 발족시켰다. EEC를 창설한 6개국은 EEC 창설과 동시에 핵에너지의 공동개발 및 사용의 공동규제를 목표로 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설립하는 조약도 체결하였다.

EEC의 창설 취지는 경제 전분야에 걸친 共同市場을 형성하여 회원국간의 지속적·균형적인 經濟成長 및 生活水準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EEC의 共同市場 형성 노력은 먼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

집중되었다. EEC는 商品移動의 自由化를 실현하는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역내 관세의 완전철폐, 域外 共同關稅率 채택, 그리고 비관세 장벽 중 數量制限의 철폐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년의 준비 기간을 1년 6개월 앞당긴 1968년 7월 EEC는 關稅同盟을 완성시켰다. EEC는 關稅同盟을 추진하는 기간동안 공동의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農產品에 대해서는 價格 平準化를 달성하고 대외 보호장벽을 구축하였다.

EEC의 급속한 발전은 당시 유럽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극복하여 經濟好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국가간의 關稅 부과가 産業化 初期段階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유럽국가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인식이 회원국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關稅同盟이 촉진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 때문에 EEC는 예정보다 빨리 관세동맹을 완성하였지만 유럽통합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기능주의자들은 한가지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은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經濟的 相互依存性의 증대는 정치통합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EC의 경우 이러한 과급효과는 부분적으로만 발생하였다. 경제·기술 영역의 협력은 정치적 논쟁이 적은 부문에 한해서 과급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유럽국가간 經濟協力の 강한 동인이 되지는 못하였다.<sup>16)</sup> EEC가 공동정책을 추구한 원자력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도 회원국들이 防衛産業 육성을 위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URATOM의 경우 독자적으로 核武器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원자력에너지의 공동개발을 시행하지 못하고 순수한 연구분야에서만 협력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EURATOM은 정치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경제·기술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실패하였다.

新機能主義者들은 이익단체, 정당,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정치엘

16) Pentland, *op. cit.*, pp. 87-99.

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統合이 촉진되고 개별 국가들은 정책결정권한을 점차 공동체 기구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EEC 경우 공동정책을 수립하는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閣僚委員會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61년부터 영국, 노르웨이 등이 EEC 가입을 신청하여 집행위원회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거부로 가입교섭은 무산되었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 이익을 위한 드골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1965년에서 1966년 사이 EEC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1965년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의 이익이 걸려 있는 農業支援政策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經濟統合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수결로 통과시키려 하자 프랑스는 1965년부터 1년간 EEC의 모든 회의에 대한 참석을 거부하였다.<sup>17)</sup> 그 결과 EEC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었으며 각료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제가 정책결정의 관행이 되었다. 이로써 공동체 위원회의 초국가적 정책결정 권한은 크게 위축되었다.

### 3. 共同市場 擴大段階(1968~1985)

1967년 관세동맹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EEC 6개 회원국은 共同市場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EEC, ECSC, EURATOM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를 발족시키고 그때까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던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및 재판소 등의 기구를 單一化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드골 대통령이 하야하고蓬피두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1969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EC 頂上會談에서는 영국 등 EC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1973년 1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함으로써 EC 회원국은 9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당시 기준으로 인구 2억 6천만명, GNP 8천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經濟單位가 되었다.

17) 변도은, 「유럽공동체」(서울: 평민사, 1982), pp. 29-31.

1969년 헤이그 회담에서 EC정상들은 그때까지 주로 회원국 분담금에 의존해 오던 공동체 豫算을 농산물 수입과징금과 공산품 관세수입 등으로 충당하여 EC 자체의 고유재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원국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經濟通貨政策에 대한 EC의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1980년까지 經濟政策과 通貨政策을 단일화하여 경제동맹을 이룩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경제문제 이외에 對外政策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政治的 統合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EC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의 通商政策과 農業政策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일반 및 통화 분야에 대한 EC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회원국들 사이에 공유되었다. 이는 기능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한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다른 분야의 협력을 초래한다는 波及效果가 발생한 것이다.

1971년부터 유럽공동체는 共同 通貨體制를 창출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去來費用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3년 세계적인 石油波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공동 통화체제의 추진은 정지되었으며, 자국내의 經濟不況과 높은 失業率을 극복하려는 회원국들의 국내적 관심으로 인하여 市場統合 작업도 성과가 미미하였다.

석유과동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은 세계적인 정치·경제 여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불황은 政治的 協力없이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對外關係에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가입한 영국 등을 포함한 EC 9개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EC는 회원국의 이해대립으로 흔들리는 유럽통합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EC 운영에 合理化를 꾀하기 위해 1975년부터 정상회담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라는 명칭으로 상설 기구화하고 매년 3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1978년 EC 회원국은 기존의 통화체제를 개선한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설립하기 위해 서독과 벨기에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중 서독과 프랑스는 새로운

通貨體制의 설립을 적극 지지 하였으나, 영국은 EMS에 가입하면 국가의 고유권한인 金融政策權을 부분적으로 共同體에 양도하여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EC 8개국은 영국이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 197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통화체제를 개선한 EMS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EMS가 EC집행위원회 행정관료들과 각국의 기술관료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각국 頂上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關稅同盟을 넘어서는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적 협력보다는 政治的 意志와 決斷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sup>18)</sup>

EMS는 각국 中央銀行間의 긴밀한 協調體制를 구축하여 換率變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절을 가능하게 하였다. EC는 EMS가 발족한 후 유럽 통화기금을 설립하여 회원국의 經濟 및 通貨政策에 대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였다. EMS의 설립취지는 경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通貨同盟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인들은 EMS의 성공이 정치적 협력 등 다른 정책분야의 협력에 肯定的 波及效果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EC는 EMS의 출범과 함께 그때까지 각 회원국 議會가 소속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파견한 대표로 구성되었던 유럽議會 制度를 개선하여 각국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유럽의회를 구성하였다.

EMS 출범과 유럽의회 의 직접선거는 유럽통합의지를 다시 소생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油價波動의 여파로 유럽 경제가 長期 沈滯를 겪게 되자 유럽 각국은 經濟, 通貨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서 이해가 대립되어 유럽통합은 실질적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유럽경제가 불황에 시달리고 각국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가운데 유럽商品의 國際競爭力은 계속 떨어졌다. 전자제품과 같은 尖端產業分野에서 유럽상품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뒤지고 있었고, 기타 勞動集約的 產業分野에서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EC는

18) Lothar Späth, *Der Traum von Europa*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GmbH, 1989); 홍순도·김경숙 역, 「유럽의 꿈」 (서울: 동아출판사, 1991), pp. 49-54.



회원국들의 保護貿易主義적인 경제정책 수립을 방지하고 자본과 기술협력의 강도를 높혀 유럽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EC는 1982년 부터 共同市場 형성 촉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1985년 3월 각료이사회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1985년 6월 EC 집행위원회는 「역내 시장통합 백서」를 작성하여 實物 및 金融 양면에서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同 白書는 역내 국가간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을 저해하는 282개의 요인을 物理的, 技術的, 稅制的 障壁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 4. 共同市場 完成段階(1985~1992)

1981년 그리스에 이어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함으로써 EC는 12개 회원국으로 늘어났다. EC가 확대되면서 회원국간의 經濟的 不均衡과 社會的 異質感이 더욱 커졌다. 이에 EC 12개 회원국은 지금까지 부진하였던 經濟統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럽국가들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책결정권한과 회원국간의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市場統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 때문에 EC 회원국은 1987년 7월 「로마조약」을 개정한 「단일유럽협정」(Single European Act)을 체결하였다.

단일유럽협정에서 유럽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9)</sup> 단일유럽협정의 한가지 특성은 共同市場 완성 시한을 1992년까지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EC 기관의 기능 강화와 運營의 合理化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EC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유럽이사회가 EC의 정식 법적기관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장일치제 원칙이 일부 폐기되고

19) 沈翊燮, 「유럽공동체」(인천: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0), pp. 403-410 참조.

대신 다수결 원칙이 채택되었다. 또한 EC의 政策領域이 무역 통화만이 아니라 사회·보건·환경분야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社會的 結束 강화를 위해 「경제·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단일유럽협정의 다른 한가지 특성은 그때까지 EC 영역 밖에서 추진되어 오던 정치·외교분야에서의 협력을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이라는 법적 기구로서 제도화시켜 EC가 政治共同體로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PC는 ECSC나 EURATOM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EC와는 별개의 기구로서 운영되는데 EPC와 EC는 유럽이사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 같이 정치·외교분야의 협력이 제도화됨으로써 聯邦政府的 方向으로 EC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EC는 단일유럽협정을 채택한 이후 그동안 별 진전이 없었던 通貨統合 노력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通貨統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9년 經濟 및 通貨統合을 세 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내용의 「들로르報告書」(Delors Report)가 발표되었다. 들로르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1990년 7월 1일까지 域內 市場에서의 資本移動 및 對外支給決濟를 완전히 자유화 시킨다는 것이다. 通貨統合의 1단계에서 EC회원국들을 모두 유럽통화제도에 가입시켜 換率을 안정시키며, 2단계에서는 1996년까지 유럽 中央銀行을 설립하여 1998년까지 通貨政策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유럽 중앙은행에 이양하고, 3단계로서는 單一通貨를 발행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의 換率을 고정시킴으로써 通貨統合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유럽 공동시장이 완성되어감에 따라 EC 頂上들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Maastricht)회담에서 「유럽동맹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이에 조인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단일유럽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로마조약을 수정한 것으로 2000년까지 유럽합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EC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事項들을 명시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通貨 單一化 및 유럽 中央銀行 창설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것을 규정한 「경제·통화동맹」

(Economic and Monetary Union)과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및 공동 외교 안보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동맹」(European Political Un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치동맹에 관한 조약은 유럽市民權 制度를 도입하여 각 회원국의 國籍을 보유한 모든 개인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居住移轉의 自由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투표권 및 피선거권 보유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평가해 볼 때, 조약에 명시된 유럽통합은 각 국가들 간의 단순한 提携段階를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共同體로 한 걸음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통화동맹에 대해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각국이 經濟主權의 중요한 부분인 通貨政策을 유럽 中央銀行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유럽聯邦을 지향하는 구상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通貨統合의 결과로 자국의 主權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통합의 움직임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표류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나가면 유럽인들은 금세기 말까지 經濟統合은 물론 政治的 統合까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합의에 의한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을 통해 얻어질 長期的인 공동의 이익과 短期的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개별국가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 IV. 南北韓統合에 주는 示唆點

남북한의 경우 북한은 정치적 일괄타결에 의해 일시에 남북한 聯邦國家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남한은 漸進的이고 機能主義的인 통합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4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온 유럽

20) 유럽통합운동의 연방주의적 목표에 관해서는 Pinder, *op. cit.*, pp. 206-208 참조.

통합의 示唆點은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적 일괄타결에 의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非現實的이라는 점이다. 유럽공동체 형성 초기에 연방주의자들은 일시에 政治統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952년 유럽정치공동체 설립운동이 실패하자 經濟統合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북한도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가자면 유럽과 같이 經濟共同體의 형성을 전제로 하여 自由貿易地帶, 關稅同盟, 共同市場 그리고 經濟同盟의 段階的 過程을 따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유럽통합사례는 경제영역부터 漸進的 統合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순수한 경제·기술적 영역만의 협력에 의해서는 政治統合은 물론 經濟統合도 심화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기능주의 이론은 한 부문에서의 협력이 자동적으로 다른 부문의 협력으로 과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유럽의 경우 기능적 波及效果는 제한된 부문에서만 발생하였다. 統合의 초기단계인 關稅同盟을 완결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간의 이해 대립으로 유럽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기술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분리하여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 논리는 지나치게 理想主義的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신기능주의자들은 政治權力과 經濟福祉 문제는 확연히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치엘리트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신기능주의 이론은 정치엘리트들이 經濟的 利益을 위해 접촉하고 共同政策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동체 정책결정기구의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유럽통합사례는 經濟不況이 시작되면 회원국들이 자국의 단기적인 利益에 몰두하게 되어 공동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1979년 유럽통화제도의 창설이 공동체 정책결정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원국가들의 政治的 妥協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동정책의 추진이 공동체의 정책결정권한을 자동적으로 증진시킨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도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만약 남북한 경제가 모두 침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남북한간에 經濟的 利益이 대립되어 統合過程이 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交流·協力을 확대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政治的 信賴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치적 타협에 의해 남북한의 공동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결정기구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유럽통합에서의 經濟統合은 비교적 유사한 경제수준 및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유럽통합사례는 남북한이 經濟水準 격차를 해소하고 產業構造를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대부분 後期產業社會段階에 도달하여 비교적 높은 國民所得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消費行態도 서로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가입하여 회원국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이질감에 따른 마찰이 증대되었다. 남북한의 경우 經濟體制가 상이하고 經濟發展 水準 또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보다 더 큰 갈등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품교류 및 합작투자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남북한 산업이 相互 補完的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經濟發展方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럽통합사례는 특정 經濟部門에 대한 部門別 統合이 공동시장 형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유럽공동체의 母胎가 된 것은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및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제한된 영역에서 超國家的인 統制力을 행사하는 部門別 統合機構였다. 남북한도 유럽의 사례를 교훈삼아 교류·협력단계를 거쳐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석탄, 철강 및 핵에너지와 같이 戰爭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特殊産業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 공동관리 개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핵에너지공동체」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남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경우 經濟統合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동체 정책결정기구의 권한을 聯邦政府 형태로 강화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경우에도 경제통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和解·協力の 段階를 거쳐 南北聯合期에 접어들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정치기구들을 制度化시키고 이 기구들의 권한을 점차 확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남북한 경제 주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연합」 단계의 경제적 성격은 일종의 經濟同盟을 형성하는 것인데, 남북한은 이 단계에서 먼저 貿易, 通貨, 財政 등과 같은 경제 주권의 핵심적인 문제를 조정하고 국방, 외교, 안보 등 政治的 主權도 점진적으로 남북연합기구에 이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연합은 공동체 정책결정기구의 성격을 넘어서 남북한의 主權을 이양받는 연방정부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V. 結 論

유럽통합사례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南北韓 統合도 실현가능한 경제영역부터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政治的 統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럽의 統合은 유사한 시장경제체제간의 통합인 반면 남북한의 경우는 市場經濟體制와 社會主義經濟體制間的 통합이므로, 남북한의 경제통합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의 역할은 유럽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과 같은 異質體制間的 통합의 경우 경제체제간의 상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통합은 단순한 經濟問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남북한간 정치적 관계개선의 정도와 밀접히 결합되어 발전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은 방대한 人口 및 資源이 제공하는 規模의 經濟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시킬 것이다. 사실 유럽통합 사례는 경제권이 확대될 수록 勞動分業의 영역이 팽창하게 되고, 자원배분이 효율화되어 經濟가 성장한다는 규모의 경제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경제현황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교훈을 준다. 남한 주민들은 市場經濟 原理에 익숙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시장경제의 운영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 經濟統合의 효과는 상당기간 經濟成長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방대한 규모의 남북한 共同市場이 가져다 주는 경제성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낙관하지만, 남북한 통합에 따른 중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李 宇 榮\*

## ◁ 目 次 ▷

I. 서 론	Ⅲ. 김정일의 문예관
Ⅱ. 사회주의의 문예관	Ⅳ. 결 론

## I. 서 언

### 1. 문제제기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첫째, 문학 예술은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거울이라는 것이다.<sup>1)</sup> 둘째, 예술은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 사회체제를 선도하고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셋째, 때로는 사회가 문학예술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예술과 사회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1) 문학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기계적 반영론이라고 한다.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학예술도 장르에 따라 사회적 위상이 다르고 같은 장르라고 하더라도 개별 작품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sup>2)</sup>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 환경에 따라서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세사회의 문학예술은 정치나 지배집단에의 예속성이 높았다고 한다면 근대사회의 문학예술은 상대적으로 사회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르와 시대에 따라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사회의 체제적 특성도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문학예술은 체제와 지배이념을 확산하는 도구로 공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도 문학예술을 포함한 문화가 체제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나,<sup>3)</sup>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체제에서는 다양한 문학예술이 허용되고 있으며, 최소한 외면적으로는 문학예술의 독자성이 보장받고 있다고 보여진다.<sup>4)</sup>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체제의 문학예술은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념적 도구로 간주되어 국가가 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창작과정에 국가나 당이 직접적으로 간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문학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2) 시와 영화가 예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같은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순전히 오락적 기능을 수행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계역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걸작들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들은 동시대에 많이 유포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작품들은 후대에 와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작품들은 광범위한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작품들은 평론가나 지식인 혹은 지배층과 같이 특정 집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3) 그람시(Gramsci)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 Bryan S.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rgy Allen & Unwin, 1980), pp. 11~12.

4)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문학예술 활동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문학예술을 주도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반대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이 발표되고 수용되고 있다.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학예술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둘째, 문학예술작품이 사회에 대하여 갖는 자율성 내지 독립성은 대단히 약하다. 셋째, 정부 보다는 당이 문학예술활동을 통제하며, 최고지도자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다. 넷째, 문학예술작품의 사회적 기능, 특히 정치사회화의 매체로서의(agency of political socialization) 기능이 강조된다. 다섯째, 부분적으로 문학예술작품이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체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이상향을 반영하고 있다. 여섯째, 지도자 내지 지배집단의 교체에 따라 문학예술작품의 성격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까닭으로 대중문학예술과 고급문학예술을 구별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김일성도 집권초부터 문학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집권 이후 반대파벌과 권력투쟁을 하던 시기나, 1960년대 이후 ‘주체’의 기치하에 독자노선을 주장하던 시기에 문학예술을 지배이념을 공고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더욱이 권력을 승계받고 있는 김정일은 당의 선전선동분야(과장 및 부부장 1967~1971;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 1973~1980) 및 문화예술분야(문화예술부장 1977~1973)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김정일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문학예술의 정치적 역할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해서는 문학적이고 예술학적 분석보다 사회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문학예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환경이 되는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과학적으로 문학예술을 분석하면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김정일의 문예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일의 문학예술관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문학예술이 사회 특히 정치체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문예관을 분석하여 북한 문학예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김정일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sup>5)</sup> 문예관 분석을 통해 김정일과 그의 사상 그리고 그의 통치체제를 이해하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연구에서 문화적 차원에 대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류단계나 통합단계에서 사회적 동질감을 회복할수 있는 중요한 토대의 하나가 문화 교류나 통합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한 적극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통합의 기초연구로서 유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방법론

문학예술관은 문학과 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예술인에 대한 문예관은 특정 사조에 대한 태도나 간여 정도 등을 그의 작품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예술인은 아니고 정치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문예관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예술의 목표, 정치·사회적 역할, 표현양식과 창작방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김정일의 문예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그가 발표한 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김정일의 각종 문건은 김일성과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김일성은 「저작집」, 「선집」 등으로 모든 문건이 정리되어 있는 반면 김정일은 「김정일선집」이 1992년 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5) 1992년에 출간된 「김정일 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에는 총 46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중에 문학예술에 관련된 것이 18편에 이른다.

6) 김정일의 명의로 나온 글들이 자작이냐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나 그의 공식적인 문학예술관이라고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3권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일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저서 중 국내에서 구할수 있는 자료들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집」 1권에서 문학예술을 다룬 논문들과 「조선중앙연감」 등의 자료에서 발췌한 글들을 중심으로 분석코자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지도하에 창작되었다고 평가되는 주요 작품들을 그의 문예관을 이해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이용할 것이다.

특정 사상이나 이념은 그것이 배태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문예관도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등장한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체제의 변화와 연관하여 그의 문예관을 분석하는 해석학적 방법을 원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시대적 변이에 따른 김정일 문예관의 변화와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문예관과의 비교 분석방법도 김정일의 문예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인 문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김일성의 문예관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일의 문예관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 II. 사회주의의 문예관

### 1.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sup>7)</sup> 토대로 모든 작품들이 창작

7)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쓰여진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경향적 리얼리즘, 기념비적 리얼리즘, 공산주의적 리얼리즘 등의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1932년 10월 고리키의 집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스탈린이 “만일 예술가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묘사하려면, 사회주의를 향한 삶이 무엇을 낳는가를 관찰하고 지적해야만 한다. 이런 작품이 바로 사회주의 예술인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될 것이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C. V. James, 연희원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기원과 이론」(서울: 녹진, 1990), pp. 130~31.

되어지고 문예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세기 후반의 비판적 리얼리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른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발생하고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양식으로 승인받았으며, 그 이후, 시기와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존재하나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예술양식으로 채택되었다.<sup>8)</sup>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적인 특성은 엥겔스가 이야기하는 “디테일의 충실함 이외도 전형적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성격들의 충실한 재현을 의미한다”라는 명제에 축약되어 있다.<sup>9)</sup> 이는 문학예술 작품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근본적으로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의 두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학예술작품은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하며 특히 현실의 문제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은 다른 문예사조보다 반영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여타의 리얼리즘론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단순히 현실의 묘사나 비판적 인식이 아닌 새로운 전형의 인간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적인 작품은 새로운 세계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세계관은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경향성을

8) 반성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pp. 10~11.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는 엥겔스의 발자크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낙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엥겔스의 발자크론 - ‘비판적 리얼리즘/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구분법과 관련하여,” 실천문학 편집위원회 엮음,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서울: 실천문학사, 1992) 참조.

9) Lee Baxandall & Stefan Marawski, trans.ed., *Marx &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A selection of writings* (St. Louis: Telos Press, 1973), p. 114.

10)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생각하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신승렬 외 역 「마르크스 레닌주의 미학의 기초이론 I」 (서울: 일월서각, 1988), pp. 268-269 참조.

강조하며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다른 어떠한 문예사조보다 정치적 지향성이 강하며 목표도 뚜렷하다.

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작품의 창작과 문예정책에서도 특성을 보인다. 작품들의 창작과정에서는 장르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① 민중연대성 ② 계급성 ③ 당파성 ④ 혁명적 낭만주의 ⑤ 긍정적 주인공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sup>11)</sup> 문예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당파성의 고수 그리고 당(黨)의 개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sup>12)</sup>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성은 하나의 특정한 문예사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배이념 확산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사회주의 국가인 제3세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대항이데올로기의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한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론은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위하여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체제통합적 성격이 강하다.

## 2. 김일성의 문예관

북한의 문학예술도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기본적인 창작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1) 반성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p. 26.

12) 사회주의 국가의 문예정책은 정권담당자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의 스탈린 시대와 그 이후, 중국의 모택동 시대나 문화시대와 그 이후의 문예정책은 동일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항재, “소련 문예정책의 전개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pp. 45-53; 이충양, “중국의 문예정책,”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pp. 41-44. 그러나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변하였다고 보다 당의 개입의 정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실을 혁명적 발전 속에서 역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창작 방법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인류가 축적한 문학예술창조의 경험과 성과들에 기초하여 발생발전한 가장 선진적인 창작 방법으로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으며 오늘의 현실묘사에서 미래의 싸움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혁명적 량만성의 원칙을 그의 유기적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다.”<sup>13)</sup>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특성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풍부화시키었다.”<sup>14)</sup>

따라서 비록 북한의 문예관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보다는 김일성의 문예관이 문학예술의 창작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 문학예술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민족문화와의 연관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민족유산가운데서 락후하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만 사회주의의 새문화와 생활기품을 창조할 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sup>15)</sup>

김일성의 이러한 문화관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곧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 된다. 김일성은 전통문화에 대

13)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37.

14)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 498.

15) 「김일성저작선집」4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p. 381.

한 복고주의와 허무주의적 태도를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족문화의 계승에 대하여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우리 나라 민족문화유산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보존관리하며 계승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으며 또 어떤 일군들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과거의 것이라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다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의 것을 무시하는 민족허무주의적 경향이며 후자는 과거의 진부한 것까지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적 경향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다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유해로운 편향입니다.”<sup>16)</sup>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서 전통문학을 재해석하거나 전통악기의 개량이 활발한데 이러한 시도들도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민족문화도 말살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국가건설단계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은 봉건적 잔재라기보다는 일본에 의한 식민주의적 잔재였기 때문에 민족적인 내용과 형식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 김일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학예술에서도 ‘항일혁명문학예술’이 강조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철저히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혁명적 문학예술

16)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283.

17) 고음단소, 단소,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대, 장새납, 대피리, 저피리, 소해금, 중해금, 대해금, 저해금 등이 새롭게 개량된 전통악기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기들은 실제로 서양악기들과 같이 편성되어 각종 음악연주에 쓰이고 있다. 서연호, “북한의 혁명가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1주년기념 북한의 문화예술 심포지움 결과보고서, 「북한의 문화예술」 (서울: 통일원, 1990), p. 101.



을 발전시킬데 대한 지도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혁명문학예술사업을 확고히 령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새로운 사회주의적인민족문화건설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sup>18)</sup>

항일혁명문학예술이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활동을 본받자는 것으로 맑스-레닌주의문예론 혁명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그것을 조선의 상황에 적용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원칙하에 창작된 작품들은 주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운동을 하던 시기의 일화들을 다룬 것들이 많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혁명가극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조국의 별’ 연작 등을 들 수 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내용에 있어서도 특성이 있지만 동시에 창작과정에서도 집단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집체성이 강조된다. 집체적 창작방법은 빨치산 시절에 전문적인 창작자의 존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창작방법인데 이러한 집체적 창작방법이 대중들의 감정이나 사상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항일혁명문학예술은 근본적으로 김일성 유일체제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sup>21)</sup> 그러나 이외에도 항일혁명문학예술은 반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문예관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한 문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체적 창작과 대중성의 강조를 통하여 문학예술의 보편화를 달성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18) 「문학예술사전」, p. 922.

19) 「문학예술사전」, p. 924.

20) “지난날 항일빨치산에는 전문적인 작곡가가 없었고 거기에서는 싸우는 청년들이 모여서 집체적으로 작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 노래는 대원들의 감정에 맞았으며,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대중들 자신이 작곡하면서 자기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264.

21) 실제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주요 작품들은 김일성이 직접 창작하였다고 홍보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지대장의 이야기」이다.

22) 문학예술에서 대중성의 강조는 군중예술을 중요시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일성은 “군중예술은 사상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소박하고 락천적이어야 합니다. 농촌예술소조들은 간단한 사실을 잘 형상한 작품을 가지고 대중을 교양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함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전통이 북한사회에서도 대체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북한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족적 형식이 강조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문학예술작품들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김일성의 문예관은 북한체제의 상황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체제와의 연결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특히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과 개인에의 예속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북한에서는 당이 직접적으로 창작활동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지도가 작품활동의 기본이 된다. 김일성의 교시는 문학 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연극 등 문학예술의 전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시 내용도 세세한 부분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서 다른 사회주의국가보다 북한의 문학예술의 획일화 정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중요시하는 주인공의 정형화 모델은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의 항일투사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바람직한 이상향을 강조하는 것 못지 않게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비판이 중심적 테마로 각종 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Ⅲ. 김정일의 문예관

#### 1. 김정일의 문예활동

김정일은 22세이던 1964년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중앙위원

---

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군중예술의 사명입니다”라고 말하고 “몇몇 전문작가, 예술인들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근로대중이 예술활동에 널리 참가하고 대중의 지혜가 발동되어야 인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좋은 예술작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김일성,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pp. 54~55.

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1966년 당 선전선동부의 지도원이 됨으로써 예술분야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그후 1968년에는 당선전선동부 영화 예술과장이 되고, 1969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된 후 1972년에는 부장의 지위에 오른다. 이어 1973년에 당 중앙위의 조직 선전선동 담당비서가 된다.<sup>23)</sup> 이와 같이 1974년에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되기까지 김정일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김정일은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68), “혁명에 필요한 명곡을 많이 창작하자”(1969),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1970),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1971), “피바다식 혁명가극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 예술성이 높은 혁명가극을 발표하자”(1971), “문학예술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72),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 데 대하여”(1972) 등의 논문을 발표하고 1973년에는 그의 영화예술과 문학사상을 집약되었다고 하는 저서 「영화예술론」을 출판한다. 김정일은 문학예술분야에서 종사하고 문학예술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작현장에 참여하는 등 문학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은 권력을 승계하고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된다. “주체적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1981), “교예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1),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86), “연극예술에 대하여”(1988) 등의 문학예술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년에도 「미술론」 및 「건축미술론」을 출판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새로운 다부작 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sup>24)</sup>

23) 박규식, 「김정일평전」(서울: 양문각, 1992), p. 99.

24) 「로동신문」, 1992. 2. 6.

김정일이 문학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은 경우는 문학예술분야가 체제와의 연관성이 깊으며 동시에 문학예술을 포함한 선전전동 분야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부문이라는 점이다. 권력 승계 결정 이전이나 과정에서 문학예술분야를 관할하는 선전전동 부분에서 일함으로써 김정일은 개인적 업적을 쌓고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둘째,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문학예술 특히 그 중에서도 영화에 대한 관심은 취미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다.<sup>26)</sup>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문학예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나,<sup>27)</sup> 김정일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더욱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주체문예이론

아버지인 김일성의 권력을 승계하고 있는 김정일은 이념적 성향이나 사상적 특성 그리고 정책 방향에서 김일성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 개인적인 정치적 기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후원하에 권력을 획득한 김정일로서는 김일성의 사상과 노선을 답습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문학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김일성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25) 김정일이 개인적 역량이 떨어져서 선전전동분야나 문학예술분야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문학예술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는 정권수립기로부터 1960년대의 중소분쟁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념투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념분야와 관련이 있는 선전전동과 문학예술 분야는 권력구조에서도 핵심적인 분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6) 김정일은 1만5천여편의 필름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영화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영사실 시설이 되어있고 그는 거의 매일 밤 영화문헌고에서 필름을 가져다가 감상한다고 한다. 최은희·신상옥, 「최은희·신상옥 남북수기: 김정일 왕국」 下 (서울: 동아일보사, 1988), p. 108.

27) 레닌이나 모택동 그리고 스탈린도 모두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주체문화이론을 주장하고 있다.<sup>28)</sup>

주체사상은 1955년에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통치이데올로기라고 설명된다.<sup>29)</sup>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으나 이를 심화 발전시킨 사람은 김정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sup>30)</sup> 또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주요 논문의 작성자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문예관의 토대는 주체사상이며 문학예술의 목표는 유일사상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사상사업의 총적 방향에 따라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전례없는 양양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sup>31)</sup>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에 구현하고 유일사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혁명문학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혁명문학’은 두가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로 김정일은 문학예술은 일차적으로 김일성의 형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주체사상이 1960년대 이후 활발히 논의되었다고는 하나 1970년대 이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이후 주체사상이 더욱 강조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도 권력승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기본적인 해설서로 1974년의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와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김정일이 직접 저술하였다고 발표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29)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 28일에 김일성이 행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상사업...”은 주체사상의 본질을 밝히는 기초 문건으로 북한에서 취급되고 있으나 “사상사업...” 연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작된 문건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김일성이 창시한 것이 1930년이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 7.

30) 「로동신문」, 1992.2.15.

31)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05.

“우리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혁명 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화한 문학을 말합니다.”<sup>32)</sup>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깊이있게 그리는 것입니다.”<sup>33)</sup>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도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 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며,<sup>34)</sup> 이를 위해서는 김일성의 항일혁명시기의 활동을 재규명하거나,<sup>35)</sup> 김일성이 직접 창작하였다고 하는 작품들을 재창작할 필요가 있게 된다.<sup>36)</sup>

둘째, 주체사상이 북한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학예술에서도 특수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관현악곡은 구라파적인 형식이므로 대신에 민요와 같은 전통적인 양식으로 음악을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은 력사와 풍습, 습관과 성격이 다르며 그것으로하여 생활감정과 정서도 다릅니다. 민족적 형식은 민족의 생활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고유한 형상수단으로서 장구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굳어집니다...인민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예술형식을 갖춘 음악으로서는 민요를 들수가 있습니다...구라파식으로 서곡이요, 교향시요, 교향곡이요 하는 것을 적지 않게 썼는데 그런 형식의 관현악작품은 우리 인민이 좋아하지 않으며 작품의 이름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sup>37)</sup>

민족적 형식의 대표적인 양식으로서 혁명가극을 민족가극이라는 명분에

32)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 112.

33)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 299.

34) “4·15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 244.

35) 「불멸의 역사」 연작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36) 「꽃파는 처녀」가 한 예가 된다.

37)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할 음악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김정일선집」 1, pp. 210 12.

의하여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up>38)</sup>

김정일의 문예관은 이와 같이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정일이 주도한 작품들로는 소설로서 「불멸의 역사」 총서, 영화로서는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 다부작, 그리고 가극으로서 「영광의 노래」를 들 수가 있다.<sup>39)</sup> 그리고 문학을 담당하는 「4·15창작단」, 혁명가극을 담당하는 「피바다극단」, 무대예술을 담당하는 「만수대예술단」, 미술을 담당하는 「만수대창작단」 등도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통해 당의 유일적 지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이들 단체들은 김정일의 지도하에 김일성의 위대성을 고양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거나 김일성이 빨치산 시절에 창작하였다고 하는 주요 작품들을 재창작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3. 종자론(種子論)

김정일의 문예관은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주체문예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종자론이다. 종자론은 1972년에 발간된 「문학예술사전」에 처음 언급된 것이나, 1973년에 김정일이 펴낸 「영화예술론」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이후 발표된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론에 따라 창작되고 평가받고 있다. 김정일이 강조하고 있는 종자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 예술인들이 말하려는 기본문제와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며, ② 작가 예술인들은 생활에 대한 체험과 연구에 기초하여 그가 해명하려는 근본문제를 형상의 요소들과 유기적 연관 속에서 골라잡아야 하고, ③ 종자는 주제와 소재에 모두 관련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소재선택, 주제설정, 예술적

38) 서연호, “북한의 혁명가극,” p. 96.

39)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항일 혁명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고 인민대중에게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40) 박규식, 「김정일 평전」, p. 215.

형상 창조의 전과정에 관련되며, ④ 소재란 아직 예술적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생활현상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며, ⑤ 주제란 사상·미학적으로 전환된 생활 현상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고, ⑥ 소재·주제·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키시는 단일한 개념이 요구되어지는 바 이것이 바로 종자인 것이며, ⑦ 종자에 있어서 기본은 사상에 두고 소재와 주제의 요소들은 사상적 알맹이에 의하여 제약되고, ⑧ 종자에 의하여 유기적, 전일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⑨ 종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인 것이며, ⑩ 좋은 종자를 고르려면 사물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정치적 안목을 가져야 하고, ⑪ 종자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의 보장은 종자의 예술적 의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⑫ 예술적 가공에 있어 예술적 세부들과 형상들을 종자에 집중시키고 복중시킴으로써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⑬ 주인공의 형상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제기하는 기본 문제의 예술적 해명에 알맞는 위치에 놓고 성격적 특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sup>41)</sup>

종자론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김일성의 문예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나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종자를 작품의 핵으로 강조함으로써 문학예술작품에서 사상성의 문제를 더욱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자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작품의 모든 부분들이 핵심적 사상에 의해 지배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의 세부적 내용 뿐만 아니라 작품의 소재까지 제한받게 된다.

둘째, 종자를 김일성과 당의 교시로 규정함으로써 획일화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종자를 선택하기 위한 작가들의 정치적 안목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작가들에게 김일성이나 당의 교시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41)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75), pp. 172~188.



러한 과정에서 작가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수 있다.

#### 4. 김정일 문예관의 변화

김정일의 문예관은 그가 처음 선전선동부문이나 문학예술부문에서 종사하기 시작하였던 1960년대나 권력승계자로 부각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여진다.

1960년대에 김정일은 원론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김일성의 문예관에 토대를 둔 문예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반남한, 반미 등 반자본주의를 기저로 하고 있으나 “혁명문학예술을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내용을 그들의 구미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담아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으로<sup>42)</sup> 생각하는 등 원론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한다. 특히 종자론이 나온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더욱이 김정일이 속도전을 주도하면서, 5대혁명가극과<sup>43)</sup> 5대 혁명연극을<sup>44)</sup> 지도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수령의 형상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여전히 종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종자의 기본 문제로 인간과 생명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주체의 인간학은 자주적인 인간전형을 그려야 합니다...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그려야 합니다. 우리시대 인간의 성격은 바로 이렇게 형성되어야 지난 시기의 작품에서 보여준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형의 인간전형으로 될수 있습

42)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김정일선집」 1, p. 50.

43) ‘피바다’(1971), ‘꽃파는 처녀’(1971), ‘당의 참된 딸’(197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

44) ‘성황당’(1978), ‘혈분만극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 1당’, ‘꽃파는 처녀 10주년 기념 및 700회 기념 경축야외공연 경축대회’(1988).

니다....문학예술작품에서 인간형상이 생명으로 된다면 인간형상에 활력을 부여주고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생명의 핵은 종자입니다.”<sup>45)</sup>

따라서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구현하고 이를 일상적 세계에서 찾아야 하며 “주체의 문예사상은 사람위주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새로운 문예학설로서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위주로 보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창작의 근본원리”가 된다.<sup>46)</sup>

시기별로 김정일의 문예관이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김정일 자신의 위상변화이다. 즉, 1960년대에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할 때는 문화예술 그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과 기존의 김일성 중심의 문예관에 충실한 작품 창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각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수령론을 강조하거나 유일사상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보여진다.

둘째, 북한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의 성격변화에 따라 김정일의 문예관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중소분쟁이후 주체의 기치하에 독자성을 강조함에 따라 민족적 형식을 강조하였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등장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인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예관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체사상의 성격변화가 북한이 처한 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영향받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김정일의 문예관도 북한체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부분적으로 문학예술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관점이 변화하였다고는 하나

45) “연극예술에 대하여,” 「조선중앙연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p. 74-76.

46) 「로동신문」, 1992.4.3.

47) 최근에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주체사실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류인호,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가장 옳은 창작방법,” 「조선예술」 434 (1993, 2), p. 56.

근본성격이 변화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특히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지배원칙, 기본적인 문학예술이 수행하는 정치교양 수단으로서의 역할,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 유일사상의 고취, 그리고 민족적 형식의 강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되게 김정일의 문예관에 등장하고 있다.

### 5. 김정일 문예관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의 문예관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통과 김일성의 문예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예술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반제국주의(반미) 및 반자본주의(반남한)를 강조하기도 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부각시키기도 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였다.

김정일이 생각하는 문학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정치교양(정치사회화)이 된다. 즉 문학예술은 북한 인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혁명적 교양과 계급적 교양’을 쌓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의 여러가지 장르 중에서 김정일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예관이 집약된 것이 「영화예술론」이며, 개인적인 취향으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sup>48)</sup> 그의 선집 1권에 게재된 논문의 총 편수가 46편이고 이 중에서 문학예술에 관련된 논문이 18편인데, 영화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7편에 이른다. 그리고 김정일 자신도 영화예술분야에서부터 혁명을 먼저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김정일은 영

48) 영화를 중요시하는 것은 레닌이래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문화적으로 저발전되어 문맹률이 높았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영화가 가장 효과적인 선전선동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문학예술장르에 비해 영화는 획일성이 보장되고 대량 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영화에서 사용되는 기교들의 대부분은 소련에서 발전되었다. 북한의 경우 주민들이 일년에 평균 150여편의 영화를 감상한다고 한다. 북한에서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민병남, “영화예술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 「조선영화」 237 (1993, 3) 참조.

화뿐 아니라 음악이나 연극 그리고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김정일은 동일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장르로 중복적인 창작을 장려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만이 아니라 문학예술의 여러형태들에 읊기는 사업을 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통하여 문학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0)</sup>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는 주요 작품들이 영화, 가극, 소설, 연극으로 재창조되고 있다.<sup>51)</sup>

#### IV. 결 론

김정일의 문예관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예술관이나 김일성의 문예관에 비해서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형화의 대상이 항일유격대원 특히 김일성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전형화를 강조하고 이를 당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다양한 조건하에서 다채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상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추구하는 문학예술은 보다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족적 형식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민족적 형식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sup>52)</sup> 김정일은 구체적으로 민족적

49) “연극예술에 대하여,” p. 61.

50) “불후의 고전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정일선집」 1, p. 480.

51) 「피바다」는 1969년에 영화로, 1971년에 혁명가극으로, 1974년에는 소설로 재창작되었고 「자위단의 운명」은 1970년에 영화로, 1974년에 가극으로, 1973년에 소설로 재창작되었다. 김문환, “북한연극의 특징: 체제적 접근,” 권영민 외,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p. 336.

형식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작품을 창작할 것을 요구한다. 김정일이 추구하는 민족형식이 과연 한국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겠으나 김정일이 주도한 북한의 문학예술은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나름대로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일의 문예관은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현실적 조건을 강조하는 것은 모택동의 문예관에서도 드러나지만,<sup>52)</sup> 김정일은 북한체제가 처한 내외적 환경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도 문예관을 변화시켰다고 보여진다.

넷째, 김일성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김정일도 집체적인 창작을 중요시 여기며, 대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김정일이 주도하였다고 하는 「불멸의 역사」, 「조국의 별」, 「민족과 운명」 등의 작품은 모두 10부작 이상이다. 이와 같은 다부작 내지는 대작들은 동일 주제에 대한 반복학습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집체적 창작은 문학예술작품에 일반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대중들이 문학예술작품들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가 냉전적 사고에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기존의 북한의 문학예술 및 문화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도 북한 문학예술의 정치적 피종속성을 강조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문학예술과 사회와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문학예술이 정치에 좌우된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체제유지에 필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일이 문학예술의 획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종자론에서 잘 나타나는 유일적인 사상성의 문제는 문학예술이 추구하여야 할 오락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할

52) 陳繼法, 叢成義 역, 「사회주의 예술론」 (서울: 일월서각, 1979), p. 141.

53) 모택동, “연안문예강화,” 이동연 역, 「연안문예강화 外」 (서울: 두레, 1989), pp. 28~29.

경우 비공식적인 문학예술활동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학예술인의 창조적 역량이 지극히 제한되어 전반적인 문학예술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결합하는 작품들을 강조하거나 비교적 대중성이 있는 「홍길동」, 「임궏정」 등의 전래의 문화작품들을 1980년대 후반부터 제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일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문학예술을 생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비교적 수월하게 수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서 집체적 창작 등의 형식적 특징은 현대 자본주의 문화에서 제기되는 문화의 일방적 수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형태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김정일의 문예관은 사회주의체제를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김정일이 주도하는 문학예술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남북한간의 통합문화의 성격과 이의 달성방법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빈 면

#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崔壽永\*

##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합영법 제정배경과<br>내용 | 설치                 |
| II. 합영사업의 전개             | IV. 외자유치관련 법규의 정비  |
| III.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 V. 외자유치의 성과와 문제점   |
|                          | VI. 맺음말 : 외자유치의 전망 |

## I. 머리말 : 합영법 제정배경과 내용

북한경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3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부진은 북한이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따라 생산재 생산부문의 생산에 치중함으로써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1960년대에 들어와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줄어들고, 이때부터 이미 북한경제는 외연적 성장에 의한 생산성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제1차 7개년계획(1961~70)을 3

\* 民族統一研究院 責任研究員



년간 연장하였으나 실패한 북한은 국내자원의 대중동원 한계를 극복하고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선진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6개년계획(1971~76)기간 동안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과의 무역확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대적인 기계, 설비 등 자본재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외채누적과 대외신용의 상실을 가져다 주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했던 북한으로서는 제1차 석유위기에 따른 주력수출상품의 국제가격 하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수출부진으로 인한 외화부족으로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 선진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금은 물론 이자지불까지 연체하게 된 북한은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신규차관 도입이 어렵게 되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도 부진을 면할 수 없었다.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대외 교역의 대서방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서구 선진국과의 교섭을 다시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84)의 마지막 해인 1984년 9월 합영법을 공포하였다. 경제성장 둔화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현대화가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구로부터의 차관도입을 대신할 새로운 외자유치의 방법인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은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해 이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 표명하였다. 그러나 1979년 8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등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의 성과에 북한이 고무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합영법 발표 직전인 1984년 8월에는 정무원총리 강성산이 경제각료와 함께 상해의 생산시설과 건설현장을 시찰한 바 있으며, 1983년 4월과 7월 사이에는 50여명의 고위급 인사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경제특

구를 방문하는 등 중국의 실용주의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고조되어 왔다.<sup>1)</sup>

북한의 합영법이 갖는 의의는 개인과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경제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민간사업주체를 인정하고 합작투자기업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간접세의 성격을 띄는 거래수입금을 부과하고 있던 북한에서 합작투자기업과 그 종사자에게 직접세인 소득세부과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sup>2)</sup>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영법 제5조)함으로써 해외동포, 특히 재일조선인 자금의 유치를 도모하여 투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 것도 합영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영법에 따르면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상 합영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합영법(시행세칙 포함)의 내용에는 합영회사 설립시 계약에서 승인까지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고, 북한의 출자가 예상되는 토지·건물 등 화폐외의 출자목적물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확실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합영회사 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이 전원일치제로 되어 있어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북한산 원자재의 구입을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종업원의 고용이나 해고 등에 있어서의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합영법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을 알 수 없어 이 제도의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북한은 합영법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1985년 5월까지의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과 동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과 동법세칙을 발표하였다. 이들 법규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많아 법 적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합영관련법에 비해 외

1) 한국무역협회, 「北韓의 合作投資制度 - 北韓의 合營法規 -」 (서울: 한국무역협회, 1991), pp. 5~6.

2) 위의 책, p. 8.

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세제상 대체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합영회사의 법인소득세가 북한은 순소득의 25%이지만 중국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율도 북한은 최고 30%이나 중국은 최고 45%로 북한에 비해 높다.<sup>3)</sup>

합영법 시행 후 북한이 추진한 외자유치 노력의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 보다도 1991년 말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외자유치관련 법규를 1992년 10월과 199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정비하는 등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을 새롭게 추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글의 2장은 북한 합영사업의 전개를 다루고 있으며, 3장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를, 4장은 외자유치관련 법규의 정비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1984년 합영법 제정 이래 북한이 추진해 온 외자유치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북한의 외자유치를 전망해 본다.

## II. 합영사업의 전개

합영법이 공포된 후 체결된 최초의 합영계약은 평양에 세워질 양각도호텔에 관한 것이며, 이 계약은 1984년 10월 8일 프랑스의 꼬뵘농베나르사(The Companon Bernard Construction Company)와 북한의 조선제일설비수출입회사 사이에 이루어졌다. 양측이 반반씩 투자하여 2년 7개월 후에 완성될 예정이었던 46층 건물인 양각도호텔의 건설은<sup>4)</sup> 프랑스측이 기술자를 철수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한다.<sup>5)</sup> 경영권에 관한 양측의 분쟁과 북한측의 계약 불이행이 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 67.

4) *Vantage Point*, vol. XI, no. 10 (October 1988), p. 22.

5)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 在日朝鮮人との合弁事業を

중단의 이유로 알려져 있다.

1985년 2월 18일 문을 연 락원백화점은 조총련 기업인 조일상사와 북한의 락원무역상사의 합영기업으로 평양에 본점과 전국에 31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락원카드까지 발행하고 있다. 락원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일본제품이며,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은 북한의 특권층이거나 외교관, 외국인 관광객(재일 조선인 방문객 포함), 외국상사 주재원들이다. 재일 조선상공인연합회의 이종태부회장과 평양시 대외봉사총국의 합영으로 5월에 문을 연 음료와 경양식을 봉사하는 창광커피숍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양을 방문하는 재일 조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비록 법시행의 초기단계라고는 하지만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영법 제정 이후의 2년 동안 북한이 유치한 합영사업의 실적은 6건에 불과하였으며,<sup>6)</sup> 그나마도 양각도호텔을 제외하고는 조총련과의 합작이 전부였다. 북한은 기대했던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합영사업에 있어서 조총련의 잠재력만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였다.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1986년 2월에 김일성은 북한을 방문한 조선상공인연합회의 대표단에게 북한과의 합영, 합작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달라는 강령적 교시(2.28 교시)를 내린 바 있다.

북한과 조총련 기업의 합영사업 전담기관인 조선국제합영총회사는 1986년 8월에 창립에 관한 조인이 있었으며 11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합영사업준비위원회와 조총련의 합영사업연구회가 각각 60만 달러의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이 회사의 기능은 회사라는 명칭과는

中心に—,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2年版—」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2), p. 134, 注 18.

6) 金道卿·申愍榮,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서울: 렉키금성經濟研究所, 1992), p. 48.

7) 북한과 조총련기업과의 합영사업을 북·조합영사업이라 이름 붙임.

달리 조총련 기업인의 북한내 투자를 유도하여 북·조합영사업을 촉진하고 기업운영을 지도하는 것이었다.<sup>7)</sup>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정치적인 중요성과 영향력은 이 회사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에 북한과 조총련 쌍방의 최고 책임자가 취임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sup>8)</sup>

1987년 초에는 합영과 관련하여 북한의 기술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주최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북한의 경공업제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은 북·조합영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해 11월에 평양에서 열린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2차 이사회에서는 24건의 합영계약과 11건의 합의서 교환이 이루어져 조총련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밝혔다.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북한은 조총련과 100여건의 합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김성환 합영공업부 부부장이 말할 정도로 북·조합영사업은 초기에 비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모란봉합영회사는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제1차 이사회의 결정 아래 설립되어 1987년 4월에 대동강구역의 제1공장이, 1988년 9월에 동대원지구의 제2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북·조합영사업의 대표적인 것이다. 동경에 있는 모란봉주식회사와 북한의 은하무역총공사와의 합영인 이 회사의 전연식사장은 조총련 중앙부의장, 합영사업연구회 회장, 조선국제합영총회사 부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한다는 합영의 본래 목적을 실현한 소수의 성공사례로서, 의류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1990년에는 북한과 조총련 양측이 각각 30만 달러의 이윤을 올림으로써 일본 섬유업체에 화제가 되었다.<sup>9)</sup>

이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1985년 11월에 제일조선상공인 50여명이 출자

8) Hy-Sang Lee, "The Economic Reforms of North Korea: The Strategy of Hidden and Assimilable Reform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Reunification: Domest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1990's, Sponsored by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Unification Board(July 12-14, 1991), p. 16;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p. 125.

9) 金道卿·申愷榮,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pp. 51~2.

한 운산광산개발합영회사가 있다. 북한은 운산광산의 금을 채굴·매각하여 대일본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재일 조선인에게도 무역대금 미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북한내에서 뿐만 아니라 조총련 기업인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일본의 광석시험기관과 프랑스의 광산개발전문회사의 조사보고에서 경제적으로 흥미가 있는 유망한 비철금속광산이라는 사전조사 결과 후 1987년 4월에 운산합영청년광산의 착공과 더불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운산광산개발에 관한 소식이 두절되고 있어 이 합영사업이 순탄하지 않음을 짐작할 뿐이다.<sup>10)</sup>

외자도입의 적극 추진을 위해 북한은 1988년 11월에 정무원 산하에 합영공업부를 신설하여 종래의 합영지도국을 대신하게 하고, 이제까지 북·조합영사업의 창구역할을 해 온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합영공업부의 일개 부서로 두었다. 합영공업부의 신설에 따른 북한의 설명은 합영부문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독립하므로 조총련 기업인의 투자는 국가의 책임하에 안정성이 더욱 확고히 보장되며 금후에 합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보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조총련 기업인은 북한과 함께 외국과도 합영할 수 있게 되어 합영사업을 보다 국제적·다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영공업부도 1990년 5월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1년 반만에 폐지되었다.

비록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설립 이래 2년 동안 북·조합영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친북한의 조총련 기업인조차도 북한에서는 기업운영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불만의 하나로서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는 이사회에 참석한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합영법시행세칙(제 28조)때문에 합영회사에 100% 출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조총련의 100% 투자를 허용하는 조치를 1988년중에 이미 취한 것 같다.

10) 운산금광(북·조합영사업으로 추진중인 운산광산인지는 확실치 않음) 매각상담을 위해 북한은 1992년 10월 이래 이스라엘과 접촉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Time*, June 7, 1993, pp. 30~1.

1989년 2월의 평양중앙방송은 북한기업의 참가없이 조총련에 의한 합병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방송함으로써 합병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북한측의 양보가 실제로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회사는 신진상사, 혜성무역상사 등 몇몇 조총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총련계 단독출자회사인 신흥합영회사로서 자전거, 오토바이, 전자계산기, 칼라TV, 비데오, 녹음기, 통신장비, 축전지 등의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완전 사유를 조건으로 재미교포 박경윤은 500만~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고려상업은행, 금강산국제개발회사, 금강산국제관광회사 등 3사를 설립하였다.<sup>11)</sup>

북한과 조총련의 합병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조총련의 파레스주식회사와 북한의 조선낙원무역상사와의 사이에 1987년 10월에 세워진 낙원금융합영회사와,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사이에 5대5의 출자로 1989년 4월에 개업한 조선합영은행이 있다.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내외결제와 용자를 제공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조총련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내외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합병은행은 사회주의 금융제도와 유리되는 일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가진 금융기관이다. 조선합영은행은 함흥에 지점을 두고 사리원, 신의주, 원산, 평성, 청진에 출장소가 있으며, 외국환에 관련한 업무는 일본의 족리(足利)은행이 대행하고 있다.<sup>12)</sup>

1989년 10월 3일에 있는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 제5차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전연식회장은 합병사업의 발전을 호소하면서 금후에는 북한의 기간산업에 합병투자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70건의 합병계약과 35건의 합의서교환이 실현되었으며 총투자액 120여억엔에 40개의 기업이 조업중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김일성의 2·28교시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평양에서 합병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유망 합병공장의 소개를 현저하게 하고, 북·조합영사업 제품의 일본 진출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합병회사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합영회사는 조총련의

11) 한국수출입은행,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案」, p. 59.

12)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pp. 123~24.

국제트레이딩과 북한의 용악산무역총회사의 합영기업으로 레아스를 생산하고 있다. 1988년 8월에 합영계약이 교환되고 1989년 7월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1991년 8월에 함흥화학합영공장의 조업식을 가졌다. 이 공장의 조업식은 일본 TV에도 소개될 정도로 현대적인 것이며, 금속공업과 전자자동화 공업의 발전과 기술이전효과가 절대적일 것이라며 북한은 이 합영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PACO라는 상표로 다양한 모델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평양피아노합영회사도 우수한 합영회사로 주목받고 있다. 제일조선인 2세들의 유한회사인 PACO와 북한의 평양악기총회사의 합영인 이 회사는 해외수출에 의욕적이며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도 마쳤다.<sup>13)</sup>

1991년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의 문수극장에서 열린 조총련합영 제품전시회의 개막식에는 북한측의 연형묵총리를 비롯하여 박성철부주석, 윤기복서기, 김달현부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와, 조총련에서는 한덕수의장, 전연식 부의장, 최일수 상공연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총 223종 2,143점의 제품이 선보인 이 전시회에 참가한 조총련 합영기업은 69사였다. 전시회를 방문한 김일성은 합영제품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하면서 합영사업을 발전시켜 위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지만 이후 북·조합영사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

### Ⅲ.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합영법 제정을 앞두고 북한의 경제각료와 실무자는 수차례 중국의 경제특구를 시찰하는 등 북한도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처럼 보였으나 합영법 제정과 함께 경제특구를 설치하지는 않았다. 경제특구는 북한의 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합영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어느 장소에서도 가능하

13) 렉키금성經濟研究所,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pp. 52~3.



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 북한의 설명이었다.<sup>14)</sup> 그러나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에 의해 나진·선봉지역의 621km<sup>2</sup>를 중국식의 경제특구인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이 합영법 제정 당시에 고려는 하였으나 설치하지 않았던 경제특구를 그 후 7년이 지나서 설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는 그 당시 북한이 경제특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그 이후 북한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합영법이 시행된 1984년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지 않은 설명으로서 북한이 내세운 이유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일 뿐, 그 실제 이유는 중국의 성공을 목격한 북한이 경제특구의 설정은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경제특구를 통해 주민이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중국을 모델로 하는 정경분리방식의 특별행정구역인 경제특구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정책이나 관리체제를 가진다.<sup>15)</sup> 중국의 경제특구내에서의 경제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장메카니즘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뿐 아니라 관리체제도 사회주의 소유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국가가 경제특구에 부여하는 자주권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특구를 설정함에 있어 이러한 특성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외자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바로 주민이 자본주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특구를 설정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재고해야 할 만큼 대내외적인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극단적인 사회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대륙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가장 어두

14)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1年版-」(東京:日本貿易振興會, 1992), 韓國開發研究院,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1991年版-」(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92), p. 118.

1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便覽」(서울: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 319.

운 면을 경험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해방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의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해방전쟁 기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갖지 못한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한 자본주의체제의 시험 자체를 체제에 대한 도전과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며, 주체사상에 의한 독자적 자력갱생 경제방식을 채택해 온 북한으로서는 경제특구를 용납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실무적인 면에서 북한이 합영법 제정당시 경제특구를 설정할 만한 경제계획의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시 된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197~84)을 6개년계획(1971~76)이 달성된 후 2년의 조정기를 거쳐 1978년에 착수하였다. 1980년부터는 1980년대 말까지 달성해야 할 10대전망목표를 강조하면서 제2차 7개년계획의 목표달성에 대한 언급이 감소하였고, 이 계획이 종료되고 나서도 목표달성에 관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다. 제3차 7개년계획(1987~93) 또한 1985년과 1986년의 조정기를 필요로 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경제계획을 제때에 착수할 수도 없고 계획 도중에 새로운 목표를 강조하는 등 경제계획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존의 경제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인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결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치유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설치를 제약해 온 위의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거나 다른 대안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즉 경제특구의 설정이란 합영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북한이 그 동안 자본주의에 주민들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대내외적인 큰 변화를 경험했으며, 경제계획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 내외에서 일어난 상황의 변화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할 만큼 제약요인들을 완화시켜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북한의 국제적인 경제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특히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

욱 가중시켰다. 중국과 같은 경제특구가 없었다는 것이 합영사업이 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sup>16)</sup> 북한이 경제특구를 서두르지 않은 데는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구소련과의 정치적인 밀월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1984~88년 기간 동안 구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은 4배 이상 이례적으로 급팽창하였으며, 수입의 증가는 서구 선진국과의 합영부진에서 오는 자본과 기술도입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특구 설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관을 낳게 하였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대변혁으로 북한은 정치·이념적인 유대만으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구소련과의 밀월에서 보장된 경제협력(수입)의 감소를 맛보게 되었다. 구소련과의 경제협약의 감소를 메꾸고 합영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경제특구의 설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식 경제특구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0년 10월 연형묵총리가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천, 천진, 광주 등을 시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중국·러시아·북한 3국의 국경하천인 두만강지역개발에 대한 구상은 1990년 7월 중국 길림성의 장춘(長春)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대표단의 김상기단장은 3국이 접하고 있는 두만강지역을 공동개발하여 공동사용한다는 중국측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두만강지역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sup>17)</sup>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1991년 3월 유엔 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두만강지역개발을 1992년부터 향후 5년간 실시할 동북아지역협력사업의 하나로써 대기오염과 에너지사용, 온대지역 식량증산과 함께 선정함으로써 가시화 되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북한의 공식 표명은 1991년 7월 몽고의 울란

16) 韓國開發研究院,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p. 118.

17) 위의 책, p. 126.

바토르에서 열린 UNDP회의에서 처음으로 있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나진·선봉을 잇는 140km<sup>2</sup> 지역에 경제특구 설치구상을 발표하면서 UNDP가 선정한 동북아지역개발사업의 하나인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독자 개발의 의사를 비쳤다. 뒤이어 8월 장춘에서 열린 「제2차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선봉지구를 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여 청진, 나진, 선봉 등의 항구를 통해 인근 동북아국가(지역)의 물자를 수송한다는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10월에는 김일성이 중국 제남일대의 공업지구를 시찰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인 관심이 쏠린 두만강지역개발구상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며, 관련 국제회의에서 두만강유역의 일부 지역을 경제특구화하여 독자 개발할 뜻을 비치면서 개발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이 합영법 제정당시 경제특구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의 하나로서 그 당시 북한의 경제계획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들고 있다. 비록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북한 조치가 경제계획 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 구상과 연계하여 북한이 경제특구 설정을 위한 노력과 준비작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탄생할 수 있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데 있어 북한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주민이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오염되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느냐는 데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외부와의 접촉이 필수적인 경제특구내의 주민이 자본주의에 오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예기치 않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특구의 설치를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한 북한으로서 두만강유역에 위치한 함경도 최북단의 오지인 나진·선봉지역을 택함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을 겨냥해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한데 이어 나진·선봉 개발구상을 일본을 포함한 서방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UNDP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에서 유

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1992년 5월 동북아경제포럼을 평양으로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구상 및 독자개발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조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8월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동북아경제포럼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각국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였을 뿐이다.<sup>18)</sup>

나진·선봉계획은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과 추진의 시기를 같이하고 있어 북한이 계획추진을 연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두만강개발계획에서 북한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나진·선봉이 두만강계획의 중심으로 선전되도록 함으로써 개발성과를 극대화하고 개발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인 것 같다. 1993년 중반이 지나서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된 후에야 나진·선봉계획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의 이유를 명시하면서 경제개방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정은 북한체제에 자본주의 시장요소(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

#### IV. 외자유치관련 법규의 정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으로 1992년 10월 5일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채택하고, 곧 이어 1993년 1월 31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합영법 발표 이후 8년만에 북한의 외자유치와 관련한 법적인 틀은

18)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렉키금성經濟研究所, 「南北韓 經濟協力推進現況과 展望」, PP. 97~105;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61~87 참조.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번의 법제정으로 합영회사소득세법과 동법세칙, 외국인소득세법과 동법세칙은 북한측의 존폐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외자유치관련 법규의 제정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외경제개방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북한의 정책 전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기존의 외자유치관련법에서 미비했던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대북투자 회피현상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를 장려한다는 원칙(외국인투자법 제1조)을 채택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제정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여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자유치관련 법규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외국인이 북한내에 투자하여 설립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3가지 형태가 있음을 규정(외국인기업법 제2조)하고 있다.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나 운영은 북한측에서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며, 합영기업은 양측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고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며, 외국인기업은 투자와 경영이 전적으로 외국투자가에 있는 기업이다. 이번에 제정된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은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을,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은 합영기업의 창설·운영방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제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비록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이지만 100% 외국인의 투자에 의한 외국인기업의 허용(외국인투자법 제2조 및 제3조)과, 이들 기업에 대해 세계상의 특혜를 부여(수출입물자에 대한 무관세: 외국인투자법 제9조 1항, 소득세 감면 및 낮은 소득세율 적용: 동법 제9조 2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외

국인투자법 제10조)하고, 외국인기업에게 최고 50년까지 토지임대를 허용(외국인투자법 제15조)하고 있는 점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와 관련한 투자재산의 국유화가 금지(외국인투자법 제19조)되었으며, 이윤의 국외송금이 허용(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되고, 경영상의 비밀이 보장(외국인투자법 제21조)되었다. 투자 대상자의 범위를 종래의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합영법 제5조)에서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외국인투자법 제5조, 합작법 제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7조)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남한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투자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한편 이번의 법제정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서 투자에 대한 상황과 이윤분배에 있어서의 합작제품 기본원칙(합작법 제13조)을 들 수 있다. 북한 근로자의 우선 사용을 요구하는 종업원 채용의 배타성(외국인투자법 제16조, 외국인기업법 제20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1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국인기업이 보험을 들 경우 반드시 북한의 보험에 가입(외국인기업법 제23조)해야 한다는 규정은 외국인기업에게 사실상 이중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요구(외국인기업법 제15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수입에 대한 사전 승인(합작법 제12조)으로 합작기업의 물자조달이 보장되지 않고,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상에 따라 처벌(외국인기업법 제29조)한다는 규정은 주체가 모호하며 법의 적용이나 해석에 북한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은 조항이다. 분쟁발생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에 의존해야 하는 조항(합영법 제26조, 외국인기업법 제31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3조, 외국인투자법 제22조, 합작법 제26조)과 (등록)자본을 늘일 수는 있으나 줄일 수 없는 조항(합영법 제9조, 외국인기업법 제26조)은 합영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외자유치법 상호간에 내용상 모순이 있거나 법규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시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모든 조건들을 명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 떨어진 기업”(외국인기업법 제3조) 및 “인민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외국인기업법 제5조) 등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한편 투자 대상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합영법과 새로 제정된 외국인기업법은 서로 상충하고 있는데, 합영법에서는 배제되었던 남한의 기업과 개인도 외국인기업법에서는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합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이 불명확한 신설 법조항들도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이번의 법제정을 통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규가 어느 정도 정비 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규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법규외에도 섭외(涉外)경제계약법, 특허법, 상표법, 외국인투자 장려규정, 기타 조세에 관한 규정 등의 국가차원의 법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외에도 지방정부차원의 특별법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sup>19)</sup> 북한도 이와 같은 필요한 법령의 추가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은 외국투자가들에게 적용될 세제상의 법규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중국을 상당히 의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독자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북한으로서 중국과의 외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게 세제상 중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 법은 중국의 관련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는 달리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할 각종 세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특징이다.<sup>20)</sup> 다음 <표>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들 중에서 중국 및 베트남과 비교가 가능한 내용들을 대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대체로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 감면에 있어서도 북한의 경우 장려부문(자유경제무역지대내 생산부문도 포함)에서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19) 統一院 教育弘報局, 「통일속보」, 92-11 (1992. 11. 28), p. 23.

20)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제111호 (1993. 2. 7-2. 13), p. 3.



이윤 발생 후 3년간 면세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내에서 감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이익 발생 후 2년간 면세와 그 다음 3년간 50%까지 감세하고 있다. 재투자시의 소득세환급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윤을 재투자하여 5년 이상 기업경영을 할 경우 소득세납부액의 50%까지 환급하고 있으나, 중국은 40%만 환급하고 있다.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투자여건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표〉 북한, 중국,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관련 세제비교

	북한		중국		베트남	
	일반지역	자유경제	일반지역	경제특구	일반지역	수출가공구
법인 소득세	25% 10%(장려)	14% 10%(장려)	30% 15%(장려)	15%	21~25%(일반) 15~20%(우대) 10~14%(특별)	10%(제조) 15%(봉사)
소득세 감면	○ (장려)(장려,생산) 10년이상 기업운영 이윤 발생년도부터 3년간 면세, 그다음 2년간 50% 범위내 감면 ○ (봉사)부문에서 10년이상 기업운영 이윤 발생년도부터 1년간 면세, 그다음 2년간 50% 범위내 감면		○ (제조업)부문에서 10년이상 기업운영 이윤 발생년도부터 2년간 면세,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 (봉사) 500만 \$ + 10년이상 1년면세, 다음 2년 50% 감면		○ (우대) 이윤발생 년도부터 2년 면세, 다음 2년간 50% 감면 ○ (제조업) 4년 면세 ○ (봉사) 2년 면세	
기타 소득	20%	10%	20%	10%		
소득세 환급	○ 이윤을 재투자하여 5년 이상 기업경영시 납부소득액의 50% 환급 ○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시 100% 환급		○ 이윤을 재투자하여 5년 이상 기업경영시 납부소득액의 40% 환급 ○ 수출기업, 선진기술기업에 재투자시 100% 환급			

자료 : 産業研究院, 「北方地域國家總覽」(서울: 産業研究院, 1991), pp. 98~100.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中國便覽」(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p. 322~2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베트남 便覽」(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p. 222, 234~35. 247

## V. 외자유치의 성과와 문제점

북한이 합영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외자유치의 성과는 합영사업의 유치 실적과 규모라는 양적인 면과 더불어 합영의 상대와 부문 등의 질적인 면도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합영사업의 현황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제까지 보도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합영사업은 양적·질적으로 동시에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질적인 면에서의 부진이란 북한의 합영사업이 상대적으로 서서비스부문에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과 서구 선진국과의 합영사업이 불과 몇건에 불과하여 북한이 합영을 추진함에 있어 원래 목적하였던 서구의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른다.

가동중인 합영기업의 숫자에 관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도는 1991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조총련합영제품전시회에 북한과 조총련의 합영기업 69사가 출품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 9월 16일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촉진위원회 서기장 겸 합영공업총국 국장인 김창길은 재미한인연합회의 북한산업시찰단에게 북한내에는 100여개의 합영회사가 설립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김국장은 신화사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숫자를 밝히고 있다.<sup>21)</sup> 한편 제일조선인 신문에 따르면 1991년 12월 초 현재 북한내에서 가동중이거나 계약체결된 합영건수는 140여건으로 이중 제일조선인과의 합영사업은 계약된 것이 106건이며 62건이 조업중에 있다고 한다.<sup>22)</sup>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합영법 시행 이후 1992년 7월까지 외국기업과 140여건의 북한내 합영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조업중인 66건 중에는 일본(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소련 및 중국과 각각 4건, 프랑스와 스웨덴과도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3)</sup>

21) 韓國開發研究院, 「北韓의 經濟와 貿易展望」, p. 112.

22)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弁事業の展開について,” p. 105.

또한 계약체결된 북한내 합작기업 140여건 중 조총련 동포가 116건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외신은 1992년 3월 현재 북한내에는 100여개의 합영회사가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은 조총련과의 합영이라고 전하고 있다.<sup>24)</sup>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조총련 기업을 포함한 외국과 합영사업을 계약한 것은 14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설립된 것은 100여개 정도이며 그나마도 가동중에 있는 것은 70여건에 불과한 것 같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를 위하여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한 바 있으며, 개방의 초기년도인 1988년에 23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이래 해마다 유치실적이 증가하여 1992년까지 모두 470건에 41억 6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sup>25)</sup>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한 것은 사실이나 베트남의 외자유치 실적을 놓고 볼 때 북한의 합영사업을 통한 외자유치 실적은 건수에서나 금액면에서나 매우 부진하였다.<sup>26)</sup>

한가지 특이한 것은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은 계약이 11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조업중인 것은 1991년 4월의 평양 전시회에 출품한 69사에서 1992년 7월에는 56사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1986년에 설립된 청량음료 생산업체인 창광합영청량음료점의 3개사는 기부금의 형식을 빌어 북한당국에 몰수되었으며, 1989년에 설립되어 TV부속품 등을 생산해 오던 전유합영회사 등의 6개사는 원자재난과 전력사정의 악화로 1991년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7)</sup> 분명한 사실은 북한 합영사업의 주축을 이루어 온 북·조합영사업은

23) 「한겨레신문」, 1992. 10. 3.

24) Mark Clifford, "Opening up the Cla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6, 1992, p. 60.

25) 權栗,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現況과 展望," 「지역경제」, 제2권 제5호 (1993. 5), p. 73.

26) 북한의 합영사업은 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이 대부분인 점과 조총련이 투자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합영사업을 통한 외자유치의 총액은 2억 달러를 넘기는 어려울 것임.

27) 렉키금성經濟研究所,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p. 50.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였으나 기존의 사업이 조업중단 등으로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1991년 이래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조합형사업이 초기에는 조국(북한)에 대한 조총련 동포의 애국심과 충성을 자극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조총련 기업이 북한내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내에 있는 가족, 친지들의 지위 향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합형사업이라기 보다는 현금이라고 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조총련 기업인마저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 같으며, 더 이상의 투자보다는 북한내 가족들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투자에서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총련 동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합형사업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북한에서 성공한 사례로 여겨지는 모란봉합영회사의 성공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이 기업이 북한의 관료조직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모란봉합영회사의 사장인 전연식은 조총련의 부의장일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북한의 관료조직에서 발언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란봉합영회사는 북한당국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동자들도 거의 복송교포를 고용하는 등 일본식의 경영이 가능했다. 또 다른 성공 사례인 평양피아노합영회사의 경우도 일본내 수입판매원의 사장이 모란봉주식회사의 핵심 임원으로 모란봉합영회사와 깊은 관계에 있다.<sup>28)</sup>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북한이 추진해 온 합형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1차적인 원인은 역시 북한의 투자환경이 중국 등과 비교해 볼 때도 그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북한은 에너지 및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도로, 철도,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좁은 내수시장과 북한 경제관리체제의 경직성 등도 북한의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투자자들에게는 매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은 실추된 대외신용을

28) 삼성경제연구소,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p. 96~7.

개선해 나갔어야 했으나,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대외적인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개선에 크게 힘쓰지 않았다.

북한이 서구자본의 유치라는 합병법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조총련 기업과의 합병에만 열중하게 된 것은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다. 서구 선진국 기업과의 합병사업은 북한체제내에 시장경제가 유입됨을 의미하나, 조총련 기업을 합병의 상대로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심리적인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도 덜 비판적이고 비밀을 담보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합병기업은 조총련 동포들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합병기업소가 시장경제제도의 침투경로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보도는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뒷받침하고 있다.<sup>29)</sup>

북한이 이제까지 외국과 추진해 온 합병사업을 북·조합영사업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북한의 주된 합병상대국이 일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일본인(기업)은 조총련 기업의 합병사업에 부분적인 자본 참여와 기술을 제공했을 뿐 북한내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다. 북·조합영사업의 문제는 조총련 기업이 갖는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일본내에서 주로 제3차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함에 있어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비록 북·조합영사업의 성격이 서서비스에서 경공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에까지 확산되고 합병제품의 일본 수출이 시작된 것은 다소 고무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북한의 생필품에 관련된 양의 확보수준에 머무르고 있다.<sup>30)</sup>

서구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과감한 경제개방정책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외자유치가 부진한 데는 투자의 수익성 보장이 불확실하고 투자여건이 나쁘며 제반 법규 등이 미비(법규상의 미비는 2차 외자관련법규의 정비로 어느 정도 해소됨)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결국은 북한 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해 실질

29) 「内外通信」, “실적 부진한 北韓의 對外合作 사업,” 内外通信綜合版(46), p. 229.

30) 宮塚利雄, “北朝鮮における合併事業の展開について,” p. 130.

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은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경제적 개방이 정치적인 개방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 Ⅵ. 맺음말 : 외자유치의 전망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이래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경제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2년 11월 일본에서 두만강지역개발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가진 이래 해외에서 모두 여섯 차례의 투자설명회를 가졌다.<sup>31)</sup>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서구에서 열린 이들 투자설명회에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과 개발 및 참가 유망분야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일본의 사쿠라그룹 경제시찰단에게 북한의 경안사를 비롯한 3개 피복공장을 공개하였으며, 5월에는 네델란드 무역진흥기관 산하업체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1993년 3월 태국에서 열린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서 IBRD회원자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IBR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자금 지원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외자유치관련 법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법의 추가적 시행세칙인 은행·세무법, 공업관리법, 노동관리법 등 경제개방 후속법안의 마무리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 밖에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거주·체류에 관한 법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2)</sup>

북한의 이같은 서구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접촉은 1992년 7월 김달현 부총리의 서울 방문을 통한 남·북합영사업의 토의와 10월 대우그룹 관계자 및 관·민 합동으로 구성된 남포경공업단지 조사단의 방북으로 이

31) 「中央日報」, 1993. 6. 19.

32) 「中央日報」, 1993. 6. 19.

어지는 남·북경협 가능성에 흐리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합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총련 기업인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제에 덜 위협적인 서구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개방은 추진하되 남·북경협보다는 체제안정과 외자유치를 동시에 보장할지도 모를 일본·서구와의 제한적 개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면적인 체제개혁을 원하지도 않았으며 할 수도 없었다. 북한이 서구 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어떠한 국가도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합영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도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들이 정비되고 기본적인 계획만 제시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자유치의 걸림이 되어 온 서구 선진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투자환경이 좋아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가 중국 등과 비교해 볼 때 개선되었을 뿐이다.

북한이 이제까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조총련 기업인과의 합영사업을 통한 외자유치에서 벗어나 일본·서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비록 제한된 형태이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중국식의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때늦은 감이 있으나 분명히 북한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의 경제특구와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가 동북아를 잇는 지리적인 이점 외에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만한 이점이 있는지, 북한이 이러한 경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1993년 6월 11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유보함으로써 다소간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완화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북한이 바라는 외자유

치의 상대국인 서구 선진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러한 관계에서 선회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나아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북·미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실마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협력증진으로 발전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결국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합영사업을 추진하고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무역과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일본을 합작파트너로 우선 고려할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며, 북한은 북·일국교정상화를 통한 배상금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조만간 북·일수교는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과 일본의 경제교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본, 경영방법 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의 교두보로 자리 잡을지 모르는 두만강지역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다.

비록 지금 북한이 우리(남한)를 경제협력 파트너로 보다는 체제유지에 위협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우리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 북한이 우리를 최우선 경험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북경협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때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은 바뀌게 되고, 이러한 바탕하에서 북한에 대한 서구 선진국의 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정권안보와 체제유지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경제개방과 개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당면한 경제난 해결은 물론 외자유치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빈 면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諸 成 鎔\*

##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의 內容<br>및 問題點 分析 |
| II.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制定의<br>背景 | IV. 綜合的 評價와 展望                  |

## I. 序 論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決定」으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企業法」 등 3개 法을 제정·공표하고, 동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 제148호로 合營法 施行細則을 개정한 데 이어 다시 1993년 1월 31일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3개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法令整備를 가속화시키고 있다.<sup>1)</sup>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1) 北韓 官營 中央通信의 1992년 10월 6일 보도;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자 참조.

이처럼 북한이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을 비롯한 수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새로이 제정한 것은 유엔開發計劃(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이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TRADP)에 부응하여 북한이 1991년 12월 28일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합영법만으로는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法制的인 次元에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法令整備過程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에 제정된 3개 법령은 지난해 10월 5일에 제정된 外國人投資法の 後續措置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外國人投資法을 基本法으로 하여, 關聯 附屬法으로서 合營法(1984. 9. 8 제정), 合營會社所得稅法, 外國人所得稅法(1985. 3. 7 제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8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合營法施行細則(1985. 3. 20 제정, 1992. 10. 16 개정), 合營會社所得稅法 施行細則(1985. 5. 17 제정), 外國人所得稅法 施行細則(1985. 5. 17 제정) 등 3개의 細則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이로써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은 合營法 등 既制定되어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신설된 법령을 포함,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法制度的 基盤이 일단 갖추어졌으나, 앞으로 다시 근간에 제정된 법들의 後續措置로서 각각의 세칙 제정이 뒤따를 것이며, 토지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南北交流協力, 특히 物資交易이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 결정,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북한의 核武器擴散防止條約(통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脫退 등으로 인한 南北關係 경색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면 물자교역량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對北投資 등 南北間 協力事業의 경우 북한의 전반적

2) 「서울신문」 1993년 2월 12일자.

사업수준, 내수시장의 성숙 정도, 사회간접자본 등 북한내부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북한기업과의 合營, 合作 등 對北 直接投資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북한이 다른 海外投資地域에 비해 거리가 가깝고 일본이나 대만기업과의 競爭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이며 南北韓 企業人間 意思疏通에도 별 지장이 없음을 감안할 때, 對北 投資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本稿에서는 먼저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의 제정배경과 이들 법령의 內容과 問題點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관하여 전망해 보기로 한다.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서 本稿에서는 1992년과 1993년에 새로이 제정된 6개 법령과 기존의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만을 주로 검토하기로 한다.

## II.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制定의 背景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經濟支援과 住民消費 抑制를 통한 內部資源 動員의 極大化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시작된 제1차 7개년계획은 中·蘇 理念紛爭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국가 지원 감소로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실패하였다.<sup>3)</sup>

1969년 중·소간 국경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동안 이들 양국에 대하여 等距離外交를 추진하던 북한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원조가 감소하게 되자, 중·소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경제개발 6개년계획(1971~76)

3)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統一速報」, 제 92-11호 (서울: 통일원, 1992), p. 3.

에서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제1차 石油波動(oil shock) 및 북한의 주력수출상품(연, 아연 등 1차상품)의 국제가격의急落으로 外債累増만을 초래한 채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처럼 社會主義國家 經濟支援 減少 속에서 外債償還能力 喪失로 인한 서방차관의 도입 부진, 설비관리 운용능력 부족 등으로 경제개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외채상환의 부담없이 서방의 자본·기술을 유치하는 방도로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가 외국 또는 해외동포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합영(통상의 합작투자에 해당함)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의「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년 제정)을 모델로 한「合營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85년 3월 合營法施行細則,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外國人所得稅法을, 그리고 1985년 5월 合營會社所得稅法 細則 및 外國人所得稅法 細則을 제정하였다. 1986년 8월에는「朝鮮國際合營總會社」를 설립하고, 1988년 12월 政務院內에 合營工業部를 新設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制度 마련에도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서방국가 및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89년에는 완전한 私有合營會社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sup>4)</sup>

그러나 합영법 등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政治·社會的 閉鎖性, 社會間接資本施設의 落後, 內需市場의 狹小, 外資誘致關聯 法·制度 未備 등으로 합영유치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북한의 체제개혁이 병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投資環境은 서방기업가들로부터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일교포 회사와의 소액규모의 합영

4)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서울: 三星經濟研究所, 1992), pp. 34~35; 崔周煥, 「北韓經濟論」(서울: 大旺社, 1992), p. 202; 그러나 合營工業部는 1990년 10월 폐지되었다. 합영법은 對外經濟事業部가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로 합영사업은 合營工業總局이 담당하고 있다.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p. 244; 동용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 법규 정비의 배경 및 의미,” 「世界經濟」(三星經濟研究所), 제41호(1992. 10. 25), p. 48; 한편 대외경제사업부는 최근 폐지되고 대외경제위원회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을 제외하면 合營實績은 미미한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sup>5)</sup> 즉 북한의 信用度<sup>6)</sup> 등 經濟的 投資環境이 열악한 데다가 外國人投資制度마저 미비하였기 때문에<sup>7)</sup> 1991년말 현재 朝總聯系 在日 商工人들이 주류(68건)를 이루는 100여건의 합영계약만이 체결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1억 5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다.<sup>8)</sup>

1989년 이후 동구 및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 해체, 특히 대외무역의 50% 이상을 의존해 왔던 對蘇經濟關係의 崩壞로 인해 주요 해외시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무역규모도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었다. 1991년도 무역총액은 27.2억달러로 전년비 57% 감소되었으며, 경제성장율은 -5.2%로 1990년도(-3.7%)보다 더욱 침체되었다.<sup>9)</sup>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국제적 경제고립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1991년부터 대외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를 통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自由經濟貿易地帶 設置 등 제한된 경제개방을 검토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 7월 중국 長春에서 열린 제1차 「東北亞經濟技術發展會議」(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라는 이름의 民間 國際學術會議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고, 1991년 7월부터 유엔開發

5) 諸成鎬, “北韓 外國人投資法 - 5가지 문제점: 羅津·先鋒地區 開發을 중심으로,” 「自由公論」, 통권 제311호 (1993. 2.), p. 188.

6)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西方圈에 대한 對外債務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對外信用도가 극히 낮으며, 최근 국제은행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이라도 國際的 信用度는 最下位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은 調查對象 총 113개 국가중 우간다, 수단 다음으로 對外信用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 (March, 1992), p. 120 참조.

7) 中國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오랜기간에 걸쳐 수많은 法令·條例를 제정·실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반면, 북한의 관련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영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 소득세법」 및 각각 이들의 세칙을 포함 모두 6개에 불과하였다.

8)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제95호 ('92. 10. 18~10. 24), p. 8;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4.

9) 統一院, 「'92 北韓概要」(서울: 統一院, 1992), pp. 224~230 참조.

計劃이 관여하기 시작한 이른바 「豆滿江地域開發計劃」構想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10)</sup>

북한은 동북부 지방에 최고·최대의 부동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충하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항만을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두만강 인접지역에 조선산업,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을 유치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政務院 決定 제74호로 우수한 자연적 조건을 가진 항만인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는 등 對外經濟開放措置를 단행하였다.<sup>11)</sup>

그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기술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로써 합병·합작하는 동북아시아의 기업들에게 이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는 한편, 투자우대조치 등 여러가지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특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에 이어 法制度的인 投資與件 改善을 통해 남한 및 서방

10)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관해서는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 開發 提案 및 法制度 中心-」, 統一情勢分析 92-07(서울: 民族統 一研究院, 1992) 참조.

11) 함북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는 北韓 「中央通信」의 1991년 12월 30일 보도. 「內外通信」, 제7641호 (서울: 內外通信社, 1991. 12. 31) 참조;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제적 동기 외에도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권에서의 개혁과 개방, 그로 인한 탈이념과 탈냉전 시대의 도래,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의 대변혁 등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일련의 대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세계적인 대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제우선의 현실주의 등장 등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가 대두됨을 목격하면서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에 순응해야만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이 체제의 존립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체제유지수단의 일환으로서 대외적 경제개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대외적 개방의 표현으로서 북한은 개방의 물결이 유입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 奧地를 선택하였다. 그것이 북한의 동북부지역, 즉 나진·선봉지역이다. 현재는 나진·선봉지역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되어 있으나, 앞으로 해주, 남포, 신의주 등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19.

제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촉진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등 3개의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동년 10월 16일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른 後續措置로서 다시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3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sup>12)</sup>

### Ⅲ.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의 內容 및 問題點 分析

#### 1. 外國人投資法

##### 가. 內容

外國人投資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基本法 내지 一般法의 성격을 갖는다.<sup>13)</sup> 合營法(1984년 제정)과 合作法, 外國人企業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설

12) 諸成鎬, “北韓 外國人投資法 - 5가지 문제점 : 羅津·先鋒地區 開發을 중심으로,” pp. 184~188 ; 이 외에도 북한 外資誘致關聯 法令의 制定背景에 대해서는 吳吉南,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北韓」, 통권 제252호 (1992년 12월), pp. 22~31 ; 金淳培, “외국인투자법령의 제정,” 「統一」, 통권 제135호 (1992년 12월), pp. 60~62 참조.

13)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주간관 제818호 (서울: 內外通信社, 1992. 10. 22), p. A1 ; 外國人投資法 제1조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의 제정목적은 기술하는 대신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합영법 제1조와 유사하며, 동 규정으로부터 立法目的을 間接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립·운영·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는 下位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外國人投資法이 新法으로서 優先적으로 適用되는 效果를 갖는다.<sup>14)</sup>

이 法上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함은 공화국영역안에 설립된 합작기업, 합병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合作企業은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를 상환하거나 또는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이다. 이에 비해 合營企業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利潤을 分配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이다. 그리고 外國人企業은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이다(제2조).<sup>15)</sup>

여기에서 북한은 과거 외국인투자형태를 합병에 국한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의 대북투자 형태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형태를 合營(equity joint venture), 合作(contractual joint venture)와 外國人企業(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병은 共同投資·共同經營 方式으로 이익배분과 손실부담은 持分에 따르고, 합작은 共同投資·北韓單獨經營 方式으로 利益配分은 계약에 따르고 損失은 북한이 부담하는 형태이다.<sup>16)</sup> 外國人企業은 외국의 單獨投資·單獨經營 方式으로 利益과 損失負擔

14) 諸成鎬,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26권 2호(1992), p. 199; 이하 外國人投資法을 비롯한 外資誘致關聯 法令의 내용은 統一院 敎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pp. 1~24; 김정환,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法 分析,” 「北方通商情報」(대한무역진흥공사), 통권 제85호(1992년 11월), pp. 1~9 참조.

15) 合作企業과 外國人企業의 定義는 각각 합작법 제2조와 외국인기업법 제2조에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16) 北韓式 合作概念은 북한단독경영을 전제로 하는데 비해, 中國式 合作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經營 및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非常設的인 共同協議機構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北韓式 合作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契約에 따른 利益을 分配받는 대신, 투자자측의 契約不履行에 따른 損失을 제외하고는 합작기업의 經營失敗에 따른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다.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 최근 6개 外國人 投資關聯法 制定을 中心으로 -,” 「主要國際問題分析」(外交安保研究院, 1993. 4. 28), p. 15.

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기업이다.

여기서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 全地域에 설립할 수 있으나 外國人企業은 自由經濟貿易地帶 안에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다(제3조). 중국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지역에 대한 制限規定이 없는데, 북한이 이처럼 외국인기업의 설립을 특정지역에 국한시킨 것은 經濟開放이 가져올 否定的 影響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외국의 기관·회사·기업체·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물론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투자가 가능하다(제5조).<sup>17)</sup>

投資對象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이며(제6조),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특히 장려된다(제7조). 이 장려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所得稅를 비롯한 각종 稅金의 減免, 有利한 土地使用條件의 保障, 銀行貸付 提供 등 優待措置가 인정된다(제8조).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特惠的인 經營活動條件을 보장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特惠라 함은 ① 특별히 정한 품목을 제외한 수출입 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 ②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 면제, ③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 ④ 결산이윤의 14%로 소득세를 인하(여타 지역의 경우 25%) 등을 말한다(제9조). 이외에도 북한은 동 지대내에서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出入國節次의 簡素化를 예정하고 있다(제10조).<sup>18)</sup>

외국투자자는 화폐, 현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등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치는 國際市場價格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제12조).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게 필요한 토지는 최고 50년까지 賃貸될 수

17) 이와 동일한 내용은 합작법 제5조, 외국인기업법 제6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18)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제41조 참조.

있다(제15조 1문). 기존의 합영법에서는 토지형태로 출자할 수 있고 합영 회사가 국제가격지정기관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합영법 제21조 2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해주고, 임대기간 중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讓渡 또는 相續을 인정하고 있다(제15조 2문). 이처럼 土地賃借의 期間을 「50년까지로」 보장한 것은 중국의 천진공단, 러시아의 나호트카 경제특구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계약상 정해진 관리원,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北韓人의 雇傭 및 解雇는 해당 勞動機關과의 契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6조).<sup>19)</sup>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의 투자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않으며, 不可避한 事情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補償을 한다(제19조). 과거 합영법에서는 국유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배상 없이 몰수가 가능하였는데, 이 법에서 원칙적으로 국유화를 금지한 것은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한편 이 법은 북한의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국외로 送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意見相異<sup>20)</sup> 發生時 1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北韓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紛爭事件을 심의·해결하거나 쌍방 합의에 따라 제3국 仲裁機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제22조).

19) 중국의 경우 노동력의 직접 고용이 가능하다.

20) 북한은 ‘意見相異’와 ‘紛爭事件’을 구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아마도 意見相異는 意見의 不一致, 意見對立 또는 意見差異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正式的 紛爭으로 公式化·顯在化되기 이전의 潛在的 紛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분쟁의 개념을 法律的, 특히 國際法的으로 이해하지 않고, 通常的 概念的 紛爭(顯在的 紛爭 및 潛在的 紛爭 공히 포함) 중에서 顯在化되기 이전의 분쟁만을 意見相異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一般國際法上 「紛爭」(dispute)이라 함은 ‘양자간의 어떤 法的 問題 또는 事實問題에 관한 意見의 不一致, 즉 法的 見解 또는 利害의 衝突’을 말한다.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Case에서의 1924년 常設國際司法裁判所(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判決 참조.

## 나. 問題點

첫째, 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인과의 합영, 합작 및 단독투자에 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용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宣言性(政策方向 천명)·抽象性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하며, 앞으로 보다 細部的인 基準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恣意的인 判斷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다.

가령 우대조치가 인정되는 投資獎勵對象과 관련하여, ‘첨단기술을 비롯한 現代的 技術과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제7조 및 제8조 참조). 또 投資禁止 또는 制限對象에 관한 조항인 제11조에 있어서도 ‘民族經濟發展과 나라의 安全에 支障을 주거나 經濟技術的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이라는 不確定概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시 인정되는 특혜와 관련하여, 이 법은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즉 ‘덜어줄 수 있다’고 任意的 減免規定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덜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 소득세감면이 인정되는지 동법 세칙에서 그 基準이 마련되지 않으면 恣意的 適用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제12조에 따른 投資財産의 評價時 現物財産, 産業財産權 및 技術의 評價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북한은 토지, 시설 및 설비 등을 過大評價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측 기업의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을 平價切下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투자재산의 가치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초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國際市場價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반드시 분명치 않다. 이 개념에 대해서 남북한이 서로 달리 이해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될 경우 合意導出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남북한의 기업들간에 체결될 합작투자계약에서 이 문제에 관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의 所有權制度는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그리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土地는 원칙적으로 國家所有이다. 그 결과 外國投資家와 外國投資企業은 民法 및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土地賃借權 및 使用權 또는 管理權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北韓土地制度上 土地賃借權의 제3자에 대한 讓渡만이 가능하다. 자본주의국가에서 土地所有權者의 死亡時 인정되는 相續概念이 북한의 外國人 土地賃借制度에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이 국가로부터 賃貸받은 土地에 대하여 該當機關의 承認下에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여기서 북한이 相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資本主義 法概念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 대다수 국가의 民法上 財產權 相續의 경우 국가기관의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제15조의 相續概念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該當機關의 承認下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자체가 아예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넷째, 근로자의 雇傭이나 解雇 및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干涉과 排他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노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직원을 채용 또는 해고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당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바, 중국·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이 직접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다섯째, 外國人投資法은 原則的으로 國有化를 禁止하고 있으나(제19

21)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pp. A3~A4.

조), 「不可避한 事情」이 있을 경우 國有化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判斷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또 「해당한 보상」이란 용어와 관련,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漠然한 概念으로서 북한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여섯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나 외국투자기업의 產業財產權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장차 이러한 財產權의 보호를 둘러싸고 紛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2. 合作法

### 가. 內容

합작의 대상은 수출품 생산 및 선진기술이 도입된 공업부문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봉사(서비스)부문도 가능하다(제3조). 북한은 특히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제4조).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할 수 있다(제5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協議하고 외국투자자와 合作契約을 締結한 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合作申請書를 제출해야 한다(제6조 1문).<sup>22)</sup>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承認 또는 否決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제7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 소재지의 道·直轄市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제8조 1문).<sup>23)</sup> 契約에 따라 외국투자자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政務院 對外經濟機關과의 合意下에 제3국의 기술자 채용도 가능하다(제11조). 또한 국가의 승인하에 생산·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및 생산제품의 수출도 가능하다(제12조).

22) 이 때 申請書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하여 필요한 關聯文件을 첨부해야 한다(제6조 2문).

23) 登錄한 날이 합작기업의 創設日로 된다(제8조 2문).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며, 雙方의 合意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제13조). 이것은 북한에 합작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가 합작생산한 제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生産된 製品과 賣上收入은 合作契約에 따라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는 데 優先적으로 사용한다(제14조). 외국투자자는 합작기업에서 얻은 合法的 利潤, 기타 수입을 북한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國外로 送金할 수 있다(제15조).

합작당사자들은 非常設의인 共同協議機構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약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質提高, 再投資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제16조).

合作企業은 경영활동에 대한 決算은 월별·분기별·연별로 하고, 규정에 따라 財政簿記 決算書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財政 銀行機關의 監督을 받는다(제17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稅金을 납부해야 한다(제18조).

合作은 合作期間이 滿了하면 終了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 만료 또는 기한전 해산의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登錄 取消手續(節次)을 밟아야 한다. 합작을 계속하려 할 경우,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제20조). 意見相異發生時 1차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紛爭事件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제21조).

#### 나. 問題點

첫째, 북한식 合作의 概念에 의하면 外國投資家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북한측이 경영 전담) 투자에 대한 危險負擔이 매우 크다. 또한 북한의 합작기업은 북한법인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合作經營企業은 중국내의 獨立法人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經營도 계약에 따라 理事會方式, 聯合管理機構方式 또는 一方當事者에 의한 委託經營方式 등이

모두 가능하다. 물론 북한식 합작기업이 매우 탄력적인 형태의 中國式 合作企業을 모방하여 모든 기업운영의 기초적 사항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국에 비해 북한의 統制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sup>24)</sup>

둘째, 合作對象의 業種, 獎勵事業의 對象業種 등에 대한 규정도 具體性이 缺如되어 있다. 가령 先進技術이 도입된 제품(제3조), 現代인 설비와 첨단기술,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높은 제품(제4조) 등이 그러한 예이다. 북한은 施行細則 制定時 이러한 문제점을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합작법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원배분이 국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과연 합작기업이 북한내에서 物資購入 및 販賣 등 자유로이 物資調達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넷째, 합작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가 經營活動에 관한 한 危險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投資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原則적으로 合作製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3조), 事實上 投資家側이 그 販賣에 따른 危險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들은 제품의 販路確保에 대한 對策을 마련한 연후에 북한측과 합작계약을 체결함이 요망된다.

다섯째, 제14조는 먼저 쓸 수 있다'(may)는 任意規定의 形式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對解釋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여기서 使用의 主體가 합작기업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

여섯째,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합작이나 합영사업에 當局의 干涉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나, 每月 經營決算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것(제17조)은 지나친 干涉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에서는 非常設의 共同協議機構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구를 통하여 외국투자가가 經營에 참여하는

24) 이 외에도 북한의 합작기업의 경우, 북한측이 경영을 전담하고,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합작기업의 경우, 경영권 및 이윤분배 등이 契約에 따르므로 큰 제약은 가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식 합작기업의 경우 利潤分配方式에 있어서 제한이 없음은 북한의 경우와 중대한 차이로 할 수 있다.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重要な 問題들을 협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重要な 問題」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둘러싸고 合作當事者 間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일곱째, 合作法은 북한당국의 承認下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제19조 2문 참조), 실제로는 다음 두가지 問題點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하나는 契約不履行 責任이 북한측에 있다는 事實의 認定을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紛爭解決方式이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관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客觀的인 裁判이나 仲裁判定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덟째, 合作法은 合作당사자의 契約의무 불이행에 따른 企業解散은 國際法의 慣例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合作法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解散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외국투자가에게 不利할 수 있다.

아홉째, 분쟁해결방식과 관련하여 基本法인 外國人投資法에는 분쟁발생시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合作法에는 ‘北韓內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 節次에 따라 심의·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3국에서의 해결을 배제하는 식의 해석·적용가능성이 없지 않다.<sup>25)</sup>

### 3.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 가. 內容

합영당사자는 原則的으로 북한의 기관·회사·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외국의 회사·기업소·개인 및 경제조직으로 제한되나(법 제1조 2문, 시행세칙 제2조), 例外的으로 ‘재일 상공인을 비롯하여 海外에 거주하는 朝鮮

25)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4 ;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16, 18 참조.

同胞'도 합영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 제5조, 시행세칙 제11조). 합영대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 등 여러 분야로 되어 있어 투자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법 제2조, 시행세칙 제3조).<sup>26)</sup>

합영회사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기관에 제출, 동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북한측 합영당사자가 외국측 합영당사자와 합영계약을 체결한 후 合營工業總局(對外經濟機關)의 승인을 얻어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함으로써 설립된다(법 제6조, 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참조).<sup>27)</sup> 합작기업은 신청접수후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합영공업총국은 합영회사 조직승인신청서 접수후 1달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시행세칙 제16조). 승인기간은 합영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합영세칙에서 개정·보완된 것이다.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액과 지분은 當事者間 合意에 의한다(법 제7조 1문, 시행세칙 제26조). 합영당사자는 出資目的物로서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 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법 제7조 2문, 시행세칙 제27조 1문). 합영회사는 有限責任會社와 같은 法的 性格을 가지며, 상대방의 同意를 받아 出資持分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讓渡할 수 있다(법 제8조, 시행세칙 제8조 및 제38조 1문 참조).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법 제9조, 시행세칙 제37조).<sup>28)</sup>

합영회사는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두며(법 제10조, 시행세칙 제39조 1문), 議決方式은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이사장·부이사장·이사·합영회사 사

26) 동 시행세칙 제3조는 합영대상분야로서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27) 합영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法人으로 된다(시행세칙 제20조 2문).

28) 자본의 減資制限과 관련, 북한의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우 登錄資本의 減資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식 합영의 경우 감자가 불가능하나 외자기업의 경우 減資가 가능하다.

장·부사장·재정검열원·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이사회에 參加한 이사 全員の 贊成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시행세칙 제44조).<sup>29)</sup>

생산에 필요한 물자는 북한산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북한의 기관, 기업소는 합영회사의 물자구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시행세칙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 참조). 發明權, 技術文獻, 技術秘訣 및 북한에서 生産되지 않거나 購入할 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51조 및 제52조 참조).<sup>30)</sup>

합영회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투자 몫으로 반입하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의 경우, 반입승인만 받으면 되고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때 반입한 물자에 대하여는 關稅를 부과하지 않는다(시행세칙 제59조). 생산된 제품은 輸出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산 물자의 購入이나 생산품의 북한내 販賣는 해당 무역기관 또는 다른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하며, 가격은 國際市場價格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법 제14조 1문, 시행세칙 제50조 및 제55조 참조). 합영회사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북한의 保險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시행세칙 제63조).

합영회사 종업원의 雇傭 및 解雇는 북한의 法과 合營當事者の 契約에 따라 행하며(법 제16조), 실무적으로는 북한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한다(시행세칙 제64조 1문).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북한 노동법규에 따른다(시행세칙 제68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북한의 해당 법규범과 규정에 따르는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 혜택을 받는다(시행세칙 제70조). 합영

29) 북한의 합영은 資本主義의 合作投資와 類似하나,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合議的 意思決定 내지 共同意思決定 方式(중요사항의 경우 만장일치, 기타사항의 경우 2/3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投資比率에 따라 經營權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資本主義式 合作과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 資材購入과 관련하여 국내구입이 불가능할 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북한 합영법의 규정은, “합영회사가 국내조달과 해외조달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 조건이면 국내구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 제57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은 노동보수의 1%를 각각 社會保險料로 납입하여야 한다(시행세칙 제71조).

합영회사는 북한 貿易銀行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外貨計座와 「원」화計座를 개설하고,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은 외화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법 제13조, 시행세칙 제74조). 經營計算은 북한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外貨로도 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78조 1문). 합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분배받은 돈」(利益配當金)의 送金이 보장되며(법 제22조, 동 시행세칙 제79조 1문 참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노임액의 必要한 部分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80조).

결산년도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시행세칙 제82조 1문). 決算은 年 總收入에서 原價報償, 所得稅, 豫備基金,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자금(法定準備金) 등을 공제한 후 出資持分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하며(법 제18조, 시행세칙 제83조 및 제88조 참조), 합영회사는 豫備基金이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소득중 5%씩 적립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시행세칙 제87조).

모든 意見相異는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裁判機關 또는 貿易仲裁機關에서 審議·解決하며(법 제26조, 시행세칙 제98조), 재판은 북한의 民事訴訟節次에 따른다(시행세칙 제100조). 合營當事者는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법 제26조, 동 시행세칙 제102조).<sup>31)</sup>

#### 나. 問題點

31) 합영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北韓法制資料 제2호—法制資料 제160집 (서울: 法制處, 1992), pp. 1~403; 金辰,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規,” 「서울大學校 法學」, 제31권 1·2호 (1990), pp. 133~150; Woong Shik Shi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Korea Economic Weekly*, September 23, 1991, p. 23 등 참조.

첫째, 합영법에 의한 경우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상 합영당사자로 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중국의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程」(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은 대만동포를 합영당사자로 명시하고 이를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相對的으로 북한법의 閉鎖性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합영법은 합영대상에 관하여 資源開發과 같은 讓許事業(concessio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특성이 무시된 채 일반적인 합영계약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中外合作沿岸石油資源探查開發條例」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로 북한이 출자하는 出資目的物, 가령 토지·건물 등의 評價基準이 불확실하여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투자자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投資保障에 있어서도 出資持分에 대한 관련 법규의 미비로 債權的 水準의 保護에 불과하다.

넷째, 理事會의 意思決定方式이 매우 경직적이다. 즉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경우 이사 全員一致의 찬성, 기타 사항의 경우 출석한 理事의 2/3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다섯째, 북한산 원자재 구입시 國際市場價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한 貿易機關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原資財의 安定的인 確保가 어렵다.

여섯째, 종업원의 雇傭이나 解雇등에 있어서 기업의 自律權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勞動組合과 북한 職業同盟과의 관계 등 관련 규정에 欠缺이 있다.

일곱째, 합영회사 解散時 投資回收分에 대한 送金保障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sup>32)</sup>

32) 합영법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pp. 225~24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연구소,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p. 67~6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北韓經濟와 經濟協力 方向」(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p. 64~66; 한국외환은행, 「北韓의 合作投資 및 外國換管理制度」, 업무자료: 외관-217(서울: 한국외환은행, 1991), pp. 16~18; 全洪澤·曹東昊, “南北韓 投資協力の 政策課題,” 「南北韓 投資

#### 4. 外國人企業法

##### 가. 內容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資本의 全部를 投資하여 창설하며 獨自的으로 經營活動을 하는 기업으로서(제2조), 북한은 외국의 법인과 개인들이 이를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제1조). 투자대상분야는 전자, 자동차, 기계제작, 식료품가공, 피복가공 및 일용품 등 부문의 工業과 운수, 봉사(서비스) 등이다. 다만 국가의 安全에 支障을 주거나 技術的으로 落後한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제3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제4조).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제6조).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은 외국인기업 創設申請書 接受日로부터 80일내에 承認 또는 否決을 決定하여야 한다(제8조). 기업창설 승인후 3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하고, 그 후 2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財政機關에 稅務登錄을 해야 한다(제9조). 부득이한 事情으로 정한 기간 내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投資期日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2문).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의 수출 및 북한내 판매가 가능하다(제16조). 북한의 원료·자재·설비의 구입이나 생산제품의 북한내 판매는 북한 무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제17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노동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북한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이들을 해고할 수도 있다. 외국의 기술자·기능공의 채용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協力の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92), pp. 28~36; 申東秀, “북한합영법의 종합적 비판,” 「통일한국」, 통권 제12호 (1984. 12.), pp. 56~65.

과의 합의가 요구된다(제20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들은 職業同盟組織을 결성할 수 있고, 외국인 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제21조 1문 및 3문).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合法的利潤을 再投資할 수 있고, 관계법규에 따라 海外에 送金할 수도 있다(제22조).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경우 北韓의 保險에 가입해야 하며(제23조),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제24조). 외국인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또는 생산제품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5조).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내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제26조 3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은 외국인기업법을 위반할 경우 그 情狀에 따라 기업을 中止 또는 解散시키거나 罰金을 부과할 수 있다(제29조). 기업이 解散되거나 破産할 경우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申告해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재산은 清算手續이 종료하기 전에 처리할 수 없다(제30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意見相異는 일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紛爭事件은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제31조).

#### 나. 問題點

첫째, 외국인기업의 설립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된 羅津·先鋒地域의 경우 短期的으로 볼 때 常住人口不足, 社會間接資本施設未備 등으로 투자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지역은 외국투자자에게 단독투자를 할만큼 魅力的인 投資對象 候補地가 되지 못하므로 법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投資誘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sup>33)</sup>

둘째, 外國人企業法은 '나라의 安全에 지장을 주거나 技術的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으며(제3조 참조) '人民經濟發展에 障礙를 주는

33)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p. 89, 91 참조.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참조), 이들에 대한 概念 및 判斷基準이 모호하다.

셋째, 기업창설에 필요한 문서인 '정무원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한 審議·批准에 필요한 文件'(제7조)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 이 법의 세칙 제정 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外國人企業은 기업을 등록한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生産 및 輸出計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5조), 保險도 北韓保險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3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의 보험제도는 현재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보험기관의 위험담보 능력도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분간 외국인기업이 기업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은행에 輸出保險을 들거나 별도의 國際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법은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財政簿記 計算規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앞으로 이 조항의 後續措置로서 會計關聯 法制的 補完·整備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이 법의 경우에도 雇傭의 硬直性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20조 참조). 특히 북한은 다른 외자유치관련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職業同盟組織을 악용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제21조 참조).

일곱째, 외국인기업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제26조 참조), 외국투자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여덟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개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29조), 여기서 行爲主體가 模糊하고 惡用可能性 마저 있다고 보인다.

아홉째, 紛爭事件 역시 合作法과 마찬가지로 북한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만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제3국 중재기관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外國人投資法과의



괴리가 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조항의 適用時 북한당국의 恣意性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sup>34)</sup>

## 5.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 가. 內容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는 달리 비교적 구체적이고,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할 稅制를 하나로 묶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북한영역내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諸般 稅金問題를 包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一般法으로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基本, 所得稅(기업 및 개인), 財產稅, 相續稅, 去來稅, 地方稅, 이와 관련된 制裁 및 申訴請願(우리의 異議申請에 해당) 등을 규율하고 있다.<sup>35)</sup> 이 법은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동 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 세칙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바, 이 법의 제정으로 북한은 後法優先의 原則에 따라 外資關聯 稅制에 관한 기존 법령, 즉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同 細則, 外國人所得稅法 및 同細則 등을 ‘事實上 廢止’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36)</sup>

外國投資企業과 外國人의 稅金登錄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

34)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4 ;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pp. 20 21.

35)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및 外貨管理法의 내용에 관해서는 統一院, 「月刊 北韓動向」, 統分 93-3-23 (서울: 통일원, 1993), pp. 20~40 참조.

36)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경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중국의 관련 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中國과는 달리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할 각종 稅制를 하나로 統合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稅制는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 「個人所得稅」, 「工商統一稅」, 「都市不動產稅」, 「車輛 船舶使用許可稅」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本稿에서는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同 細則, 外國人所得稅法 및 同 細則 등에 관해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統合, 分離, 解散하는 경우 登錄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稅務登錄 變更, 取消 手續을 한다(제2조). 외국투자기업의 財政簿記 計算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른다.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다(제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은 북한 「원」으로 계산하여, 受益者가 直接 納付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單位가 控除하여 납부한다(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稅金納付 定型에 대한 監督統制 事業은 재정기관이 담당한다(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국정부와 북한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 당해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제7조).

外國投資企業은 북한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 및 판매 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북한영역 밖의 支社, 出張所, 子會社 등에서 얻은 소득도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제8조).

外國投資企業의 所得稅率은 原則적으로 決算利潤의 25%이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14%,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이다(제12조). 한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의 20% 세율을 적용하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한다(제13조). 한편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부문 투자의 경우, 이윤발생시부터 4년간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경우 一般地域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決算利率의 25%로 하고 自由經濟貿易地帶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율의 14%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이 一般地域에서의 소득세율을 30%로 하고 經濟特區 또는 開放區에서는 15%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각각 1~5% 낮게 책정된 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企業所得稅率을 중국에 비해 낮게 책정한 것은 유엔開發計劃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과 관련하여 外資誘致面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의식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데서 비롯된 조치라고 판단된다.<sup>37)</sup>

投資獎勵部門과 自由經濟貿易地帶의 生産部門의 外國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免除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제15조 2항). 제12조와 제15조 2항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투자장려부문(경영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4~5년차에는 기업소득세의 5%의 세율, 그리고 장려부문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생산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경영기간 10년 이상)은 7%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게 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部門의 外國투자기업에 대한 所得稅 免除 및 減免과 自由經濟貿易地帶의 下部構造建設部門에 참여한 外國투자기업의 所得稅 免除 및 減免이 인정되며(제15조 3항 및 4항), 外國투자기업이 利潤을 再投資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대한 納付所得稅額의 50%를 返還받을 수 있고,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분에 대한 납부소득세액의 全額을 반환받을 수 있다(제16조).

北韓領域內에서 所得을 얻은 外國인은 個人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北韓領域內에서 1년 이상 滯留하거나 居住하는 外國人’은 北韓領域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個人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제17조). 이처럼 個人소득세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와 체류자에 대해서도 外國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中國보다 嚴格한 徵稅를 의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國外所得中 中國으로 送金된 부분에 대해서만 課稅對象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個人所得稅 課稅對象은 ①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② 배당소득, ③ 공업 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④ 이자소득, ⑤ 임대소득, ⑥ 재산판매소득, ⑦ 증여소득, ⑧ 개인기업소득 등이다(제18조).

37) 內外通信, “외국투자 유치위한 법령정비 가속화,” p. A2;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자.

個人所得稅率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보수액이 월 2천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 등은 20%,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은 25%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제19조).

外國人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建物과 船舶, 飛行機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는 建物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免除한다(제25조).

상속세와 관련하여 북한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북한영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제31조).

#### 나. 問題點

첫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企業所得稅의 경우 중국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個人所得稅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 다소不利하다. 즉 중국은 「개인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세칙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단 6년째부터는 북한과 동일), 북한의 경우 “공화국 영역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17조).

둘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適用範圍」에 ‘공화국 영역내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영역밖 거주 조선동포’(제6조)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이 우리 기업의 對北投資에 대해서도 규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에서 南北間 二重課稅 防止 및 投資保障 등에 관한 별도의 合意가 이루어질 경우 이 稅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제17조). 만일 남북간 합의를 國家間的 協定으로 볼 경우 동 협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만약 협정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간에 조세와 관련한 보다 유리한 合意가 이루어지더라도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상속세관련 조문은 특히 거주 외국인이 北韓領域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朝總聯系 北送同胞 및 북한에 거주하는 日本人妻中 北韓國籍 未取得者들이 在日家族으로부터 받게 되는 財產相續分을 북한으로 환수하기 위한 意圖的 措置라고 판단된다. 이는 二重課稅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과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일시체류 외국인의 海外 相續財產에 대해 課稅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종업원은 居住地規定을 이용하여 課稅適用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居住者」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6. 自由經濟貿易地帶法

### 가. 內容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새로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동 지대내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sup>38)</sup>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1991년 12월 선포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하여 앞으로 지정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법은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의 基本,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經濟活動 條件의 保障,

38) 이 법의 立法目的에 관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조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하고 있다.

關稅, 通貨金融, 擔保 및 特惠, 紛爭解決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sup>39)</sup> 이 법의 특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우대조치 외에도 동 지대내에서의 投資節次의 分權化 및 簡素化, 가격결정의 자율권 인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화시장의 허용 등을 통해서 동 지대를 대외 경제개방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서비스) 지역으로 선포된 북한의 일정한 영역’을 말한다. 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북한의 主權이 행사되며, 이 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는 국가가 특별히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2조). 이러한 규정은 북한이 領土主權의 制限에 反對한다는 基本立場을 법령을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sup>40)</sup>

자유경제무역지대의 管理機關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있다.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업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sup>41)</sup> 地帶當局은 현지 집행기관이다(제8조).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執行對策 수립, 경제관리·운영사업 指導,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 구조건설 대상과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그 밖의 投資對象의 審議·承認을 담당한다(제9조). 이에 비해 地帶當國은 행정경제부서와 외국투자관련 대외경제부서로 구성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집행한다(제11조). 지대당국은 구체적으로 ① 주민행정, 도시경영 등 행정경제사업 실시, ② 사회질서 유지 및 인신과 재산 보호, ③ 지대의 개발계획 작성·선전·집행, ④ 투자신청 접수, 총 투자액 2천만원

39)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의 후속조치로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등 채택”, 제 8247호 (서울: 內外通信社, 1993. 2. 6), p. A2.

40) Ibid.

41) 북한은 1992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UNDP주관의 제2차 計劃管理委員會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PMC)에서 國際管理(international management)에 동의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으나(1992. 10. 11 제2차 PMC에서 채택된 Aide-memoire 참조),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영토주권의 제한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하부구조건설 대상과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그 밖의 투자대상의 심의·승인, ⑤ 기업등록 및 영업허가, ⑥ 투자가의 인력채용 지원, ⑦ 토지 및 건물 임대 또는 양도, ⑧ 직·간접의 봉사 제공, ⑨ 지대내 투자와 개발 촉진 및 관리운영·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12조).

이처럼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운영을 위한 機關을 中央의 對外經濟委員會와 現地 行政經濟部署인 地帶當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외개방을 통제하는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地方分權的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對外經濟委員會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開發과 管理運營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貿易部와의 業務分擔이 不分明했던 對外經濟委員會가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을 이끄는 핵심기구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투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제18조).<sup>42)</sup> 즉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모든 외국투자기업(합영-합작-단독투자 불문)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자유로운 企業創設과 經濟活動이 保障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하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제20조).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상품의 지대내 반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된다(제17조 1문).

貿易船과 船員들은 國籍에 관계없이 지대안의 貿易港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대내에 출입하는 외국인에게 無查證制度를 시행한다(제41조).

외국투자기업이 원료·자재 및 부분품의 가공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있는 북한기업소에 委託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된다(제24조).

상품의 價格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일부 大衆必需品의 가격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제22조). 이는 市場

42) 이 조항은 外國人投資法에서 외국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단독으로' 투자,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經濟原理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북한경제 체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이 점을 의식하여 동조 후단에서 국가가 대중필수품 가격을 통제토록 하고, 외국인기업법 제21조에서 직업동맹조직의 의무화 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特惠關稅制度가 실시된다(제25조). 가공수출 목적으로 지대내로 수입한 상품,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지대내에서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타국의 통과무역화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제26조). 단 외국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상품을 팔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免除되지 않는다(제2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제34조). 지대내의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하에 非居住者들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제33조). 외국투자가 등에게 이윤, 이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 등 소득의 國外送金과 경영기간 종료후 지대내 搬入財産의 搬出이 허용된다(제3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企業所得稅率은 決算利潤의 14%로 한다(제36조).<sup>43)</sup>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받으며, 임대시 賃貸料 引下 등 便宜를 제공받는 한편(제38조 참조), 북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貸付받을 수 있다(제3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意見相異는 一次的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제42조),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紛爭事件은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

43)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 2항을 再確認한 것이다.



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제43조).

#### 나. 問題點

첫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도 북한의 인력알선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 해고하도록 하고 있어 勞務管理의 硬直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너무나 일반적·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령 검역절차에 관해서 언급이 없다. 또한 아무리 자유경제무역지대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사범, 마약사범 등의 자유로운 출입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마치 완전히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듯 하나,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出入國管理法이라는 一般法을 제정함과 동시에, 동법에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거나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특례를 정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소위 「黃金의 小三角地域」(Golden Triangle)에 속하는 북한지역이다. 현재 UNDP는 이 지역을 國際管理하에 개발하여, 장차 國際都市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장래를 내다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조선 「원」화만을 유통화폐로 하는 한편, 모든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 환성 외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국가의 干涉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북한이 외화수입을 위해서 북한화폐로의 교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북한의 경제체제 특성상 외국인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는 例外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 법의 규정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경우 販賣者와 購買者간의 合意에 의해 價格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市場形成의 可能性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장기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사는

확실한 것 같지 않다. 자유경제무역지대가 對外經濟開放의 窓口役割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中國의 經濟特區와 마찬가지로 資源配分을 市場調節機能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sup>44)</sup>

## 7. 外貨管理法

### 가. 內容

外貨管理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 등에 대한 原則과 秩序를 규율한다(제2조).<sup>45)</sup> 외화에는 ① 轉換性 있는 外國貨幣, ②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外貨有價證券, ③ 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外貨支拂手段, ④ 기타 외화자금, ⑤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등 貴金屬이 포함된다(제3조).

外國換業務의 전문은행은 貿易銀行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제5조). 북한내에서는 외화유통이 금지되며, 외화의 사고팔기, 저금, 예금, 저당 등은 외국환업무를 맡은 은행, 즉 무역은행 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외국환관련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제6조). 북한에서 合法的으로 취득한 外貨는 합법적으로 保護되며 相續도 가능하다(제9조). 이 법은 외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貿易契約과 支拂協定에 따르는 거래, 무역외 거래, 은행에서 조선화폐를 사거나 파는 거래, 자본거래 등으로 制限함으로써(제11조) 외화의 流入에 따른 經濟混亂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4) 中國의 經濟特區 戰略은 經濟特區를 對外經濟開放의 窓口로 活用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經濟的 目標), 特區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킴으로써 소위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體制改革的 目標).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은 특구내의 생산과 유통 등 資源配分을 주로 市場調節機能에 맡겨 왔다.

45) 북한 外貨管理制度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國家에 의한 集中管理 및 外國換業務 專門銀行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과 귀금속은 제한없이 북한에 搬入할 수 있다(제22조). 그러나 搬出의 경우 그 對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外貨現金은 은행이 발행한 外貨交換 證明文件이나 入國時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 내에서만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제23조).

둘째, 外貨有價證券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반출할 수 있다(제24조). 自由經濟貿易地帶의 경우 해당문건이나 稅關申告書 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제25조).

셋째, 貴金屬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입국시 반입한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내에서만 반출할 수 있다(제26조).

이처럼 북한이 外貨의 搬出入과 관련하여 반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입국시 申告한 외화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반출 등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외화관리기관의 承認下에 외화를 반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外貨保有高를 늘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送金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 없이 移轉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인 노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북한영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제28조).

이것은 북한이 外國人投資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기업의 과실송금과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勞賃 등의 送金을 허용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외화관리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情狀에 따라 罰金을 부과하며, 不法으로 去來한 外貨와 物件을 沒收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銀行去來를 中止시킬 수 있다(제29조). 重大한 結果를 초래한 자에게는 情狀에 따라 行政的

또는 刑事的 責任을 부과한다(제31조).

#### 나. 問題點

첫째, 외국투자기업은 貿易銀行 또는 外貨管理機關이 승인한 은행에 外貨口座를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외화이용기관·기업소·단체는 分期別·年間別 외화재정상태 表를 外貨管理機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의 외화통제가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외국투자기업이 所要 外貨를 輸出이나 海外借入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內需市場에 판매하여 북한 「원」화를 이윤으로 얻는 경우 轉換性 外貨로의 兌換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을 전부 送金하거나 自己資本을 제한없이 移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27조), 실제로는 외화로 받은 이윤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면 외화로 송금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종업원은 임금 등 合法的으로 얻은 外貨의 60%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例外 規定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sup>46)</sup>

## IV. 綜合的 評價와 展望

### 1. 綜合的 評價

북한이 당면한 經濟難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합영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46) 중국의 경우 합법적 수입의 50%까지 송금할 수 있으나, 國家外貨管理局의 承認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으로는 충분한 外資導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사이에 새로이 6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먼저 肯定的인 側面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外國人投資法 등 3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제정과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등 3개 後續 法令補完措置로 북한의 外國人投資制度는 外形上으로는 대폭 개선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과 개선된 사항은 ① 中國의 經濟特區 방식 수용에 의한 투자우대지역(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② 外國人의 100% 全額出資 등 다양한 투자형태의 허용, ③ 優待措置 강화 등 투자유인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尖端科學技術分野에 대한 優待措置를 취한 것이라든가, 또는 과거 합영법에서는 외국인 전액출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법이 비록 100% 外國人 單獨投資 허용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액 외국인출자에 의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허용한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욕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법에서 토지의 50년 임대, 각종 세제상 혜택, 외국인 투자재산의 國有化 禁止, 利潤의 國外送金 許容 및 經營秘密 保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合意에 의한 價格決定 등을 명시한 것은 앞으로 외자유치 및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이 適用稅率을 中國보다 대부분 낮게 책정함으로써 북한이 相對的으로 유리한 外資進出 條件을 제시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다.<sup>47)</sup>

이처럼 북한이 합영법 발표이후 8~9년만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한 것은, 제한적이긴 하나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法·制度的 裝置의 보완을 통하여 외국인의 對北投資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外國人投資를 獎勵한다는 原則과 政策方向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對外經濟開放의 政策轉換 意志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

47)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2;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자 참조.

치는 그동안 북한의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主體經濟路線 추진으로 선진과 학기술도입을 소홀히 한 것이 과학기술분야의 낙후 뿐만 아니라 경제난 심화를 초래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제정된 일련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서는 과거에 비해 透明性과 具體性이 제고되었다. 기존 합영법 체계하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은 합영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의 시행세칙이 전부였고, 기타 사항은 북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는가가 불명확하였었다. 또한 법령의 내용도 抽象的이고 宣言的이었기 때문에 합영관련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金日成 및 金正一의 方針이나 北韓監督機關의 判斷에 委任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2년 10월에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은 합영회사의 법적 성격과 활동범위, 합영회사의 조직, 등록절차, 이사회와 합영회사 운영방식, 합영회사 결산방식, 합영회사의 존속·해산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해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sup>48)</sup>

셋째, 과거의 합영법은 ‘북한영역안에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또는 기업소 또는 개인과 합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例外的으로 ‘재일 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조선」정책에 따라 한국은 合營法에서 말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며, 더욱이 한국은 ‘海外’의 地域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同法の 南北關係에 대한 適用은 法理上 不可能 하였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합영법 제정 당초부터 조총련계와의 합영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 제정된 外國人投資法은 “공화국영역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동법 제5조 후단)고 규

48) 裴鍾烈, “北韓投資法令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제3호 (1993. 3), pp. 11~14; 이러한 투명성과 구체성은 북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려 및 투자제한·통제조항들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Ibid., pp. 17~21 및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pp. 15~17 참조.

정하고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의 경우에도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제정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들은 모두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비추어 한국인이나 한국기업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는 解釋이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100% 全額出資하는 單獨投資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49)</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 末尾에서는 남북한의 정식국호가 표기되고 있는 바, 外國人投資法에 의할 때 대한민국은 「공화국 영역밖」의 지역이라는 해석도 일견 形式論理的으로는 가능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직까지 북한의 대남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할 때 ‘북한은 「하나의 조선」논리에 입각하여 여전히 「共和國」을 韓半島 全體로 解釋하고 있다는 주장<sup>50)</sup>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 法的인 形式論理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간 체결된 諸合意書에서는

49)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同胞」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투자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合營法에서는 남한기업이나 개인을 투자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표된 法令들에서는 모두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남한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對北投資 門戶를 事實上 開放한 점도 肯定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22 참조; 또한 貿易船 및 船員들에 대해서 無查證制度에 의한 自由入港을 허용기로 한 조치는 외국투자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론도 개진되고 있다.

50) 李東馥, “남북대화: 1993년의 전망,” 「새시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남북문제 대토론회(서울: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1992 12. 28), pp. 36~37 참조; 합영법에는 「제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거주 조선동포」로 되어 있었으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동법의 人的 適用範圍에 있어 종전보다 포괄적이거나, 남한의 기업·개인 포함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보호대상에 「대만동포」를 명시하고 이들의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는 중국의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程」(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과 비교하여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서명란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正式國號는 물론 남한, 북한도 아니고 南側, 北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아울러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당국의 明示的 態度表明이 있을 때까지는 合理性이나 一般的 慣例에 따라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좀더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sup>51)</sup>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논쟁을 엄밀하게 평가할 경우, 法的·經濟的 意味보다 오히려 「하나의 조선」 政策 拋棄 與否에 관련된 政治的 意味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합영법 제정후 외국인 투자법 制定前이나 또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지금이나 韓國企業이 「事實上」 북한에 진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법 제정시 우리 기업의 대북한진출은 당해기업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투자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우리 기업이 在日同胞 또는 在美同胞 심지어 제3국인과의 合作投資에 의하여 제3국에 現地法人 - 단지 「書類上의 會社」(paper company)인 경우도 많다 - 을 설립하여, 우리 기업이 제3국 法人의 名義 속에 과묵한 상태로(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外國人 資格으로) 진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經濟的인 觀點에서 볼 때 이 경우도 북한에 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에 단행된 外國人投資關聯 法令整備는 이상과 같은 肯定的인 側面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군데서 否定的인 側面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모든 투자조건들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基本的인 問題點을 안고 있다. ① 투자장려부문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優待條件이 宣言的이며, ②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를 생산제품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투자 위험을 외국투자가가

51) 이와 관련하여 ① 金達鉉 副總理가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에 합의한 사실(1992. 1), ② 동인이 삼성 및 럭키금성에 투자를 요청한 사실, ③ 홍콩에서 개최된 東北亞圓卓會議(1992. 10)에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관계자가 합작법상 「朝鮮同胞」에 한국인도 포함된다고 밝힌 점에서 볼 때 한국기업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령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p. 15.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③ 從業員 採用의 排他性과 北韓產 原資財 優先 使用原則, 北韓 國內保險加入 規定 등 경영활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어렵고, ④ 분쟁발생시 현실적으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며, ⑤ 법의 解釋이나 適用에 있어서도 북한측의 恣意性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둘째,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 합법적 권리와 이익 또는 투자자본과 소득을 ‘法的으로 保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sup>52)</sup> 여기서 法的 保護의 대상인 기업의 재산권(소유권)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즉 北韓 民法에 따라 보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國際法的으로 보호한다는 것인지가 不分明하다. 일견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sup>53)</sup>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민법에서는 소유권의 종류를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재산권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가 불분명하다.<sup>54)</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北韓民法를 개정하여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재산을 法人의 財産으로 분류하여 독자적으로 보호할 것을 북한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52) 외국인투자법 제4조, 합영법 제4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조 참조.

53) 外國人投資法上 외국인투자기업은 北韓의 法人으로 설립되며, 일차적으로 북한법의 규율을 받는다.

54)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서도 外資系 企業의 재산소유 형태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가지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합작투자기업의 소유권은 소유권법이 아니라 그 보다 하위에 있는 계약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鈴木輝二, 「東西經濟 協力と法」(東京:三省堂, 1987), pp. 105~106; 다른 하나는 중국의 헌법이 全人民에 의한 社會主義所有와 勞動者에 의한 社會主義 集體所有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중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소유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Masanobu Kato, "Civil and Economic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0 (1982), p. 453;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중국학자들이 個人所有企業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Tang Yufeng and Zhan Xiaoning, "Some Outstanding Issues on the Relations between TNCs and Host Country: From a Developing Host Government's Perspective," 「저스티스」, 제23권 1호 (1990), p. 170 참조.

셋째,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화관리법 등이 외국기업의 과실송금과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勞賃 등의 送金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외화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55)</sup> 따라서 硬貨로 송금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북한의 극심한 外貨不足을 고려할 때 外貨管理가 매우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기업이 아니면 이윤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러시아와 유고슬라비아가 각기 명문의 규정으로 계약의 종료나 회사의 해산시에 투자원본의 회수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합영법은 남은 재산의 분배만을 규정하는 한편, 동 시행세칙에서도 회사해산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sup>56)</sup>

넷째, 최근 단행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법령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잔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가령 고용 및 해고는 노동기관을 통해야만 하며 勞動黨 外廓團體인 職業同盟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과 같이 勞務管理에 있어서도 社會主義經濟의 경직성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sup>57)</sup>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관련법 상호간에도 내용상 矛盾이 있고 전반적으로 법규의 抽象性으로 인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외국인투자법 등의 법률과 각각의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령의 追加制定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5) 이에 비해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외화송금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도 外換管理暫定條例에서 중국은행을 통하여 과실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張孝相, “法的妥當性の 측면에서 본 南北韓 經濟交流와 協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1호 (1990), p. 55.

56) Ibid.

57) 러시아의 경우에도 구소련 시절부터 勞務管理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에 의한 勞使關係가 합작투자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Tracey E. Aronson, “The New Soviet Joint Venture Law: Analysis, Issues, and Approaches for the American Investor,”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19 (1987), p. 875.

요컨대 최근 북한이 일련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경제개방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法令은 다분히 一般的·總論的 規定들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後續措置로서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된 다음에야 투자환경의 개선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소기의 성과」는 각 법률의 시행세칙 제정과 내부법과 투자관련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된 뒤에나 나타날 것이다.

## 2. 展望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정비후 앞으로 북한의 투자환경 및 외자 도입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정비로 기존 법령의 구체성 결여로 인한 외국인의 대북투자 기피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제의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외채지불연기에 따른 최하위의 國際信用度 외에도 북한의 核問題 解決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방·개혁에 대한 기피 등의 자세는 대북투자를 억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sup>58)</sup>

둘째, 최근 북한이 대동구 무역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도 정비 등 대외경제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제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制限된 經濟開放」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제난 해소를 이유로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당분간 북한은 「地域的」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외국인투자의 실험장으로 이용하는 한편, 投資形態는 合作企業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外國人投資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투자에

58) 朝鮮日報, 1993년 2월 9일자 참조.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각종 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기업도 동지역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과의 經濟協力 形態面에서는 체제유지를 제1의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北韓體制의 特性 및 外換事情을 감안할 때 短期的으로 북한은 북한측이 경영을 담당하고, 투자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는 合作企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이처럼 북한은 체제에 미칠 여파를 차단기 위해 外國人 單獨投資(100% 출자) 地域을 나진·선봉지구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法制面에서 볼 때 外國人投資法에 따른 종업원 채용을 북한의 노동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여전히 閉鎖性과 硬直性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북한이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고, 북한근로자를 철저히 감독하여 「統制된 開放」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바, 결국 북한이 經濟體制 및 制度改革을 병행하지 않는 한 투자관련 법령 정비만으로 대외경제개방조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정비를 통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체제의 경직성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서방기업의 대북투자가 短期間內에 증대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sup>59)</sup> 따라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려면 먼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법제도의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를 中國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북한의 법령들에는 相對的으로 未備點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外國人投資法制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① 外國人企業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設立制限, ② 북한측의 합작기업 경영 전담, ③ 고용·해고의 경직성 등 아직까지 북한의 法制度的 側面에서의 投資環境은 서방자본유치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서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sup>60)</sup> 뿐만 아니라 북한의 政治·社會的 環境이나 資源·內需市場 規模 등에서 중국보다 불리한 측면

59)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p. 9.

60)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법규 외에도 涉外經濟契約法, 特許法, 商標權, 外國人

이 많다. 북한의 開放이 중국과 달리 市場經濟化 改革과 함께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限界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의 자율적 경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資源配分이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북한내 물자구입과 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외국투자가는 북한보다 오히려 中國을 投資對象國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방국가의 외자유치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체제 개혁·개방을 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海外同胞들의 資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 북한은 對美·日 關係改善 및 南北經濟交流協力 확대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한이 외자유치 확대는 對外政策의 本質的인 轉換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

投資 獎勵規定, 기타 租稅에 관한 規定 등을 갖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법규외에도 地方政府 次元의 特別法들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정비는 매우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61)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24.

## Abstract

- On Nationalism ..... Sang-In Jun ..... 245
-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Korean Nationalism ..... Tae Hwan Ok ..... 247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ism  
and Its Task for Unification ..... Jong-Chul Park ..... 249
- Nationalism in North Korea:  
Theoretical Adaptation of Juche Ideology ... Jae-Jean Suh ..... 251
-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ationalist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the Unified Nation-State ..... Dukyu Jin ..... 253
- European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 Kook Shin Kim ..... 255
- A Study on Kim Jong Il's Literary Thought ..... Woo Young Lee ... 259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n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 Soo-Young Choi... 261
-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Laws :  
An Assessment and an Analysis ..... Seong Ho Jhe ..... 263

빈 면

## On Nationalism

Sang-In Jun, Ph.D. (RINU)

This paper examines the rise and development of nationalism from a global perspective and concludes with some remarks on its immediate future. Nationalism is neither genetic nor natural, but a creation of Western European history. Nation-building is a 'political' process in which people are incorporated as the members of a common political unit called the nation-state. Thus, the history of nationalism began with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s. They began to appear in Western Europe from the sixteenth century culminating in the formation of absolutist states. In the absolutist states, traditional state forms were broken-up, portending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nation-states. Following the French Revolution, nationalism became a dominant trend in modern history, and Napoleon Bonaparte was its champion.

Nation-states exist only in systemic relations with other nation-states. The internal administration of nation-states has depended from the outset upon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an international nature. Geopolitical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coeval with the origins of nation-states. On the other hand, capitalism and industrialization have decisive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nation-states. Moreover, the spread of capitalism wa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consolidation of a new world system from the sixteenth century onwards.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onsisted of a political structure with many nation-states. Thus the modern world has been shaped through the intersection of power and plenty.

Some believe that the fall of Marxist-Leninist regimes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s well as the upsurg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throughout the world from the late 1980s, herald the advent of a post-nationalism era. To be sure, the increased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exchange, the expansion of civil society *vis-a-vis* the state, and the spread of the post-Marxist 'new social movements' tempt us to think that the power of nationalism and nation-states is diminishing. However, this paper does contend that this is not the case. Nationalism, like a Leviathan, will continue to remain as strong as ever. It is too soon for the people to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in the literal sense.

##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Korean Nationalism

Tae Hwan Ok, Ph.D. (RINU)

Although the root of Korean Nationalism can be traced back to the unified Shilla Dynasty,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sm in its modern sense can be said to have its roots in the Shirhak movement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This article attempts to delineate, and make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of the nationalistic movements, from the birth of Shirhak thoughts, Weechungchuksa, Gaewha and Donghak thoughts of the late Han Dynasty, the Restoration movement of State Right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period, to the nationalistic movements following Korean independence.

The Shirhak movement (17th-18th centuries) began in academic circles with the reflective crisis consciousness of the then declining feudal society, in the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of the mid Chosun Dynasty. Notwithstanding Shirhak's sharp criticism of the contradictions of the feudal institution, the movement could not develop into a nation-wide nationalistic ideology. The reasons for its failure lie in its entrenchment in neo-confucianism and the norm of feudalistic confucian order, and its inability to systemize national consciousness.

The Weechungchuksa movement at its inception revealed its anti-foreign character and later developed into the self-reliant economy movement in the period when ports were being opened to foreign vessels. The movement, however, ran aground, unable to produce realistic counter-measures to the invasion of the major powers with regard to

the safeguarding of state authority.

Gaewha thought sought to overthrow the feudal system and adopt Western thought in order to maintain independence through the creation of a 'wealthy state with a powerful army.' Gaewha was the most apposite ideology of the day in the late Han Dynasty, but failed due to its strategy of reform from above, with its dependence on foreign powers, and without mass support from below.

Donghak thought had a strong anti-foreign and anti-system character, but due to its foothold in the traditional confucian order, and its rejection of Western values, failed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period and consequently revealed its limitations as a nationalist ideology.

The three aforementioned forms of thought remained as aborted attempts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state through the process of repeated confrontation and conflict. The March 1 Movement in 1919, however, gave the nationalists an opportunity to form solidarity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Russian revolution, proliferation of socialist ideas again shattered that solidarity. Division and conflict among the nationalists continued even after Korean independence, and, as a result, showed weakness in resisting foreign powers eventually bringing abou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ople displayed their potential energy by achieving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and on that foundation established democracy even in the turmoil of contemporary politics.

Today, Korean Nationalism faces the tasks of achieving a unified welfare state of Korea through peaceful means, and of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nd the welfare of the mankind.

##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ationalism and Its Task for Unification

Jong-Chul Park, Ph.D. (RINU)

Nationalism could be defined as “collective consciousness to build an independent modern state based on cultural homogeneit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ise and vicissitudes of nationalism are as follows: (1) external factors of world economic system and world geopolitical system, (2) internal factors of state-society relations, (3) industrial policy.

Since the national division in 1945, ‘nationalism from above’ by ruling groups, and ‘nationalism from below’ by resisting groups, have been opposing each other in South Korea.

‘Nationalism from above’ has contributed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by pursuing a mercantilistic industrialization policy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Cold War and national division. Also as an outcome of industrialization, civil society and the stratification of society emerged, in turn making the democratization possible.

‘Nationalism from below’ has criticized the Cold War system, the division of Korea, and mercantilistic industrialization, whereas it has advocated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cy. As socio-economic conflicts emerged due to industrialization, resisting forces began to claim radical mass democracy and proposed the issue of unification. Accordingly, ‘nationalism from below’ contributed in ushering the issues into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al arena. Nevertheless, as resisting groups became radicalized, they lost support from the public.

Korean nationalism has to perform the following tasks for unification:

First, Korean nationalism has to function as an ideological principle to solve existing conflicts in South Korea.

Second, Korean nationalism has to be combined with democracy. Furthermore, Korean nationalism has to admit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and attain the balance between state and society. A combination of nationalism and democracy would be the ideological goal of South Korea and a unified Korea. Korean nationalism combined with democracy would create a balance between national interest as a whole and individual interests.

Third,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s of socio-political forces in South Korea, the emerging citizen strata will be the leading force of Korean nationalism. The citizens should seek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and increase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Fourth, Korean nationalism has to pursue independence and prosperity within the network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and international state system, while maintaining interdependence with the outside world.

Fifth, preparing ultimately for unification, Korean nationalism must endeavor to gradually expand the common groun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in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reas.

In conclusion, Korean nationalism as unification ideology has to champion future-oriented unification, not past-oriented unification. Furthermore, Korean nationalism must harmonize with internationalism externally, and must accomplish liberty, equality, and welfare internally.

## Nationalism in North Korea: Theoretical Adaptation of Juche Ideology

Jae-Jean Suh, Ph.D. (RINU)

North Korea regards nationalism as an ideology which “blurs the awarenes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rue interest’ of working class and national interest by posing nationalism locally to be ‘the whole nation’s interest’ thereby obscuring class interest and impeding the working class struggle for its own fundamental interest.” There is, therefore, from the view-point of Kim Il Sung, no justification for regarding Juche ideology as a nationalistic theory.

Juche ideology was born following the death of Stalin and the ensuing critique of idolization, as a counter-measure to block the tide of revisionism headed by Khrushchev from having an impact on North Korea and, in particular, as the Soviet Union began to criticize idolization of Kim Il Sung by means of direct economic aid. Complete self-isolation and a closed system, the quintessence of Juche ideology, was the corollary response of Pyongyang to the then revisionist current.

The contents of “Socialist System of Our Own Style” and “the Supremacy of Chosun Nation”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mid 1980s to cope with the influence of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he socialist bloc, are found to be very similar to the contents of Juche thoughts in the 1950s. They were mere justification for preventing the whirlwind of reforms in the former socialist bloc from having its impact on North Korea.

As Pyongyang could no longer rely on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socialist state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k, “the Supremacy of the Chosun Nation” was devised anew in order to maintain the regime, through a placing of emphasis on the uniqueness of North Korea. The objective of the theory lies not in an attempt to present a theory of nationalism to the South, but rather in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North Korean socialism by emphasizing the differences of language and heritage from those of Chinese, the Soviet Union or the East.

##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ationalist Movement and the Formation of the Unified Nation-State

Dukyu Jin, Ph.D.

(Professor of Ewha-Women's University)

The nationalism and nationalist movement in Korea has placed limitations upon its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toward the realization for nation-state. The failure of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nation-state in Korea has been immanent in the explicit ideological orientation of nationalism in the period of its advent of Korean independent struggle against colonial dominance of Japan. The nation-state,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tegrative political community based on nationalism, has been the nationalist objectiv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pursuit of recovering the sovereignty from Japan by which it had been plundered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Korean politics, experienced as a colonial society, has indicated the different characters and development of nationalist movement in distinction from the historical expressions of Western nationalist movement, especially in terms of its form of unified nationalist front facing the invasion from other countries. In the colonial times the nationalist leaders in Korea had been so immersed in the Western culture and institutions for its modernization that resulted in the feeble feelings of antagonistic attitude among Korean people against Western imperialism.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nationalism is the lack of strong coherence between leaders and its link to its tradi-



tional culture with Western modern institutions. Eventually, after World War II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ist Politics has fallen into the divided state influenced by the America and Russian imperialism even setting up the “Externally Imposed States.”

Today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and nationalism have to be oriented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

1. The ideological orientation toward the unified nation-state.
2. The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ist policies of the social development in Korea.
3. The effective mea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existing two governments into one unified nation state.

The objectives of Korean nationalism mentioned above means that the building of a unified state of Korea coincide with the dialectical aufheben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into the one unified ideology of nationalism. And it also surmounts the conflict between elites and masses of two Koreas.

In the context of the unified nation-state, the existing two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diminish their hostility and antagonistic attitudes, and to attain one government in one nation-state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e now distorted ruling ideologies have to move on forward to the ideology of nationalism for the unified nation-state of Korea.

## European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Kook Shin Kim, Ph.D. (RINU)

In the immediate postwar years, pluralist types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the Council of Europe played important roles in matters of security and economic recovery f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Most notably, the OEEC contributed to the rapid expansion of trade ties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European states. Although these organizations had potential for the promotion of European integration, they did not reach beyond the classic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states.

Nearly all the countries of Western Europe spawned federalist organizations after the second world war. European federalists wanted to create a United States of Europe as quickly as possib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in 1951, the federalists proposed plans for European Defense Community (EDC) and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 The project, however,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After the defeat of the EDC-EPC scheme, many exponents of European integration turned from federalism to neofunctionalism, favoring gradualist approaches.

In 1957, six Western European countries founde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and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Although the EEC was founded to create a customs

union and a common market according to the Treaty of Rome, functionalists expected that EEC would gradually evolve into complete economic union through cooperation in technical areas. This assumption, however, turned out to be illusory. The European experience suggests that there is nothing inherently integrative in technology or economic growth *per se*. Even EURATOM has suffered from political interven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8, the EEC achieved a customs union, a year ahead of the original schedule. The institutions of the EEC, ECSC and EURATOM were merged into one set of Community institutions, that is, the European Community (EC). From its inception, the EC made efforts to promote greater economic integration. But until the mid-1980s, the European projects were languishing and European integration faltering. Neofunctionalists had assumed that the interests and loyalties of elites would progressively transfer from each nation-state to the institutionalized community as time passed. In the case of European integration, however, the locus of power had in fact not shifted to the EC because each country had the right to a veto.

In 1986, the EC passed the Single European Act to achieve harmonization in member countries' monetary, fiscal and social policies. European countries agreed that qualified-majority voting would apply to all decision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creation of the single market. Having changed the decision-making system from unanimous voting to a majority voting principle, the EC has been evolving in the direction of federalism and the accomplishment of monetary union and political union.

North Korea takes a federalist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while South Korea takes a neofunctionalist approach. The most valuable lesson of the European experience for Korean unification is that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gin economic integration gradually on the basis of a neofunctionalist approach. With the formation of common institutions, the two sides could gradually achieve the following levels of cooperation: free trade zone, customs union, common market, complete economic union, and political union. In this regard, the North and the South should take a more flexible position to the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needs to readjust its unification formula to adopt a neofunctionalist approach.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the federalist approach at the stage of creating a common marke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lthough a neofunctionalist, rather than a federalist, approach is more realistic for achieving unification, the European experience shows that a neofunctionalist approach should be complemented by a federalist approach in order to go beyond the creation of common market.

빈 면

## A Study on Kim Jong Il's Literary Thought

Woo Young Lee, Ph.D. (RINU)

In Socialist States, all literary works and the cultural policies, in turn, are created on the foundation of the Socialist Realism. Socialist Realism is a unique trend of literary thought favored by socialist states, based on vivid description of the objective reality. Literary works in Socialist States are, therefo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alist systems in general.

North Korea's case is no exception. Socialist Realism is the underlying principle for the literary art policies of North Korea. As in the case of other Socialist States, Kim Jong Il's influence is much felt, even in the basic direction and content of North Korean literature. Kim Jong Il is closely involved with the creation of literary works in North Korea, due to his special interest in the literary arts, and his long service in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sectors which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Kim Jong Il's thought on literary art consists of 1) Socialist Realism, 2) Juche theory of literary arts 3) and 'Jongja theory' (Germinalism). Juche theory emphasizes the monolithic rule of Kim Il Sung and underscores the socialistic form and nationalistic content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 particular, Kim Il Sung's partisan activities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form the subject matter of major works.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collective creativity. Jongja theory accentuates the existence of core thoughts in every cultural and literary work, and says these core thoughts determine the content, form and even the

subject matter of the works. Although Kim Jong Il's literary thought is based on Socialist Realism, as the Jongja theory signifies, his thought has originality in its own way. Kim Jong Il has much influence in literary arts policy, and the literary works' objective is to play the role of political propaganda and political socialization. As the literary works emphasize Juche ideology and supporting the existing monolithic regime, their contents have high degree of uniformity.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n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Soo-Young Choi, Ph.D. (RINU)

An apparent turning point in North Korea's modification of its economic policy toward more openness to the outside world might be the promulgation of the Joint Venture Law in September 1984. North Korea's new strategy of developing its economy through joint ventures was to attract direct foreign investment without the burden of repayment especially from the West. However, it became obvious as the year progressed that the Joint Venture Law was not successful in attracting Japanese and Western companies. Only pro-DPRK Korean businessmen and manufacturers residing in Japan participated in joint ventures with only small amounts invested.

The failure of North Korea's joint ventures with the West seems to be a natural result considering it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North Korea's attractiveness as an investment location is extremely low in view of its small domestic market and lack of infrastructure. North Korea's conspicuous international image and low credit standing were also factors against foreign investment. Moreover, fearful of its people being adversely influenced by capitalist ideology, North Korea could not adopt fundamental economic reform toward liberalization and thorough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Signs of new activity in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policy appeared in December 1991 with the establishment of Najin-Sunbong area as a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It is related to the UNDP's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 and North Korea has expressed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ly developing this area on its own side. In October 1992 and January 1993, new laws on foreign investment were adopt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These new laws are likely to provide a more favorable atmosphere for foreign investment.

North Korea has held several meetings in Japan, Germany, and Finland since the end of 1992 to explain about the Najin-Sunbong area an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in the area. Such current attitudes of North Korea toward the West clearly reflect the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e nuclear issue. North Korea is likely to now consider Japan and the West over South Korea in seeking economic partner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North Korea's strategy to solve its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foreign investment from the West will be successful only according to progress made in South-North relations.

#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Inducement Laws: An Analysis and an Assessment

Seong Ho Jhe, J.S.D.(RINU)

Now, North Korea desperately needs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in order to pull out of her economic difficulties. Pyongyang, fully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he old "Equity Joint Venture Law" system in attracting foreign capital, enacted six laws on foreign investments and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ity Joint Venture Law from October 1992 to January 1993.

These legislative measures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he positive aspec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form, North Korean measur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have greatly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Foreigners' Investment Law" and other follow-up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 law, including the "Tax Law on Foreign-Invested Enterprise and the Foreign Investors." The improved features of the new arrangements for foreign invest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Favored Zon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modelled after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2) permission for other investment forms, such as 100% foreign capital contractual joint-venture investment; 3) the extension and reinforcement of preferred measures to attract investment.

Favored measures for the high-tech sector and 100% full capital portion of foreigners, in particular, though limited to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reflect Pyongyang's strong urge to attract foreign cap-

ital when contrasted with its former Equity Joint Venture Law which prohibited such investment by foreigners.

Furthermore, measures like land lease for 50 years, various tax benefits, protection of foreign invested property, free remittance of profit outside of North Korea, guarantee of company secrets, and price fixing by means of consensus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as stated in the "Foreigners' Investment Law," reveal a high likelihood that further measur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ill be implemented.

Such law-making and revision 8 to 9 years after the first legislation of the "Equity Joint Venture Law," though limited, is a manifestation of Pyongyang's will to open up her economic policy by dissolving foreign investor skepticism and concretizing principles and policies to encourage foreign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These moves certainly imply that Pyongyang has at last realized that her former self-reliant economy, based on Juche ideology, not only resulted backwardnes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ut also deepened the economic crisis.

The measures also have the following negative aspects.

There are fundamental problems of abstractness and unclarity in the newly enacted law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to North Korea. Some of them are 1) the abstract definitions in the sections related to the encouraging of investment and the declarative form of its favored conditions; 2) the inevitability of risk for foreign investors, and the prescription that investment refund and profit distribution be made through products; 3) possible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authorities, due to an inelasticity of employment, priority of using North Korean raw-material products, requirement to affiliate with local insurance and security schemes etc.; 4) settling of almost all the investment disputes through North Korea's juristic or mediating institution; and 5) high

possibility of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laws by Pyongyang. Besides, there are contradictions among the articles themselves, and due to their overall abstractness the laws are frequently obscure.

Considering the foreign currency shortage in North Korea, there might be strict foreign currency management, with remittance confined to the exporting company. In addition, employment and deemployment matters should be dealt through the labor institution and activities of working alliance should be guaranteed.

These factors are very likely to hinder the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itself.

It is expected, however, that recent enactment of the Foreigners' Investment Laws will somehow work to attract investment to North Korea. But as the legislation and economic opening are designed so as to minimize their maleffects to the system itself, North Korea's opening has the character of "*limited or controlled economic opening*." North Korea, therefore, is expected to utilize regional free economic and trade zones as a testing ground for foreign investment, and to prefer the investment form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Such prospects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Foreign Investment Law admits tax reduction benefits and favored measures to foreign investment only in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It further prescribes that management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companies be by North Koreans, and that refund of investment and profit distribution be by means of joint venture products.

In conclusion, taking North Korea's idiosyncratic system and its shortage of foreign currency into account, Pyongyang is expected to prefer equity joint venture investment or wholly foreigner-owned investment in the Najin-Sunbong Area, designated as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and prefer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the other area of North Korea in order to achieve its ultimate objective of maintaining the regime.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 1993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編輯委員會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韓國컴퓨터産業(株) TEL 273-8111

印刷日 1993년 7월 14일

發行日 1993년 7월 17일

---

ISSN 1225-6064